발 간 등 록 번 호
11-1090000-0000087-01

국무총리실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2007. 10.

국 무 총 리 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발 간 사

이번에 발간하게 된 백서는 '05년 1월부터 '07년 10월까지의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 기록입니다.

한일대책기획단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인도적 차원에서 치유하기 위해 한일수교문서를 공개하고,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정부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지원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못한 상황 하에서 한일대책기획단의 활동이 종료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국회에서 관련 입법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및 각 정당에 협조요청을 통해 지원법이 처리되어 일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획단의 활동을 상세하게 기록한 본 백서를 통해 관련 정책과 학술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간 백서 발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 10.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단장 이 병 진

추 천 사

'05년 을유년은 잃어버린 민족의 희망과 나라의 운명을 되찾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또한 '65년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한일협정을 체결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자, 오랜 세월 잊혀져 있던 한일수교회담문서를 정부가 적극 공개함으로써 화합과 번영의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고자하는 큰 소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선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한일수교회담문서 공개와 함께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05.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을 설치하였고, 대책기획단이 추진해 나가야할 종합적인 지원대책의 기본방향 등을 정립코자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민간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그리고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사항을 바탕으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방안을 마련하였으며,「한일대책기획단」에서는 확정된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자 공청회및 간담회, 사회 각계인사 토론회, 국민여론조사를 거쳐서 '06.9월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제출 이후에는 피해자단체들과 함께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일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한일수교회담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집이 되기를,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과 정부의 지원방향 수립 및 추진과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진단장님을 비롯한 발간위원님들 그리고 집필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 오신 희생자 여러분들의 한의 매듭이 풀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0월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 양 삼 승

사진으로 보는 한일대책기획단 활동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05.10.13)

일본사회보험청 방문 ('05.10.21)

피해자대표로 선정된 토론자가 발언하는 모습 ('06.3.22)

공청회장 밖에 설치된 TV를 통해 논의내용을 청취하는 모습 ('06.9.2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06.9.21)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관련 실무 워크숍 ('06.11.17)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 일본 외무성 회의실 ('07.10.10)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 일본 외무성 회의실 ('07.10.10)
※일본측 대표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 일본 외무성 회의실 ('07.10.10)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후속대책 회의 ('07.10.22)

목 차

제 1 장 개 요

1.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경위
2.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설립
3. 민 · 관공동위원회 구성

제 1 장 개 요

'04.2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일수교회담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계기로 일제강제동원 피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위 재판의 판결에 따라 이듬해인 '05.1월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관련 문서 5권을 1차로 공개하였고, 같은 해 8월에 156권을 전부 공개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138호)을 제정, 공포하여 '05.1.14일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을 설립한 후, 자문기구 성격인 민 · 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한일대책기획단은 차관회의 등 수차례 회의와 피해자 단체의 의견수렴 등과 같은 2년여에 걸친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정부지원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1.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경위

한일수교회담 외교문서 공개는 '91년부터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한일협정을 이유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연거푸 내리자 '02.9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의 구체적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일제 피해에 대한 보상권인 개인 청구권이 묵살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한일수교회담 외교문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외교통상부는 "북 · 일수교교섭을 진행 중인 일본이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꺼린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단체는 일제강점 피해자 99명 명의로 '02.10월 한일수교회담 외교문서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04.2.13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57권 중 5권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근거로 항소했으나 이에 관하여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지시가 있었다.

《 '04.3.9 국무회의 》

○ 한일 수교회담 문서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일본측이 공개를 꺼리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의 알 권리, 역사적 관점,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 등을 감안, 재검토가 필요

《 '04.8.13 지시메모 》

○ 우리나라 외교관계 기록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04.8.16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의하여 한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를 검토할 것

《'04.10.12 총리와 오찬 시 》

○ 1차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강제동원된 분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 ① 법적 보상의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위하여,

② 지원할 규모를 국민적 타협·협의과정을 거친 후

③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

④ 국가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보상·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설립을 계획, 민원 대응방안과 후속 대책의 소요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준비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여러가지 검토와 일본측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정부는 외교부 주관으로 '04.12.28일 관련 문서 5권에 대한 공개방침을 발표하였고, 이듬해인 '05.1.17일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관련 문서 57권 중 5권, 1,200여 쪽을 공개하였다.

5권의 문서공개에 대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단체 등에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 예상되었다. 다음 날('05.1.18),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시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 어제 한일협정문서 일부가 40년 만에 공개되었음. 일제 식민 통치하의 피해자들의 분노와 통한의 목소리가 광범위해지고 있음. 과거정부가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분노가 솟구치는 상황임. 우리정부는 역사 앞에 정직하고 투명해야겠다고 생각됨

○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세가 필요함.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공동의 기획단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향후 대응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임. 과거사를 정리하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하겠음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대책기획단을 설치하는 한편, 문서공개 이후 제기되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05. 3. 2일 외교부에 한일수교회담 외교문서의 추가공개(156권) 심의를 담당할 문서공개전담심사반(민간위원 3명 포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정보(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등 관련사항)의 수록 여부를 심사한 후, '05.8.26일에 한일수교회담 외교문서를 전부공개 하게 되었다.

【 문서공개 내역 】

○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63

○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64

○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회의 보고 및 훈령」 '65. (V1. '65.3.18~4.3까지의 교섭)

○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회의 보고 및 훈령」 '65. (V2. '65.4.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65.4~6)

○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 설명 및 자료」 '65

2.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설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수교회담에 관한 문서공개 시 피해자들의 민원 제기, 보상요구와 언론보도 등에 의한 집중적인 부각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민원대응 및 종합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간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에 관한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04.9월 이후 재경부 · 행자부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문서공개 T/F」(주재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를 구성하고, 7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T/F의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04.11.2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서공개 대책 기획단」을 설치하는 후속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38호)"에 대하여 '05.1.7일 대통령 결재를 받아 이에 따라 문서공개와 관련된 민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책기획단」을 설치 · 운영키로 하였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등 7개 관련부처에서 파견된 총 8명(2~3급 1명, 4급 2명, 5급 5명)으로 구성하고, 대책기획단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과 외교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아 운영하고,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이마빌딩에 사무실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외교통상부 내에도 아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전담심사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문서공개와 관련된 법률적 · 외교적 제반문제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문서공개와 관련하여「대책기획단」과「문서공개 심사단」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였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은 종합대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후속대책을 수립, 관련 지원법안 마련함으로서 '06.9.25일 국회에 지원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설립목적이 완료되어 '07.11.1일자로 훈령 폐지로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이 종료하게 되었다.

가. 근거 :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 제138호) ⇒ [부록 1]

나. 구성 : 2개 팀 (총괄기획팀, 협력지원팀)

다. 인원 : 8명 (국조실 2, 행자부, 재경부, 외교부, 예산처, 복지부, 보훈처)

라. 조정회의

○ 구성 : 의장(국무조정실장)

○ 위원 : 6인 이내 관계부처 차관

○ 기능 : 대책기획단의 종합대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정함

마. 대책기획단 주요 업무 분장

○ 대책수립 1팀 (총괄팀)

- 회계처리 및 예산확보
- 민·관합동위원회 본회의 운영
- 제1분과(대외문제)위원회 운영
- 각종 간이보고(주간 간부회의, 청와대 보고)
- '75년 청구권자금 사용내역 분석
- 공청회 개최
- 정당 및 국회동향 파악
- 국회 답변자료 작성
- 국회 보고자료(국회 대응)
- 청와대 T/F 회의자료
- 제1분과위 안건준비(관련자료 정리)
- 대국민 설문조사
- 지원법률안 마련
- 한일협정 법리 검토
- 미공개된 한일협정문서 분석
- 보상관련 소송사례 분석(국내외)
- 일본의 보상사례

○ 대책수립 2팀 (협력지원팀)

- 외교부 "문서공개심사단"의 동향파악
- 문서공개관련 언론동향파악
- 기획단 운영일지 정리 및 백서작성
- 해외자료 수집 및 해외출장 계획수립 등
- 외국(독일 등)의 유사보상사례 분석 정리
- 일제 피해유형 파악
- 국내 각종 보상사례 분석
- 진상규명위원회와 업무 협의
- 제2분과위 회의 운영
- 제2분과위 안건준비(관련자료 정리)
- 피해자 현장실태조사(징용 생환생존자 생활수준 등)
- 관련단체 및 민간전문가 간담회
- 피해자 · 유족단체 동향파악
- 민원상담(방문 · 서면 · 집단) 및 처리

바. 한일회담 문서공개관련 대책 추진체계

사.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근무자명단 : [부록 2]

3. 민 · 관공동위원회 구성

정부는 '05.3.3일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폭넓은 여론수렴 창구 역할을 위해 총리 자문기구성격인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이해찬(李海瓚) 전 국무총리와 이용훈(李容勳) 전 대법관(현 대법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법조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경제계, 언론계 대표 등 민간 인사를 위원(총 21명)으로 위촉하여, 필요시 수시로 운영 해왔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문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책과 소송관계 등 각종 법리문제에 대한 심층검토 및 여러 지원방안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원부담 가능을 검토하여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가. 구성 (21명)

○ 위 원 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 정부위원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민정수석 등 9명
○ 민간위원 : 법률전문가, 사학자,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10명

나. 목적

○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책 논의

다. 성격 : 총리 자문기구

라. 기능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전반적 대책방향에 대한 논의기구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및 재원마련방향 등 논의
-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논의
- 법률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민간위원 자문

마. 회의 개최

○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총 4회 개최
- 제 1차 회의 안건
  · 한일수교회담 개요 및 문서공개 대책(외교부)
  ·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운영방안

- 제 2차 회의 안건
  - ·한일협정에 대한 법리적 쟁점 검토(대책기획단 부단장)
  - ·독일의 2차대전 이후 피해배상 사례 분석(독일 보쿰대 송충기 박사)
  - ·'75년도 피해보상내용 분석 및 시사점(영산대 최영호 교수)
- 제 3차 회의 안건
  -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정부대책방향(대책기획단 단장)
- 제 4차 회의 안건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방안(대책기획단 단장)
  -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추진상황(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대내분과위원회 회의 총 8회 개최

○ 대외분과위원회 회의 총 6회 개최

○ 차관회의 총 6회 개최

○ 실무회의 10회 등 수차례 회의를 개최

바. 민·관공동위원회 설립 근거 : [부록 3]

사. 민·관공동위원회 위원 현황 : [부록 4]

제 2 장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 수립 활동

1. 한일대책기획단의 활동('05-' 06년 활동)
2. 민 · 관공동위원회의 논의 내용
3. 민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
4.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 내용
5. 피해자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7. 국민여론조사
8. 연구용역조사 및 워크숍 개최
9. 주요 발간 자료
10.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를 위한 국내외 조사 활동

제 2장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 수립 활동

1. 한일대책기획단의 활동

한일대책기획단은 '05.1월 발족에 이어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방향 및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관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며, 도출된 사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민·관공동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부 지원방침을 토대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및 국민여론조사, 공청회 및 간담회, 국내외 자료수집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 내용

가. 민·관공동위원회 개요

민·관공동위원회는 전반적 대책방향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공동위원회 내부에 민간위원회의, 법리분과위원회, 대외분과위원회, 대내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하였다. 동 분과위원회들은 각종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동 논의결과는 민·관공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지원대책 마련에 기초가 되었다.

◉ 민 · 관공동위원회 운영체계

◉ 각 분과위원회별 논의사항

제3차 민·관공동위('05.8.26)

⇩

- 제2차 대외분과위원회('05.6.14)
  : 일본의 과거 청산 및 자국내 보상
- 제2차 민간위원회의('05.6.24)
  : 한일협정 관련 국내외적 대책 방안
- 제2차 차관회의('05.7.1)
  : 한일청구권협정 법리해석 및 정부대책 방향
- 제3차 차관회의('05.7.22)
  : 한일청구권협정 법리해석 및 정부대책 방향 검토
- 제4차 차관회의('05.8)
  : 외교문서 추가공개 관련 대응

제4차 민·관공동위('06.3.8)

- 제3차 민간위원회의('05.11.7)
  : 한일협정관련 대책의 예상쟁점
- 제5차 차관회의('05.12.13)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방안
- 제6차 차관회의('06.2.17)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률(안) 검토

나. 제 1차 민 · 관공동위원회

1)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05.3.14, 정부중앙청사 회의실 (916호)

나) 참석자

○ 정부위원 : 이해찬 국무총리, 복지부 · 행자부 · 법무부 장관, 보훈처장, 외교부 · 재경부 · 예산처 차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 9명

○ 민간위원 : 이용훈(위원장), 양삼승, 한정숙, 유병용, 전종훈, 이재춘, 백충현, 김학순 등 8명

다) 안건

○ 한일수교회담 개요 및 문서공개 대책(외교부)

○ 한일회담문서공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운영방안(대책기획단)

라) 주요 논의내용

○ 위원회 첫 회의로써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 민간공동위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 청취 필요
  - · 유족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
- 분과위를 설치하여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 독일 등 외국의 강제징용 보상사례 등을 조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추진

2) 회의 자료

가) 한일회담문서공개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운영방안

(1) 과거 일제피해보상 추진경과

□ 보상 재원 마련 및 관련법률 제정

○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정부로부터 경제협력 및 양국의 국가 및 국민 간 재산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10년('66~'75)간 무상 3억 불(역무), 유상 2억 불을 받음

- 청구권자금의 대부분을 경제개발 재원으로 할당하고, 일부만을 피해자보상을 위해 배정
- 총 1,077억 원 : 경제개발 등 9,153억(89.4%), 피해자보상 104억(9.7%), 독립유공자기금 20억(1.9%)

* 당시 정부는 청구권자금은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자금이며,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경제개발에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접근

○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66.2)
-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정('71.1)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제정('74.12)
  * '82.12.31 : 상기 보상관련법률 폐지

○ 보상신고 및 보상대상자 확정 · 실행에 약 6년 소요('71.5～'77.6)
- 신고기간 : '71.5.21~'72.3.20(10개월)
- 보상기간 : '75.7.1~'77.6.30(2년)

□ 우리정부의 보상내용

○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 징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직계 유족에 대해서 보상

○ 강제동원 부상자 및 생존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보상액 : 1인당 30만 원

○ 재산피해는 예금, 채권, 보험금 등에 한정하고, 징용자의 미수금, 연금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제외
- 보상액 : 신고금액 1엔당 30원 비율로 보상('77.4월 환율 1.7원/엔)
* 환율은 그간 물가, 금값, 쌀값, 엔화의 대미 환율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보상금 지급실적('78.5월 기준) : 총 103,278건(금액 : 9,519백만 원)
- 인명피해 : 11,787 신고건수 중 8,910건 지급결정(72.5%)
- 재산피해 : 97,753 신고건수 중 94,368건 지급결정(96.5%)

□ 일본정부 · 기업을 상대로 하는 피해자들의 보상청구 소송

○ '90년대 초부터 피해자단체 등이 일본 및 국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보상소송 제기
- 피폭자 수당 관련 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배상 · 보상소송은 전쟁 피해 국가무책임, 소멸시효, 한일청구권 협정 등을 이유로 패소
* 주요소송 제기내용 : 강제노동에 관한 배상 · 청구, 일본보상입법의 적용청구, 일본군위안부 배상 청구, 미불임금청구 소송 등
-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국 및 미국 법원에도 배상 소송제기
* 미쓰비시중공업('00.5월 부산지법), 신일철('05.2월 서울지법)
* 다이헤이요시멘트('99.10월 LA지법), 위안부소송('00.9월 워싱턴DC지법) 등

□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제기 및 보상관련 입법 활동

○ 정부가 '45.8.15일 이전에 취득된 청구권만을 보상하고, 8.15일 이후 취득된 청구권에 관한 보상입법을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제기('94.2)

- 헌법재판소는 보상입법이 불충분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 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로 청구를 각하함

○ 한일수교관련 외교문서 공개 청구소송('04.2 공개판결)

○ '90년대 말 이후 피해자지원 및 진상규명 관련 입법운동 전개

- '99년부터 피해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피해자지원 입법운동 추진

- 이와 별도로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피해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운동(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법 '04.3 제정)

(2)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대책추진

□ 문서공개이후 각계 반응

○ 정치권은 피해자 지원입법 등 보상 · 지원 필요성 제기

- 각 정당은 진상을 공개하고, 우리정부가 개인청구권 보유자들에게 추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태평양전쟁희생자생활안정지원법안의 보건복지위 상정('05.2)

- 열린우리당은 T/F를 구성하여 국회특위 구성방안 등 논의

○ 대부분의 언론도 우리정부가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 예산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 국회 등 사회적 합의 강조

- 일본에 대해서는 자발적 해결노력을 촉구하면서도 배상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림

□ 정부의 대책추진 경과

○ 정부는 과거사를 정리하고, 피해자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 '05.1월 말 한일대책기획단을 설치, '05.3월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 대통령께서도 일본에 대해 자발적 해결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과거 정부의 피해보상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과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 하겠다고 강조('05년도 3.1절 기념사)

○ 이와는 별도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04.11월)되어 1차 피해신고 접수 중 ('05.2~6월)

(3) 민·관공동위원회 운영방안

□ 위원회 구성(21명)

○ 위 원 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 정부위원 : 재경부 등 관계 장관 7명,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 민간위원 : 법률전문가, 사학자,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10명

□ 위원회 성격 및 기능

○ 성격 : 전반적 대책방향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논의기구

○ 기능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대책 및 재원마련 방향 등 논의
-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 방안 논의
- 법률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민간위원 자문

□ 위원회 주요 논의필요 과제

○ 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 대책의 성격 등(피해보상 또는 복지지원)
- 대책의 대상(강제동원 개념규정, 피해자의 범위, 정부대책이 필요한 피해유형 등)
- 대책 추진방식(정부기구에서 추진 또는 별도 재단설립 등)
- 재원마련방안(정부예산, 기금, 모금 등)

○ 청구권 자금을 통한 과거 정부 보상의 적정성

○ 피해자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 및 사회적합의 도출방안

○ 외교문서 추가공개와 관련된 사항

○ 일본에 대한 외교적 추진 과제 및 대응방향

○ 개인청구권 등 법리문제

- 법률적 책임, 향후 일본과 해결할 과제

○ 외국사례 및 우리정부의 각종 보상사례의 시사점 검토
  - 독일의 보상사례, 광주민주화, 민주화운동보상 등
○ 국회 계류 중인 인제강제동원피해자관련지원법안 내용 검토

다. 제 2차 민 · 관공동위원회

1)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05.4.27, 정부 중앙 청사 대회의실 (1018호)

나) 참석자

○ 정부위원 : 외교부 · 재경부 · 복지부 · 행자부 · 예산처 차관, 보훈처장, 청와대민정수석 등 7명

○ 민간위원 : 이용훈(위원장), 양삼승, 한정숙, 유병용, 백충현, 조건호, 이복렬, 김학순 등 8명

다) 안건

○ 한일협정에 대한 법리적 쟁점 검토 (대책기획단 부단장)
○ 독일의 2차대전이후 피해배상 사례 분석 (독일 보쿰대 송충기 박사)
○ '75년 피해보상내용 분석 및 시사점 (영산대 최영호 교수)

라) 주요 논의내용

○ 한일협정의 기본성격과 관련하여, 한일합방이 원래부터 무효라는 입장과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한 분리 독립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
  - 분리 독립이라고 하면 청구권의 근거나 보상(혹은 배상)을 제기할 근거가 없으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음 (위원장, 외교부, 백충현 위원)
○ 개인의 청구권이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
  - 위안부문제등과 같이 한일협정에 의해 미해결된 영역은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인청구권도 남아있음 (백충현 위원)
  - 한일협정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해결되었더라도, 우리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권리가 남아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함 (백충현 위원)

-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에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민정수석)

○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에 더 확실한 배려를 했어야 하나 정부가 그러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8개 항목으로 마무리 지은 것은 잘못했다라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양삼승 위원)

- 정부 입장에서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고 도덕적, 정치적인 의미에서 국민에게 할 일을 못했다는 방식으로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여러가지 혜택을 베풀어 줄 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함
- 한일협정당시 정부 관심 밖이었던 복지, 생활보호까지도 이제는 우리정부가 책임질 만큼 성장했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로지 법률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국민의 마음도 위무해 줄 수 있을 것임

2) 회의 자료

가) 한일협정에 대한 법리적 쟁점 검토

(1) 검토 배경

○ '90년대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및 미불임금 반환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05.1월 한일회담문서 공개이후 우리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청구권자금을 받았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됨

- 일본 시민단체도 강제징용 미수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

* 공개된 문서에는 우리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징용·징병자들에 대하여 일측에 구체적 보상금액을 요구하면서 보상 문제는 향후 국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사항의 범위에 따라 일본정부에 요구할 부분과 우리정부가 해결할 과제가 나누어지므로

-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정부가 피해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정부가 했던 보상의 성격 및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를 규명할 필요

(2) 주요 쟁점사항

□ 한일협정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문제

○ "기본조약"에서 한일합방이 원래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는 정부입장과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거 영토분리로 발생된 민사(民事)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해석 간에 모순이 있는지 검토

□ 개인청구권의 소멸여부에 관한 문제

○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소멸된 청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국정부의 해석이 다르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림

- 일본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되었고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그 후 국내 입법조치를 통해 비로소 소멸했다고 주장
- 학계에서는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제법, 3개의 보상법률, 국내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한일협정 협상과정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장 정리 필요

○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경우, 현재 일본 내 소송과 관련하여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징용자들이 납부한 후생연금은 현재 요청하면 탈퇴수당 형식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있음
- 일본에 공탁되어 있는 징용자 미불임금 등 미수금 공탁금도 아직 국고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사례들이 있음

○ 또한 한일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일교포 한국인의 청구권과 사할린 한인의 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일본측은 재일 한국인의 경우 일본 실정법에 근거한 권리만 보장되고 원호법상의 청구권 및 징용피해 보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주장
- 사할린 한인은 국적문제(러시아인)로 인해 우리 정부가 나서기 곤란한지 여부도 검토 필요

□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의 소멸여부에 관한 문제

○ 한일협정 및 합의의사록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8개 요강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이 해결된 것으로 하였음

- 8개 요강 중 "징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검토 필요

○ 일본의 주장과 같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현재 국제법상 보편적 규범인 인도(人道)에 관한 범죄 피해까지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예: 군위안부 문제)

○ 일측에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이 있는지 논리개발 필요

* 일본 재판소는 일부 판결에서 징용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위험한 작업환경에 방치한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

□ '75년 국내 보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책임

○ '75년 당시 보상법률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국정부에 법적 보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 당시 징용 부상자의 피해부분, 미수금, '45년 해방 직후 발생된 일부 재산권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소멸시효 문제 등도 고려

나) '75년 피해 보상내용 분석 및 시사점

(1) 보상 개요

○ '51.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구식민지와 일본간의 재산·청구권 문

제는 양국간 특별협정을 맺어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권협상 개최

- 협상에서 우리측은 8개 청구요강을 제시하고 협의했으나, 보상대상 범위, 보상금액 규모에 대한 양측의견이 크게 대립되어 합의가 되지 못하고 결국 정치회담에서 일괄타결

○ '65.6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불(역무), 유상 2억 불을 받음

- 3억 불은 현금이 아니라 '65~'75년간 현물 및 용역 형태로 받았음
- 3억 불의 현재가치 : 여러 가지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70년 대비 '04년 기간 중 물가상승률(15.6배)기준으로 보면 약 1.7조 원

○ '66년 정부와 야당은 각기 보상법(안)을 제출했으나 보상비율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과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청구권자금관리법"만 통과되어 보상자금의 근거만 마련됨

- 이후, 공화당은 정부의 보상법안 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

* 피해자들은 민간청구권자협의회('67.4)를 구성하여 수차례 시위 및 진정서 제출

○ 협정체결 6년 후인 '71년 청구권신고법, '74년 청구권보상법을 제정하고 실제보상은 '75년부터 시작

※ '71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 [부록 11]

※ '74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 [부록 12]

<참고> 보상건수 및 보상액

구분	건수(%)	보상액(천원,%)	비 고
계	83,515 (80.8)	9,182,551 (96.4)	* 재산권 보상지급결정을 받은 자는 94,368명이었으나, 보상액이 적어 약 2만 명이 포기
재산	74,963 (72.4)	6,616,951 (69.4)	
인명	8,552 (8.4)	2,565,600 (27.0)	

(2) 보상관련 쟁점사항

□ 청구권 자금의 성격 및 개인 재산권 보상규모

○ 정부는 무상자금 3억 불은 개별적 권리청구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보고,

- 민간청구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이 아니라 보상법률 제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되는 창설적 권리이며,

- 전체 보상규모도 청구권자금 중, 전체국민 중에서 신고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결정

○ 피해자들은 청구권자금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기하여 정부가 국민을 대행하여 받은 것이므로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

- 보상규모는 실질적 재산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야 하며, 무상 3억 불과 귀속재산 분까지 감안해서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 인명피해 보상

○ 보상대상

- 일제강제 징용·징병되어 전투나 노역 중 사망하거나 부상후유증으로 '45.8.1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우리나라는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권협정은 재산권 처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사망자에 대해서는 극심한 피해에 대한 시혜적 조치로서 보상

* 해방직후 징용·징병 미귀환자에 대한 호적상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일본이 제시한 징병사망자는 2만여 명, 실제 보상은 8,910명에 불과)

- 부상자는 부상여부 입증 곤란, 부상정도에 따른 차등방법,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분쟁의 소지 등을 이유로 제외

※ 한일협상에서 부상자(2000$/1인)에 대해서 사망자(1650$)보다 더 많이 요구했고 야당 보상법안('66년)에는 부상자도 보상대상에 포함

○ 지급액

- '74년 당시 국군사병 및 대간첩작전 지원 시 사망한 향토예비군에 대한

보상금에 준하여 유족에게 30만원 지급하였으며, 유족들은 1인당 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

※ 74년 당시 여타보상금 등 사례

① 군인 및 예비군 사망자 급여기준(정부기준)

- 일등병 : 300,000원, 소위 : 328,800원, 향토예비군 : 300,000원

② 탄광사고 사망자 450만 원 보상(피해자 인용사례)

③ 황소 204천 원/350kg, 쌀 11,852원/80kg(30만 원은 25가마 상당)

□ 물적 피해 보상

○ 환율 계산

- '75년 당시 원/엔 환율은 1.74이었으나, 8.15 해방 당시 화폐의 실질구매력을 반영하여 재산권 1엔당 30원으로 보상
- '45.8~12월 대비 '74.7월 현재 금 · 쌀 가격, 물가상승률, 달러 환율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산
- 피해자들은 정부안은 해방직후 급등한 물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비판하면서 해방직전 물가를 기준으로 590배가 타당하다고 주장

○ 보상 대상

-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우리측이 일본측에 요구했던 8개 항목을 대부분 보상하고, 일부 항목은 국민정서, 확인곤란 등 이유로 제외
- 해방이전에 발생된 재산권(예금, 국공채 등)과 정부기관의 행위에 의해 발생된 재산권이 주된 보상대상
- 징용 · 징병 미불임금에 대해서는 귀국 시 지급받은 자도 많고, 미지급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제외
- 징용자 미수금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된 사항

* '80년대 이후 피해자들이 일본에 미불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징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문제와 별도로 검토가 필요

- 조선총독부에 대한 채권(우편저금, 생명보험 등)은 해방이후 체신부에서 인계해서 처리해 왔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고 청구권자금 보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 당시 체신부는 화폐개혁을 이유로 1/1000배로 상환했기 때문에 다수가 포기하였고, 현재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일제 식민지배와 관련된 재산권은 국민 감정을 이유로 제외
- 총독부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은급(恩給 : 연금성격)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의 감정과 일본국적 상실시 자격이 박탈된다는 이유로 제외
- 식산은행 등 일제 금융기관 청산 시 발생된 잉여금은 이들 기관이 식민지수탈기관이라는 이유로 제외
- 8.15직후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개인재산권
- '46년 미군정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 맡긴 금액과 해방 후 귀국과정에서 일본세관에 맡긴 기탁금은 지급하고, 해방직후 개인이 일본금융기관에 맡긴 금융자산 등은 제외

* 이러한 재산을 보상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94년)이 제기된 바 있으나, 소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재산권증서 등을 분실한 사례도 많고, 보상액수가 적어 보상결정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음

(3) 시사점

□ 징용자 미불임금 등 미수금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의 소지

○ 당시 미불임금은 상당부분 일본정부기관에 공탁되어 있었으며 일본과 협의 등을 통해 확인하여 보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

□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도덕적 비판의 소지

○ 다만, 부상자의 유족을 보상하게 되는 경우 과거에 기 보상이 이루어진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소지

□ 인적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조치 미비

○ 가해자인 일본정부에 의한 사죄를 담지 못했고, 금전적 보상에 그칠 뿐 피해자 위로조치(위령탑, 유족회관, 서한 등)가 없었음

□ 보상을 하는 경우 서류미비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

○ 당시에도 호적상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징용사망자 유족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세월이 더 흐른 지금은 더 어려움

○ 또한 그간 보상을 포기하고 증서를 폐기한 경우와 형평성 문제 발생

다) 독일의 2차대전 이후 피해배상사례 분석

(1) 전쟁피해 배상 추진경과

□ 전쟁배상문제

○ '53.2.27일 서독은 서방동맹국 33개국과 런던채무협약을 체결. 기본적인 전쟁배상에 그치고 나머지 배상요구는 최종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연기됨

- 냉전상황 그리고 과도한 배상금 부과 시 전쟁재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쟁배상을 연기
(하지만 독일은 폴란드에 상당한 영토를 양보했고, 또 소련이 동독지역에서 막대한 물자를 가져감 : '54년까지 650억~1천억 마르크(3백90억-6백억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추정)

○ '90.9.12 동서독과 주변 4강국 간에 독일통일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런던채무조약에서 유보되었던 평화조약으로 해석됨.

- 따라서 이 조약은 새로운 배상요구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독일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배상요구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이 협약에 명백한 배상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음)

□ 나치박해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 '51.9월 아데나워 총리는 "형언할 수 없는 나치범죄가 저질러졌고, 이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선언

-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피해국 방문 등을 통해 공식 사죄

* '70년 브란트 총리(폴란드 방문 시), '85년 바이체커 대통령(국회연설 시), '02년 라우 대통령(강제 노예노역자 사죄), '04년 슈뢰더 총리(폴란드 방문 시)

○ 전쟁배상과는 별도로 인종·종교·정치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한 나치박해

와 생체실험 등 범죄행위에 대해 일찍부터 배상실시

○ 대외 협정을 통한 피해국에 대한 보상 연혁

《 독일 통일 전 : 유대인 및 서구국가 》

- '52.5월 서독은 "이스라엘 조약" 체결 (이스라엘 정부에 30억 DM, 유대인 회의에 4.5억 DM를 배상)
- '59~'64년에 걸쳐 서독은 서유럽 12개국과 양자간 나치피해보상 포괄협정 체결(총 10억 DM)
* 프랑스에 대해서는 '78년 "독·불 화해재단"에 2.5D억 DM 추가 지불
- '61~'72년 중 나치 생체의학실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유고,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과 개별협정 체결(1억2천만 DM)

《 독일 통일 후 : 동구권 국가 》

- '91년 나치희생자 및 강제노역자(300만 명)에 대한 배상을 위해 독·폴 우호협력조약 체결(5억 DM 출연, 독·폴 화해재단 설립)
- '93.4월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와 조약 체결(10억 DM)
- '96.12월 체코와 공동기금 조성(독일 1.4억 DM, 체코 2500만 DM)

○ 독일 국내법을 통한 보상

- '53년 서독은 연방배상법을 제정, 나치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배상을 실시, 2030년까지 총 950억 DM이 지불될 예정(이 가운데 약 80퍼센트가 외국 거주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됨. 이 법률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수혜 대상자가 줄곧 확대됨)
- '57년 서독은 연방재산환원법을 제정, 나치가 몰수한 희생자들의 독일소재 재산을 반환

□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

○ 독일 통일 전까지 강제노역이란 전시의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로 불법적인 나치박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한 배상문제는 런던 채무협약에 따라 최종 평화조약 체결 시까지 유예된다는 것이 독일 사법부의 입장('63년)

- 그간 독일에서 약 7천 건 정도의 강제노동관련 민사재판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소송은 기각됨
* 독일기업들도 강제노역의 책임을 국가에 전가함(나중에 역사연구에 의해 이의 허구성이 밝혀짐)
* 다만, 독일 기업들은 '50년대부터 회사의 이미지문제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이라는 단서 하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

□ 전체적인 보상 규모

○ 독일은 '03년까지 2차대전 전쟁 책임과 관련 총 614억 600만 유로를 보상(독일 연방재무부 자료)

(2) "기억 · 책임 · 미래 재단"의 설립

□ 설립 배경

○ '80년 말에 이미 녹색당을 중심으로 강제노역을 나치의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강제노역자 배상법안을 의회에 상정

○ '90년 독일 통일 이후, 강제노역자 배상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
- '96.5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강제노동에 대한 개인보상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판결
-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강제노역자를 사용한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독일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
- '99년 초 생체실험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독일기업을 상대로 미국과 폴란드에서 소송을 제기

○ '90년대 중반 스위스은행의 문서유출을 계기로 나치정부의 유대인 재산약탈 및 스위스은행의 유대인예금을 가로채려던 범죄가 폭로됨. 유대인 보상문제가 다시 불거짐

○ '99.12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독일 슈뢰더 수상은 상호 서신교환을 통해 재단설립을 지원하기로 합의(미국은 이를 자국 국적의 유대인이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독일 및 스위스와의 외교적 마찰을 중재하고자 함)

○ '00.7.17 독일,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등 8개국, 독일 기업대표, 유대인청구회의 등이 재단설립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독일은 '00.8월 "기억, 책임, 미래 재단법"을 제정
- 미국은 독일 기업들에 대한 미국 내 소송의 기각을 사법부에 권고하는 내용의"Statement of interest" 발송에 관한 독일과의 양자협정에 서명

□ 보상현황
○ 재단 이사회(27명)는 독일정부와 기업, 피해국 정부, 피해자 단체 등이 균등 참여하여 여러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반영
○ 실질적인 보상절차와 보상금 지급은 각 지역에 설치된 파트너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현지실정을 반영
○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내용 및 보상신청 절차 등을 홍보
○ 접수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
- 증거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인우보증서 제출도 수용
○ 독일 정부 및 기업들은 '39~'45년 사이에 동원된 강제노역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위해 기금 100억 DM을 출연(정부 50억, 기업 50억)
○ 수혜대상자
- 강제수용소나 게토에서 감금당한 채 강제노역한 사람(최고 1만 5천 DM)
- 2차대전 중 자국에서 독일제국 지역으로 추방되어 산업체 또는 공공부문에서 강제노역하고 구금된 사람(최고 5천 DM)
*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근거로 노동의 내용 및 기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금액을 보상
○ 기금수령자는 독일기업들에게 다른 소송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
○ 7억 DM의 '미래기금'을 설치, 후세대의 '화해'를 위한 사업 실시
○ '01.6~'05.1월까지 연 161만 4천 명에게 38.5억 유로를 지불
* 1인당 평균 약 3,372유로(440만원 상당)를 수령

(3) 독일의 전후 피해보상에 대한 평가 및 대책관련 시사점

□ 피해보상에 대한 평가

○ 독일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나치의 유태인 박해와 몰수재산에 대한 보상에서 시작되어 외국인 강제노역자 보상으로 그 범위와 대상자가 지속적 확대

- 그러나 강제노역자 문제의 경우, 독일은 배상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역사적 · 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함

○ 한편,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죄발언을 반복하여 현재의 독일과 나치정권은 다르다는 국제사회의 신뢰획득과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 이해 관계국들의 양해를 얻어냄

○ 일본과 달리 전쟁피해배상 협정이라는 국제법적 의무에 의거하여 보상을 한 것이 아니라, 나치청산과 국제사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치범죄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실행

- 강제노역의 경우, 초기에는 전쟁배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나치의 불법적 행위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에서 누락되었으나, 점차 인권의식이 성장, 역사연구로 피해사실의 확인 그리고 국제법에 호소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됨

□ 기금관련 시사점

○ 강제노동과 관련해 미국 내 소송에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여론화에 성공했던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함

○ 미국 내 피해자 단체소송, 독일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기업합병 등을 통해 미국에 진출하려던 독일기업에 부담을 줌. 이를 인식한 독일 및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섬

○ 배상금 협상에 경험이 많은 유대인협회의 변호사들이 협상을 주도

○ 독일 내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은 유대인에 대한 보상이 계속 반복되는 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정당도 있었으나, 이를 정치력으로 극복함

○ 향후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함

□ 문제점

○ 보상액수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정상임금에 못 미치는 미약한 상징적 수준 이어서 피해자 반발

○ 강제노역자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의도하고 있으나, 이에 불복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음

라. 제 3차 민 · 관공동위원회

1)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05.8.26, 정부중앙청사 회의실 (916호)

나) 참석자

○ 정부위원 : 법무부장관, 보훈처장, 외교부 · 재경부 · 예산처 · 행자부 차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 7명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총리비서실장, 공보수석비서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사무국장, 복지부 국장 참석

○ 민간위원 : 이용훈(위원장), 양삼승, 한정숙, 유병용, 백충현, 전종훈, 조건호, 이복렬, 손혁재 등 9명

다) 안건

○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정부대책방향 (유종상 대책기획단장)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최봉태 사무국장)

라) 주요 논의내용

○ 불법행위는 일본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 (법무부장관)

○ 피해자들의 주요 요구사항

- 피해자 지원 시 타사안과의 형평성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별도 취급, 신고 시 심사기준을 완화, 미불임금 일본에서 반드시 환수 노력 (이복렬 위원)

○ 일본측에 명부 등 요구에 대한 외교부의 방안
- 미수금 공탁명부를 요구해서 외교사료 확보 (외교부 차관)
- 개개인이 공탁금 서류 요구 시 일본에서 받을 수 있으나 공적으로 요구할 필요 있음 (이복렬 위원)

○ 피해자 신청, 명부 확보 등을 통해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정부대책 시안을 마련 할 것

○ 용산기지는 민족역사공원으로 만들고 효창공원은 독립공원으로 추진 중이므로 용산기지에 피해자 추도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사추진위원회와 합의 필요
- 추도공간이 묘역이 되어서는 안되고 역사적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함

○ 피해자 신고 중 거짓 신고자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보훈처 장관)
- 같은 지역 동원자에 대한 중복여부 확인, 허위신고 시 형사처벌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강구 (진상규명위 사무국장)
- 진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신고마감 시한을 두지 말고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대책기획단 단장)

○ 지원금액 수준은 국가유공자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함 (보훈처 장관)
- 국가 지급능력, 신고자 수도 감안되어야 함

○ 사할린 동포들의 요구내용
- 국내 이주자와 사할린에 남은 가족이 이산가족 상태 해소를 위해 자유왕래 요청이 많음 (진상규명위 사무국장)

○ 일본에 대하여 추가협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함 (유병용 위원)

2) 회의 자료

가) 한일회담 문서공개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 그간 민 · 관공동위 분과위 논의결과 등을 종합 정리하여 청구권협정 효력문제 및 정부 대책방향 등에 대한 본 보고서를 작성

(1) 1차 한일회담 문서공개(1.17) 이후 추진상황

○ 민·관공동위원회 3개분과위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정부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미공개 외교문서 분석 등을 통하여 청구권협정관련 법적효력, 한국정부의 책임유무 및 책임범위, 국내외 보상사례와의 형평성문제 등 검토
  - 협정효력 및 개인청구권 소멸여부, '75년 정부보상의 적정성, 피해자 대일소송 시 논리 및 패소이유 등 법적문제
  - 독일의 나치시대 강제동원 피해보상, 일본의 전후보상 등 외국사례, 민주화 보상 등 국내 과거사 보상사례의 시사점 등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진상규명차원에서 1차 피해신고 접수를 완료('05.2~6)하고 현재 유형별 분석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진행 중

○ 진상규명위에 신고한 강제동원 피해자중 1천명을 표본추출하여 생활실태 등에 대하여 전화설문조사 실시(5.25~6.30, 보건사회연)
  -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83세이고, 생존자의 63%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 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50%에 달함
  - 피해자(생존자 및 유족)들의 대부분(75%)은 정부대책 1순위로 일시금 지급을 희망하였고, 20%는 생계비 또는 의료비지원을 희망

(2)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법리해석 및 '75년 보상의 적정성 검토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범위와 정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대일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침

○ '75년 정부 보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밝힐 필요
  - 주요 민원 제기사항 : 피해보상조로 받은 무상원조액의 대부분을 경제발전에 사용, 보상대상자 누락, 보상수준 미흡

□ 한일청구권협정의 기본성격

ㅇ 한일청구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배 배상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한일양국간의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

*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 : '45년 이전 정상적 관계에서 발생한 국가간·개인 간 채권채무로서 당시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것을 의미

ㅇ 한국정부는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조선총독부 대일채권, 해방 직후 일본인 예금인출분 등)과 개인재산권(예금, 국공채, 일본 은행권, 미수금 등), 강제동원 피해보상청구 등을 대일청구 8개 요강으로 일괄 정리하여 협상당시 일본에 제시

- 다만 8개 요강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청구(5항. 라)는 전쟁피해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어 재정적·민사적 성격의 채권채무로 보기 어려움

청구권협정에 따른 국내보상 조치

ㅇ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에서 10년('66~'75년)간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도입

- 일측은 8개 요강 보상액으로 당초 무상 7천만 불을 제시했으나, 그 후 양국간 정치협상에서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총액 결정 방식에 의해 무상 3억 불로 타결
- 3억 불에 상당하는 물자로 10년 동안 나누어 도입되었고, 이를 판매한 대금은 매년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에 납입됨(판매금액 누계 1,052억 원)

ㅇ '75년 정부의 피해자 보상

-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법('71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74년)을 제정
- 무상자금(3억 불) 물자판매금액 1,052억 원 중 95억 원(9%)을 피해자에게 보상('75~'78년)

* 강제동원 피해 : 사망자에게만 1인당 30만원 지급(8,552명, 27억원)

* 재산권 피해 : 미수금, 은급, 금융기관 소유분 등을 제외하고 '45년 당시 1엔당 30원의 비율로 보상(68억원)

※ 경제개발 분야에 대한 무상자금 사용 : 농업증산 337억(32%), 포철지원 174억(16%), 수산개발 65억(6%) 등 총 786억원(73%)

□ 재정적 · 민사적 채권채무관계

○ 법적 효력

- 한국정부는 "해방 전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한국정부와 국민의 민사적 재산권"을 일본이 자국내 조치를 통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청구권협정에서 합의하였으며,
- 따라서 협정체결 직후 제정된 일본 법률에서 소멸시킨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한국민이 일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어렵게 되었음
- 그러나 무체재산권 · 후생연금 탈퇴수당 등 일부 개인재산권은 일본법에서 소멸시키지 않았으므로 개인재산권 소멸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최근 일부학계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시 우리정부의 협상의도 및 내용, 국제법상 관행, 외교조약의 대외적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 한국정부의 책임

- 일본 국내법으로 소멸시킨 한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일본이 소멸시키는 것에 동의해 주었으므로, 우리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75년에 정부가 보상 법률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한 바 있음
- '75년 당시 보상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신고누락, 보상비율 미흡 등을 이유로 현재 단체결성, 정부상대 소송제기 등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추가로 보상할 법적 책임은 없음
- 당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재산권(강제동원자의 미수금, 은급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개인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정부의 도덕적 책임 문제가 남아 있음
- 특히, 강제동원자 미수금(미불임금 등)은 현재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당시 정부가 확인노력도 하지 않고 "증빙자료 미비"를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도의적 책임차원에서 구제방안 검토 필요

* 은급(공무원・직업군인의 연금)은 '75년 당시 친일파 재산 성격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했는데, 현재 별다른 민원제기는 없는 상태임

□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법적 효력

- 국가권력이 개입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군위안부, 생체실험, 강제동원 중 범죄행위 등)는 일본정부가 일제하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해방 전 일본 헌법상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따라서, 한국민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진상이 규명되는 경우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에 책임추궁 가능

* 다만, 현재 일본 법원은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구제가 어려움

○ 한국정부의 책임

- 우리 국민의 일본정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음

□ 강제동원 피해보상

○ 법적 효력

-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강제동원이 해방 전 일본법에 의한 합법행위였으므로 한국민은 보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 반면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적 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무상자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이 반영된 것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

- 그러나 피해자 개인들이 “강제동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 물질적 총체적 피해”라는 법적 논거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일본 법원은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피해자 구제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한국정부의 책임
-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상할 책임은 없으나,
-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음
* 한국정부가 60년 5차회담시 8개 요강 보상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2억 불 중 강제동원 보상에 대해서 3.6억 불(30%)을 산정한 바 있음

○ 그런데 '75년 당시 정부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음
- 강제동원기간 중 부상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1인당 30만 원으로 낮게 책정
* 우리측은 협상당시 일본에 사망자 1,650불('75년 기준 약 106만 원), 부상자 2천 불을 요구했으나, '75년 국내보상 시 사망자에 대해서만 30만 원을 보상

□ 기타 사안

○ 사할린 동포
- 사할린 동포의 경우 '65년 당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아 한국정부가 이들의 문제를 청구권협정에서 다룰 수 없었으므로 협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본도 이를 인정하여 '90년대 이후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음

○ 원폭피해자
- 원폭피해 문제는 청구권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전후 일본이 제정한 원폭피해지원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도 '80년대 이후 의료지원 등 일부 혜택을 받고 있음

(3) 대외적 대응방안

□ 군위안부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 문제

○ 반인도적 전쟁범죄행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추궁하고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

- 피해자들이 일본 및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군위안부 관련 소송 재판부 등에 한국정부의 법적 견해를 명확히 밝히고, 민간재단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소송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사할린 동포 및 원폭피해자 문제

○ 사할린 동포

- 우리정부의 사할린 동포 피해실태조사('05.6~8월)를 토대로 일본정부와 기존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생활 지원 사업 확대 및 추가적인 지원사업 등에 대해 협의

○ 원폭피해자

- 피폭자에 대한 진료·생활보조금 등 기존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및 원폭피해자 2~3세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생활지원을 일본측에 요구

□ 일본측에 강제동원 관련자료 제공 요구

○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일본정부에 강제동원자 공탁금 명부,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상병기록 등 일체의 강제동원 관련자료 요구

* 강제동원 명부가 공개되어 강제동원 피해규모와 내용이 밝혀질 경우 일본의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도 예상됨

(4) 국내적 대책방향

□ 강제동원자 미수금 문제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은 개인별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은급과 '75년 당시 보상했던 재산권은 제외)

- 일본정부가 보관중인 강제동원 군인·군속 노무자 "공탁금 명부"를 확보 필요

* 미수금은 종전 이후 강제동원자들의 조기귀국 등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돈으로서 당시 일본정부의 지시로 일본의 각 지방공탁소에 공탁되어 있으며, 공탁금 명부에는 성명, 본적, 항목별 금액(예금, 미불임금, 유족조의금)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강제동원 인적 피해 문제

○ 강제동원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75년 정부 보상이 불충분하였다는 도의적 책임 및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

○ 이러한 인도적 지원 원칙하에 앞으로 강제동원 인적피해에 대한 개별적 금전지원 여부 및 인적 피해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여부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결정

-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금전 지원을 할 것인지, 여타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의료등 간접지원방식으로 할 것인지
- 강제동원 피해 유형(사망자, 부상자, 미부상 생환자) 및 피해정도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것인지
- '75년 당시 기보상 받은 사망자 유족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보상신청이 누락된 사망자 유족에 대한 구제 여부 등 결정 필요

□ 희생자에 대한 위로 및 역사교육

○ 역사교육관 건립 또는 희생자 추도공간 조성 등을 검토

□ 대책추진기구

○ 정부기관 중심으로 할 것인지, 재단 등 민간기구를 통하여 추진할 것인지

* 우리정부는 '75년도에 재무부가 피해자 보상업무를 담당했고, 일본(적십자사)과 독일(기억미래재단)은 민간재단을 통해 보상했음

○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조사 차원에서 피해신고를 받아 피해자 판정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설립될 대책 담당기구와 업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대책 추진방향

○ 민·관공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피해자단체 및 사회각계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대책방안 마련
- 대책기획단 및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실무적으로 지원

○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시안 마련(10월 중)
-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범위, 피해유형별 지원방안, 재원마련방안 및 대책 추진기구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대책시안에 대하여 피해자단체 설명, 당정간 협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11월 중)
* "바른 역사 ·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민자문위원회"에서도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

○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안(주관부처 결정)을 마련(12월 중)

마. 제 4차 민 · 관공동위원회

1)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06.3.8, 정부중앙청사 회의실 (916호)

나) 참석자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회의주재), 양삼승(민간위원장)

○ 정부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재경부2차관, 외교통상부1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청와대민정수석 등 9명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간사), 정무수석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사회조정1비서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사무국장

○ 민간위원 : 한정숙, 유병용, 백충현, 이복렬, 손혁재 등 5명

다) 안건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대책방안 (대책기획단 유종상 단장)

○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추진상황 (진상규명위원회 박성규 사무국장)

라) 주요 논의내용

○ 한국정부의 대책마련으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할 필요

○ 일반 국민들이나 일본측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은 한일협정에서 다루어진 사항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시

⇒ 법률 서문 또는 법안 제안이유서에 법적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명기하기로 함

○ 일본을 상대로 강제동원피해 보상청구소송 지원필요

⇒ 정부가 직접 피해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고,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피해 입증자료를 일본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음

○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조카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 6·25참전용사 등 타 보훈대상자와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 여타 보훈체계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한 뒤, 추후 논의)

○ 위로금 지급수준이 적다는 의견

⇒ 국민의 세금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

성이 중요하고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 지원수준을 2천만 원으로 검토한 배경은
① 청구권협정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수준과
② '65년 당시 정부가 받은 금액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배분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준 등을 고려

○ 앞으로 피해자지원업무를 추진할 행정자치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2) 회의 자료

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대책 방안

(1) 추진 경위

□ '05.8.26일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면공개를 계기로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

○ 한일청구권자금에 의한 '75년 정부 보상이 불충분하였다는 도의적 책임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적피해 및 미불임금 피해 등에 대해서 추가적 구제조치 강구

□ '05. 9월부터 민·관공동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 전문가간담회,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부대책 방향에 대하여 사회각계의 여론을 수렴

○ 정부가 도의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90%)가 찬성하였고, 지원방법으로는 금전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58%)이 많음

○ 지원대상범위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미부상 생환자까지 모두 금전 지원하자는 의견(55%)이 많았으나, 지원의 우선순위는 부상생존자(64%), 사망자유족(27%), 미부상 생환자(2.7%) 순으로 제시

○ 사회각계 전문가들도 지원대상·방법 등에 대해 일반국민들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으며,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민·관공동위원회 주관 피해자 생활 실태 조사, 공청회, 피해자단체 회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

□ 국민여론 및 피해자 의견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민·관공동위 민간위원회의(4회) 및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정부 지원 대책 방안 및 법률(안) 마련

○ 민·관공동위 민간위원 대부분은 한국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

(2)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의 취지 및 기본방향

□ 지원대책 추진취지

○ 정부의 도의적 책임 이행

-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은 법적 책임에 따른 것은 아니고, '75년 당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보상이 불충분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도의적 차원에서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임

○ 인도주의적 원칙 및 국민통합 도모

- 일제식민치하에서 일반인이 감내해야 할 수준을 넘는 특별한 고통을 겪은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가 성의껏 위로하고, 의료 등 복지적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여 국민통합 도모

○ 역사적 교훈의 계기

- 위령공간조성, 위령행사, 강제동원 수난지역 탐방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아울러 후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지원대책 추진의 기본방향

○ 강제동원피해 지원범위 확대

- '75년 정부보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상자, 행방불명자, 귀국과정에서의 사망자(귀국선 침몰 등), 강제동원기간 중 미수금 피해 등을 추가로 구제

* '75년 정부보상 시 강제동원사망자(8,552명)에게만 1인당 30만 원 지급

○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 행방불명, 부상 등 희생정도가 큰 경우에는 위로

금을 지급하고, 미부상 생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복지 대책 강구

○ 피해자 입증부담의 최소화

- 정부차원에서 관련자료 확보, 증언청취 등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자의 피해입증부담 경감
-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의 피해판정결과를 지원대책 추진에 있어서도 활용함으로써 행정절차 중복을 최소화

○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 외교노력

- 군위안부 등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활동도 활발히 전개
-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일본과의 외교협의를 통해 지원조치 확대

(3)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

○ 위로금 지급대상

- 국외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사망자 · 행방불명자의 유족 및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본인 및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강제동원기간 중 행방불명자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행방불명판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지원대상에 포함

  * 국내 강제동원피해자는 이번 지원대책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군위안부 피해자 · 원폭피해자 · 사할린 한인 및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위로금 지급수준

- 위로금 지급수준은 외국의 유사한 지원사례 및 국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1인당 2천만 원으로 결정
- 다만, 부상자중 경증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액(1천만 원)을 지급하고, '75년 당시 보상을 받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당시 받은 금액의 현재가치(234만원)를 차감하여 지급

* '88~'95년 일본은 「대만주민인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만인 군인사망자 · 중증 장해자 1인당 2백만 엔(약 2천만 원) 지급
* '89~'93년 미국은 「시민자유법」에 의거, 2차대전 중 억류된 일본계 미국인 1인당 2만 불(약 2천만 원) 지급

○ 위로금 지급 유족범위

- 위로금을 받을 유족은 위로금 성격을 감안, 국외 강제동원피해자의 직계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되, '75년 당시보다는 현실에 맞게 확대
- ('75년) 처, 자녀, 부모, 조부모 → ('06년) 처 · 직계후손, 부모, 형제자매

□ 국외 강제동원기간 중 미불임금 등 미수금 구제

○ 구제대상 미수금

- 강제동원 당시 일본정부·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었던 임금, 제수당, 부조료, 저축 등 미수금에 대해 구제
  * 후생연금은 현재 일본정부에서 탈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제외

○ 미수금 구제기준

-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본과 '65년 청구권협정이 없었더라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직접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준('95~'99년 일본이 대만 징용자에게 보상한 1엔당 120엔)을 지급
- 일본화폐 1엔당 1200원으로 환산 · 지급하되, 100엔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100엔으로 간주
  * '75년 대일재산권 보상기준(1엔 : 30원)에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너무 낮은 금액이 되어 지원취지가 훼손될 가능성

○ 미수금 지급대상 유족범위

- 이번 미수금 구제조치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상이 아니고, 인도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지원대상 유족범위를 위로금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

☐ 미부상 생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성격의 지원

○ 미부상 생환자 지원의 성격

- 한일회담 협상과정과 국내강제동원 등 일제하 타 피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국외 강제동원 미부상 생환자에게 개별적 위로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나, 국민통합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특별지원을 강구

○ 지원 방법

- 생존자는 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이고 고령임을 감안, 사망시까지 본인이 지출하는 의료비중 일부(연간 50만 원 이내)를 지원
- 생환 후 사망한 강제동원피해자의 경우,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손자녀 1명에게 학자금(중고생에게 연 14만 원씩 3년간)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중고생)에게 부교재비 명목으로 연 14만원 지급 사례

☐ 정신적 위로를 위한 조치 병행

○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시 대통령 명의의 위로서한을 동봉

  * '93년 미국은 전시 중 억류한 일본인에게 위로금 지급 시 클린턴대통령의 사과서한 첨부

○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 위령공간조성, 유골봉환, 위령행사 등 희생자 유족을 위로할 수 있는 조치를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

○ 강제동원 수난지역 탐방 등 후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

(4) 지원 추진체계

☐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 총리소속으로 지원심의위원회(9인)를 두고,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서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등급판정분과위를 산하에 설치

○ 피해자는 진상규명위 피해판정결과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위원회에 신청, 지원심의위원회는 심사 후 지급

- 지원신청기간은 일본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료입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지원심의위원회는 피해입증을 위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판정결과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결정

□ 지원대책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법률안의 입법화(입법예고, 당정협의 등)를 추진하고, 지원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 대책시행을 실무적으로 지원

(5) 향후 추진일정

○ 법률안 입법예고 및 당정협의 : 3월 중순

○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 : 4월 말~5월 초

○ 하위법령제정, 소요예산확보, 지원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준비 : '06년 하반기

○ 지원대책 시행 : '07년 상반기

※ 외교부는 가급적 공탁금 명부, 상병기록 등 강제동원 관련기록이 입수될 수 있도록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를 가속화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에 지속적으로 책임추궁

3. 민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

가. 민간위원회

1) 개요

민간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청구권협정에서 미해결된 사항 및 지원형태 등 국내외적 대책방안 논의와 지원수준, 지원방식, 지원을 위한 추진기구 설치 등의 정부지원대책 수립에 대한 예상쟁점 협의를 위해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제 1차 민간위원회 ('05.6.24)

□ 주제 : 한일협정관련 국내외적 대책방안

□ 주요내용

《 한일청구권협정의 법리해석 》

○ 청구권협정대상에 일본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았고, 개인재산권도 일괄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

《 대외적 대응방안 》

○ 한일협정에서 미해결된 사항(군위안부 문제, 사할린 한인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및 재일한국인차별)은 일본정부의 자발적인 사죄와 배상, 차별 철폐 등을 촉구

《 국내대책 문제 》

○ 개인재산권중 '75년 당시 보상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으며, 징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도의적 책임에 따른 것

○ 정부 지원형태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을 제시
- 법적 책임이 있는 것만 개별 보상하고, 나머지는 기념사업으로 추진
-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고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유형에 따라 지원
-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고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유형에 따라 지원하되, 미수금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보상 실시

○ 도의적 책임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방법 제시
- 징용으로 인한 고통에 일시금으로 위로금을 지원
- 위로금에 생계지원금(연금형태)까지 추가로 지급
- 의료지원은 징용과정에서 장애부상을 입은 생존피해자에 한하여 검토 필요

3) 제 2차 민간위원회 ('05.11.7)

□ 주제 : 한일협정 관련 대책의 예상쟁점

□ 주요내용

○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추진시기 논의
- 고령인 피해자와 오래된 사안임을 고려 최대한 빨리 보상과 지원 필요
- 충분한 진상규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 지원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자금 수령 후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으므로 개별보상을 해야 함
- 개인별 금전보상보다 간접적 단체보상이 바람직
- 개인별 금전지원을 일정부분 실시하고, 단체보상도 병행해야 함

○ 지원 수준에 대한 논의

-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범위 내에서 지급
- 국제관례 등을 참고해 적절한 수준에 맞추어 지급

○ 지원 대책 재원의 부담문제에 관한 논의
- 청구권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 경제발전으로 전 국민이 혜택을 입었으므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

○ 지원 추진기구 선정 문제
-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정함
- 정부의 계속적 관여가 추가 보상요구를 부를 수 있으므로 별도 민간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별 보상업무는 정부가 담당하되, 기타 사업은 재단 등을 설립해 추진

나. 분과위원회

1) 개요

분과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이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대내분과위원회(5명), 대외분과위원회(5명), 법리분과위원회(3명)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대내분과위원회에서는 주로 지난 75년 정부보상내용과 민주화관련 국내보상사례 등에 대해, 대외분과위원회는 독일의 전쟁피해 보상사례 및 일본의 과거청산 및 자국내 보상 등에 대해서 그리고 법리분과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의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 대내분과위원회

가) 제 1차 대내분과위원회 ('05.4.19)

□ 주제 : '75년도 피해보상내용 분석 및 시사점

□ 발표자 : 영산대 최영호 교수

□ 주요내용

○ '75년 보상내용
- 인적피해 보상 : 일제 강제징용 · 징병피해자 중 '45.8.15 이전 전투나 노

역 중 사망하거나 이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인당 30만원을 보상금으로 유족에게 지급

- 물적피해 보상 : 예금, 보험 등에 대하여 1엔당 30원으로 환산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상실시

○ '75년 보상 관련 문제점
- 청구권보상 대상에서 사망자보다 피해자 당사자의 고통이 큰 부상자를 제외
- 인적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음
- 호적상 사망처리 되지 않은 자에 대한 보상 방법을 강구하지 않음
- 홍보 부족, 신고기간 한정, 절차상의 미흡한 점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남아있음

나) 제 2차 대내분과위원회 ('05.5.13)

□ 주제 : 일제 강제동원의 유형 및 범위

□ 발표자 :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정혜경

□ 주요내용

○ 노무동원 (모집, 관알선, 국민징용, 여자근로정신대 등)
- 국외동원
  · 정의 : 국가총동원법('38.5월 공포)에 의거해 한반도 외로 정책적 · 조직적 · 집단적 · 폭력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의 노무자
- 국내동원
  · 정의 : 광의 -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해 편성된 사회적 조건에 의해 노동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에 종사한 노동자('31년 ~ '45년)
    협의 - '38년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생산된 일련의 법률을 근거로 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동원된 노동자(모집, 관알선, 징용, 각종 보국대, 각종 봉사대, 각종 근로단, 각종 청년단, 각종 작업반, 각종 정신대로 동원)

○ 군인, 군속
- 군인동원
  · 정의 : 일본이 침략전쟁의 수행을 목적으로 '38년 육군특별지원병령 공

포 이래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조선인을 대상으로 일본 육·해군의 현역 또는 제1보충역 등으로 동원한 일체를 총칭

- 군속동원
  - 정의 : 일반적으로 군속은 '군무원(軍務員)'의 구 용어로서 육·해군에 종속하는 문관, 문관대우자, 고원·용인 등 「군속선서」 또는 「군속독법」에 의해 복무하는 일체를 총칭

○ 군위안부
  - 정의 : 일본제국이 만주사변을 도발한 '31년부터 패전한 '45년까지,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효율적인 전쟁수행을 위해 일본군의 성병 예방, 군기 누설방지, 현지여성 강간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안부제도를 만들고 이를 위해 동원한 여성들을 지칭

○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

다) 제 3차 대내분과위원회 ('05.5.20)

□ 주제 : 민주화 관련 국내보상·지원사례 분석

□ 발표자 : 전남대 정호기 교수

□ 주요내용

○ 국내보상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 보상금, 생활지원금, 위로금, 의료지원금, 일수보상금
-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 보상금, 생활지원금,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 국내지원사례 분석
- 독립유공자 지원
  - 연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
  - 연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 제대군인 지원
  · 취업지원, 대부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 채용시 우대
- 참전유공자 지원
  · 증서 수여,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장제 보조,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
- 일본군 위안부 지원
  · 1회성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피해자 치료 및 영구임대주택 지원 등

○ 과거 보상 및 지원에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불만 및 문제에 대하여 논의

○ 과거 보상 및 지원 수준과 강제동원 보상 또는 지원 예정 수준의 비교, 대조

3) 대외분과위원회

가) 제 1차 대외분과위원회 ('05.4.18)

□ 주제 :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효력 해석에 따른 국내외적 대응방향

□ 발표자 : 건국대 법대 김창록 교수

□ 주요내용

○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해석 문제

- 기본 해석 문제
  · 협정이 영토의 분리에 따른 사후처리로 볼 것인지, 식민지 배상으로 볼 것인지 논의
  ·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라는 부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해석 차이 점검

  * 「한일기본조약」 제2조 - '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국인 개인의 권리 문제
  · 일본정부는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다가 '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인은 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입장 변경
  · 한국 정부는 "'90대 이후 「청구권협정」 자체는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 따라서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해 한국인 개인의 권리가 직접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한국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

- 일본정부에 대한 대응 방향
  - · 직접 대응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국가적 또는 개인적 차원의 배상 요구 가능
  - · 시민단체의 국제적 · 국내적 활동을 지원하거나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
- 국내 대응
  - ·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한국인 개인의 권리에 관해, 한국 정부의 책임 범위에 따른 조치에 대해 논의

□ 주제 : 독일의 전쟁피해 보상사례(2차대전 이후)

□ 주요내용

○ 독일 통일 이전

- 서독
  - · 나치 피해보상에 주력
  - · '52년부터 배상을 시작하였으며 통일 전까지 약 500억 유로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
- 동독
  - · 크고 작은 전쟁배상금을 부담
  - · '54년 소련이 배상요구를 중단할 때까지 650억~1천억 마르크(미화 3백90억~ 6백억 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추정

○ 독일 통일 이후

- 과거 배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상 실시
- '00년 독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모아 『기억 · 책임 · 미래 재단』 설립하여 '01.5월~'05.1월까지 연 161만 4,000명에게 38억 4,830만 유로를 지불

○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보상 정책

- '03년까지 2차대전 전쟁 책임과 관련 총 514억 600만 유로를 보상
- 나치 홀로코스트 희생자 및 전쟁 피해국에 대하여 총리 및 대통령이 수

차례에 걸쳐 사죄
- 개인 피해보상에 관한대부분의 개별소송은 기각
- 독일 기업들은 유대인에 한하여 보상 및 지원

나) 제 2차 대외분과위원회 ('05.6.14)

□ 주제 : 일본의 과거사청산 문제에 관한 외교적 대응 전략 (영산대 최영호 교수)

□ 주요내용

○ 외교 과제 및 전략
-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현시점에서 조약과 협정의 파기를 주장할 수 없음. 이는 40년간 지속된 한일관계의 기본 틀이기 때문이며, 정부가 바뀐다 해도 국가간의 조약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되어야 함
- 일본-북한의 청구권 협상은 가까운 장래에 재개될 가능성은 적으나 재개되더라도 일본측은 한일수교의 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일협정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개인피해자 보상 문제는 한국이 자체해결 노력을 보일 때 일본에 대해 도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법적 분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승서할 가능성도 희박하며 외교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 손실이 클 것임

○ 향후 중심적인 외교적 추진 방안
- 일본과의 양자간 협의에 대한 대응 원칙 논의
- 중장기적으로 대일외교에 영향을 끼칠 주요 변수 검토
- 일본 국민에 호소하는 방안 모색
- 다른 아시아 피해국과의 공조 및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 방안 논의
- 대국민 외교현실 교육 방안 논의

□ 주제 : 일본의 과거청산 및 자국내 보상

□ 발표자 : 한신대 하종문 교수

□ 주요내용

○ 일본의 전쟁배상

- 배상금액은 피해국의 요구를 훨씬 밑도는 액수로 결정
- 대부분 배상(혹은 무상경제협력)과 차관으로 지불
- 일본의 배상총액은 21년간 10.12억 달러, 무상경제협력은 4.96억 달러로서 합계 15.08억 달러
- 매우 관대한 배상으로 인해 과거사 청산에의 함의는 미약

○ 일본 국내의 전쟁희생자 원호정책
- 전쟁 후 '일본국민'에게만 한정하여 각종 전쟁희생자 원호정책을 펼쳐 후한 보상을 함
- 보상 대상에 전범도 포함
- 일본 보수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유족 관련단체는 대표적 우익단체화

4) 법리분과위원회

가) 제 1차 법리분과위원회 ('05.5.17)

□ 주제 : 대일 과거청산 소송의 현황과 향후의 과제

□ 발표자 : 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

□ 주요내용

○ 일본에서의 대일 과거청산 소송
- '05.3.1일까지 79건(대만, 중국포함)의 대일과거청산소송 중 한국인 소송은 40건

○ 대일 과거청산 소송 종합 평가
-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권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 유지
- 그 외에 국제법상 개인의 법주체성, 국제법 위반의 민사적 책임추급 유무 등 쟁점이 있음
- 향후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해결을 모색해 왔던 국제사회의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주제 : 한일청구권 협정관련 법리적 쟁점 검토 (한일대책기획단)

□ 주요내용

○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

-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청구권"의 정의가 규정되어있지 않고, "법적 근거 있는 실체적 권리"라고 하는 재산·권리·이익과의 구별도 불명확
-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긴 시간이 지나 시효에 의해 소멸되었을 가능성

○ 쟁점관련 논의

-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ration material)에 대한 쟁점
  · 대상 범위가 대일청구 8개 요강에 국한되는지 여부
  · 군위안부·원폭피해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 개인청구권과 개인재산권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우리정부의 청구권 개념에 기초하여 각기 소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
- 소멸론 또는 비소멸론을 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점·불리점에 관하여 논의

나) 제 2차 법리분과위원회 ('05.6.8)

□ 주제 : 법리문제 검토결과 및 향후과제

□ 발표자 : 한일대책기획단

□ 주요내용

○ 법리문제 검토결과

-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개인 청구권의 실제 소멸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함
- 미수금(공탁금)문제는 향후 정부대책에 연계하여 검토 필요

○ 우리정부의 견해를 밝히는 경우에 예상되는 향후 영향 및 대응

- 우리정부가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표명해도 현실적으로 일본·미국 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적음
- 일본에서 외교문제로 제기할 경우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을 토의하는 기회로 이끌어낼 필요

- 국민들이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일배상을 받아내길 요구할 경우 군위안부문제 등과 같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직접 해결노력을 지속
- 징용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는 개인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차원에서는 법적 요구보다 외교적 대응이 바람직함을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음

4.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 내용

가. 개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및 지원법안 쟁점사항 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에 대한 최종 협의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총 6차례 개최하였다. 차관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해서는 약 10여 차례 개최된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협의·조정하였으며,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최종적으로 민·관공동위원회에 상정·결정 되었다.

나.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 내용

1) 제 1차 차관회의

'05.6.4일 개최된 제 1차 차관회의에서는 한일대책기획단의 활동경과에 대해 점검해보고 향후 대책마련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 최근 동향

(1) 피해자 단체들은 피해자 대책 및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토록 요구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및 일제강제연행생존자협의회는 국회 등을 방문하여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인「생활안정지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

○ 원폭 피해자 단체는 별도의 지원법률 제정을 요구 중이고, 보상추진협의회

는 포철 등에 자발적 기금 출연을 요청

○ 한일대책기획단에서 피해자 단체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협조적 분위기

- 다만, 일부 유족들은 광주민주화보상 수준을 요구하면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제기 가능성 등을 거론

○ 보험소비자연맹은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금 및 민영 일본보험의 미지급 피해를 접수(9천여 건)하고, 보상입법추진을 위한 국회공청회 개최 예정(6.23, 최재천 의원)

(2) 한일 양국 언론은 한일협정체결 40주년(6.22) 특집기사 등 준비

○ SBS 뉴스추적에서 강제징용, 공탁금, 후생연금, 간이생명보험금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획취재 보도(6.1)

○ 5.16~20중 일본 간사이 TV에서 피해자단체 및 한일대책기획단 등 여러 정부기관을 취재

- 대책기획단에게는 공개된 문서의 주요내용과 국민의 반응 등을 질의

○ 일본 NHK에서 대책기획단에 한일수교 40주년 특집방송 인터뷰 요청

(3) 정치권은 대체로 관망 자세이며, 의원 개별적으로는 토론회 등 개최

○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대책 마련 시까지 지원법안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

- 대책기획단 부단장이 장복심, 문병호의원에게 정부대책 현황 설명

○ 원폭피해자 지원법안(조승수 민노당의원)에 대한 국회토론회 개최(5.18)

○ "한일협정과 재일동포문제" 토론회(이광철 의원 등 우토로 의원모임) 개최(6.1)

나) 제11차 조정회의 이후 대책단 추진현황

(1) 민·관공동위원회 운영

○ 대내분과 개최(2회)

- 일시 : 5.13, 5.20

- 참석자 : 양삼승, 유병용, 조건호, 이복렬, 전종훈 위원, 관계부처

- 안건 : 강제동원의 유형과 범위(진상규명위 정혜경 박사)
  여타 국내보상지원사례 분석(호남대 정호기 박사)

○ 법리분과 개최(2회)
- 일시 : 5.17, 5.31
- 참석자 : 이용훈위원장, 양삼승 위원, 백충현 위원, 이근관 교수, 김영석 교수, 김창록 교수, 조시현 교수, 장완익 변호사, 최봉태 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외교부(조약국, 아태국), 법무부
- 안건 : 청구권협정의 법리적 쟁점검토 (대책기획단)
  대일 과거청산소송의 현황과 향후과제(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 대책기획단, 일본 · 미국 피해자소송 지원 변호인단 면담
⇒ 일본 신일본제철 징용소송(4.25, 야노氏), 일본 미쯔비시 징용소송(5.15, 야마모토 변호사 등), 미국 위안부 소송(5.31,. 로버트 주 변호사 등)

(2)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

○ 목적 : 피해자들의 생활실태와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을 파악하여 정부대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

○ 조사개요
- 기간 : 5.25~6.30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상 및 방법 : 진상규명위원회 피해신고자(노무자, 군인 · 군속, 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등)중 유형별로 1,000명 표본 추출하여 전화조사
- 조사항목 : 재산 및 소득현황, 생존자와 유족의 건강상태, 본인(생존자 및 유족) 및 자녀의 교육정도,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 등
  · 대책기획단 자체적으로 피해자 면담조사를 병행할 계획(6.7~6.17)

다) 민·관공동위 국내분과 토의결과

(1) 강제동원(징용 · 징병 등)의 유형과 범위

□ 발표내용

○ 강제동원이 시작된 시점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38.5월로 보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입장임

○ '44년 강제징용 이전에 모집이나 관알선에 의하여 해외 노무동원된 경우에도 지역할당 등 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강제징용피해와 동일하게 다룰 필요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일본군 소위이상 장교)로 분류된 경우에도 강제동원의 경우가 없는지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필요

- 예 : 가미가제특공소년대원이 사후에 장교로 추서된 경우

○ 국내 강제동원의 경우 개인당 동원 횟수가 2~3회 정도이며, 국내동원이후 다시 국외로 동원되는 경우도 많았음

□ 주요 토의내용

○ 국내 노무동원 피해자(연인원 650만 명)는 그 피해자 규모가 너무나 광범위하므로 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오랜 세월이 지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피해 사건별로 분류가 잘 되는 것이 중요

○ 금전적인 보상에 치중하다가 역사적 의미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에 접근해야 함

○ 개별보상뿐 아니라 후세에 대한 교육,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테마파크조성 등 간접지원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2) 여타 국내보상 · 지원 사례 분석

□ 발표내용

○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피해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만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음

- 광주보상의 경우 그간 5차례나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하여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있음

○ 대부분의 과거사 보상의 경우 피해자들의 선호 및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 의료 · 취업 · 교육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

- 광주보상의 경우 자금관리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이 2~3년 내에 보상금을 다 써버리는 사례 발생, 군위안부의 경우에도 일시금은 대부분 친척들이 가져가고 본인에게 남지 않는 사례도 발생
-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생계가 곤란한 점을 감안 일시금보다는 노인복지 · 생활복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방안 검토필요
- · 강제동원 피해자는 유공자와 같은 공훈이 없으므로, 모든 피해자에게 연금개념으로 현금 지원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을 수 있음

○ 강제동원 보상이나 지원수준이 과도할 경우, 다른 과거사 피해자 보상사례나 국가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6 · 25, 월남전 참전자등은 '01년부터 소액의 지원(월 6만 원)만을 받고 있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거창사건 등 6.25이후 민간인 희생자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충분한 토의를 거쳐 사전에 보상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가급적 보상 · 지원이 일괄종결 되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
- 광주보상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시방편으로 지원이 시작되고, 그 후 법체계가 마련되면서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음
- 보상기준이 변경되고, 신청기간이 반복적으로 연장되었던 것이 보상문제가 장기화되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심사위원들이 교체되면서 기준적용이 달라지는 사례도 발생

○ 불가피하게 인우보증을 인정하는 경우, 허위보증 등 부정이 발생될 우려가 높고, 심사과정에 재량이 개입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불만이 다수 발생 가능
- 허위보증으로 보상을 받은 여러 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음

□ 주요 토의내용

○ 과거사의 해결이 금전 보상문제로만 논의될 경우 역사적 의미가 소홀히 되거나 피해자들 간에 분열을 초래하여 국민통합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음

○ 정부대책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 일제 강제동원은 60년 전의 것으로서 사실규명이 쉽지 않을 것인 바, 개인별로 다루기보다 강제동원의 형태를 사건별로 유형화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

○ 각종 과거사 보상·지원 대책 간 형평성 문제가 매번 제기되는데,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모든 과거사 보상을 일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라) 민·관공동위 법리분과 토의 결과

(1) 주요 토의내용

□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청구권의 범위

○ 청구권협정은 한국의 독립에 따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해결하도록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제4조에 국한하여 법적 근거있는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지,

- 아니면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위안부, 징용자 감금연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청구권"이 해결된 것인지 여부

·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는 현재 대일피해자소송의 주된 쟁점임

⇒ 협정 문언 상으로는 청구권의 범위가 명확치 않으나, 협상과정에서 한일양국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따라 법적근거가 있는 권리만 논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점,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던 점등을 감안할 때,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군위안부, 징용과정에서의 폭력적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의 외교보호권 행사도 가능

· 협상당시 논의되지 않은 원폭피해자, 사할린한인의 보상 문제 등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일본도 인정하고 있음

□ 협정에서 논의된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

○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을 통해 개인재산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의 동의 없이도 국가가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통적 국제법

이론과 개인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멸시킬 수 없다는 현대이론이 대립

⇒ 국제사회에서 개인재산권을 국가간에 총액방식(lump-sum)으로 해결하는 협정이 현재도 보편적이고, 당시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을 우리정부가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개인재산권, 특히 양국 개인 간 재산권은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됨(차기 법리분과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 개인청구권 소멸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재산권(채권 등)을 직접적으로 소멸시켰는지 여부와 협정 자체로 개인재산권을 모두 소멸시켰는지 여부

⇒ 조약문언상으로 볼 때 청구권을 협정자체에 의하여 소멸시킨 것은 아니고 양국 국내법을 통하여 상대국 국민의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 양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그러나 무체재산권과 같이 일본이 국내법적으로 소멸시키지 않은 것도 있고, 일본회사가 한국인소유 주권(株券)을 인정한 사례, 후생연금탈퇴수당 지급사례도 있으므로 실제 소멸여부는 개별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함
- 공탁금의 경우 일본 국내법조치로 소멸시켰으나, 공탁과정상의 법적 흠결(공탁미통지)이 있다는 주장 등이 있으므로 좀더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

□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우리정부의 책임

○ 양국간 국내법에 의해 개인재산권을 소멸시켰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 국가가 개인에게 보상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국가가 자국민에게 보상할 것인지 여부는 국내법상의 문제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함

○ '75년 당시 우리정부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유무

⇒ '75년에 이미 보상을 한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보상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으나, 보상에서 제외된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이 제기될 수 있음

- 보상에서 제외된 개인재산권중 은급, 군표, 당시 금융기관의 개인주주 재산은 실제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미수금(공탁금)은 인적피해와 연관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대일소송 등에서 제기하는 현안이므로 향후 정부대책에 연계하여 검토 필요
- 징용자의 피해보상은 우리측이 법적 근거를 갖고 제기한 것은 아니며, 일본은 전전(戰前) 원호법에 정해진 군인군속 사망자에 대한 조위금만 인정하였으므로, 사망자에 국한해서 지급하고 부상자등을 제외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은 없음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원호적 차원에서도 피해자 지원대책을 추진할 필요

(2) 향후 대처방 향

□ 개인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한 우리정부의 법적 견해를 확정 · 발표

○ 민·관공동위 검토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청구권협정에 대한 정부의 법적 견해 확정 및 발표

- 발표는 한일협정문서 추가공개(8월 중) 시 문서내용에 대한 정부의 법적 견해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법적 견해 표명은 문서공개에 따라 양국간 책임문제 재규명 및 일본 · 미국 등에서의 피해자소송에 있어서도 중요

□ 법적 입장정리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군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해결노력 지속

- 징용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는 개별사안별로 불법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피해자 개인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나,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원

2) 제 2차 차관회의

'05.7.1일 개최된 제 2차 차관회의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법리해석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의 법적견해 정리 및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 법리 해석 필요성 및 쟁점

(1) 법리 해석 필요성

○ 한일청구권 협정은 정치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협정 문언상 의도적 모호성 내포 등으로 법적 해석에 있어 양국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

- 청구권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에 대해 양국간 이견이 있으며, 한국국민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름

○ 청구권 협정에 의해 양국이 부담하여야 할 범위와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강제동원피해자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국내외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2) 법적 쟁점

○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양국간에 논의한 조약의 물적범위

○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개인청구권의 일괄소멸 여부

○ 한국측의 "대일 8개 요강"에 포함된 "전쟁으로 인한 징용피해보상"의 해결범위 및 한국정부의 법적책임

나)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법리 검토

(1) 제 1견해

□ 협정 해석

○ 한일청구권협정이 다룬 범위는 법적근거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청구권을 포함하였으며, 양국가의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뿐 아니라 불법행위 등 모든 청구권이 해결됨 (일본정부 입장)

○ 징용피해보상도 무상 3억 불 공여로 일괄 해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적인 보상책임이 있음

□ 논거

○ 협정문언에서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모든 청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한 점

○ 국제법상으로 양국간의 청구권 일괄 타결방식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

□ 정부의 법적 책임 및 국내외적 대응

○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군위안부 등 불법행위 배상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되며, 우리정부가 전후보상과 관련하여 일본측에 주장할 것이 전혀 없어지고, 우리정부가 모든 보상책임을 져야 함

(2) 제 2견해

□ 협정해석

○ 한일청구권협정은 재정적·민사상 채권채무관계만 다루었으며,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해당되는 개인의 청구권은 협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소멸

○ 군위안부, 징용과정에 있어서의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문제는 협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전쟁으로 인한 징용피해보상(대일청구 8개 요강에 포함)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한국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 전체에 대한 법적 보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논거

○ 협정문언상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협상과정에서 논의내용으로 판단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일양국간에 특별협정으로 해결하라고 위임한 범위 내에 배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을 상호 인정
- 법적 근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만 토의대상으로 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음
- 한일회담 백서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서에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위임을 명시

- 협정 직후 발간된 우리측 해설서에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명시
- 징용자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협상 당시 일본은 전전(戰前) 원호법에 의한 군인·군속사망자(死傷者)에 대한 급여금은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상공여를 받고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정부가 징용피해보상을 향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 군인군속사망자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까지 무상자금을 통해 대가를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정부의 법적책임과 국내외적 대응

○ 징용 미불임금 등 민사적 개인재산권은 소멸된 것이므로 일본에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정부가 개인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

*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등으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는 소멸되었을 가능성 존재

○ 군위안부·징용과정의 폭력적 행위 등 불법행위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개인과 국가가 모두 일본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정부가 수립중인 강제동원피해자 대책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고 앞으로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따른 것이며 법적 책임에 기한 보상적 성격은 아님

(3) 제 3견해

□ 협정 해석

○ 청구권협정에 불법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및 징용피해보상 책임문제는 제 2견해와 동일하나, 개인청구권은 일괄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논거

○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제 2견해의 논거와 대부분 동일

○ 협정에서 일본이 한국민의 개인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일본 국내법에서 모든 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소멸시키지 않았음

* 일본법률 제144호에서 무체재산권은 존속, 일본회사가 한국인소유 주권(株券) 인정사례, 후생연금탈퇴수당 지급사례 등 개인청구권 비소멸 경우가 있음

□ 정부의 법적책임과 국내외적 대응

○ 불법행위 책임추궁 가능성,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는 제 2견해와 동일

○ 개인재산권이 일률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재산권별로 판단해야 함

- 소멸된 것이 명확한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정부의 법적견해 정리

(1) 판단기준

○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배경과 협상과정, 사실적·법적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일본이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현대국제법 이론에 기초한 논리로써 접근

○ 일본이 추후 진정한 과거청산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종결선언을 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대일소송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피해자들의 소송은 금전적 배상보다도 국제사회에 이슈화하는 측면이 큼

(2) 각 견해별 비교

○ 제 1견해는 군위안부 등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줄 소지가 있고, 협상 당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한하여 토의하려고 한 실체적 사실과도 상반되므로 채택 곤란

○ 제 2, 3견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계, 조약체결 배경 및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가장 타당성이 있으며, 일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이 두 견해는 개별적 개인재산권의 소멸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일본국내법을 통해 한국국민의 청구권을 최종 소멸시키도록 한 협정 문언해석 및 일부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여지를 봉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 3견해가 바람직

라) 강제동원 피해자 방안 검토(제 3견해 채택 시)

(1) 정부대책의 기본 방향

□ 법적 책임사항

○ 한일협정 및 그에 기한 일본의 국내법조치로 소멸된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시효문제가 있기는 하나, 우리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정당
- 일본 국내법에서 소멸시키지 않은 재산권(후생연금, 무체재산권 등)과 '75년에 보상한 개인재산권(채권 · 일본은행권 등)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에 책임이 없음
- 당시 보상하지 않은 개인재산권 중 특히 강제동원피해와 직결된 징용 · 징병 미수금(일본이 인정한 원호법상 군인 · 군속 사상자에 대한 급여금 포함)은 보상할 필요

* 보상하지 않은 개인재산권 : 은급(공무원연금), 군표, 미불임금

⇒ 법적 책임논란이 있는 미수금 문제는 정당하게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도덕성을 확보

□ 도의적 · 원호적 지원사항

○ 한일협상 당시 한국이 징용피해자 모두에 대해서 일본측에 보상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여 우리경제가 성장한 현시점에서는 '75년 당시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자(부상자 · 생존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지원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정당
- '75년 당시 희생자 유족보상은 '75년 당시 법정 징용자에 한정되어 관알선 · 모집 등 사실상의 강제동원자가 보상에서 누락되는 등 부족했던 점

을 보완할 필요

* 국내강제동원의 경우 동원기간이 비교적 짧고, 당시 대부분의 국민이 국내 노무동원을 당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구제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법적 책임여부를 떠나 도의적·국민보호 차원에서 지원
(개별지원이 어려운 피해는 단체보상 성격으로 지원)

* 이 경우에도 징용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둘 필요

(2) 법적책임에 따른 개인재산권 보상

○ 피해자 등의 입증자료에 의거하여 미불임금 등을 개별적으로 보상

- 정부는 일본정부 및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징용자 공탁금 명부 등을 확보토록 노력

* 그러나 공탁금 명부가 확보될 경우에도 당시 창씨개명, 본적지 불분명 등으로 피해자 유족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화폐간 보상비율은 당시 화폐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환율변화 등을 감안하여 정해야 함

○ 이 경우 '75년 보상을 받은 재산권자(채권, 보험 등)도 신고누락 또는 보상비율이 낮았다는 이유로 추가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나, 인도적 피해와 관계없으므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

(3)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안)

□ 피해생존자 위로연금 지원

○ 강제동원생존자는 희생자에 비해 피해정도가 경미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이고, 독일의 경우 강제동원생존자를 우선 지원한 전례가 있으며,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

* 정확한 생존자 수 추정이 불가능하나, 약 5~6만 명 정도로 추산

* 군위안부 월 70만원, 6·25·월남전 참전자 월 6만원('01년부터 지급, 여명(餘命)이 많이 남아 있음)

□ 유족 위로금(일시금) 지원

○ 희생자유족들에 대해서는 '75년도 당시에도 일시금으로 보상하였고, 피해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지급수준은 여타 유족보상사례에 비해서는 매우 낮지만, 국가재정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약 1,000만 원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임

○ 지원대상

□ 제 1안 : 관알선, 모집 등 형태로 강제동원된 '45년 이전 사망자의 유족 등 '75년 보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사망자・부상자의 유족을 구제

- 해방 직후 귀국과정에서 귀국선침몰사고로 사망한 자와 억울하게 전범으로 사형당한 징용피해자 유족도 포함 검토
- 징용부상으로 '45년 이후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75년 부상자의 지원을 하지 않은 점을 사과하는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 검토

□ 제 2안 : 제1안의 피해자유족 + '75년 당시 기보상 받은 징용징병사망자 유족과 신고누락자도 추가 지원

* 다만, 징용사망에 대해서만 신고누락자를 구제해 줄 경우 개인재산권 피해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 사회복지 지원

○ 의료지원 : 생존해 있는 징용장애・부상자에 대해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
 * 다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하였고, 생존자의 경우도 징용부상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산소요는 미미할 전망

○ 교육지원 : 교육지원의 경우 피해자・유족들의 자녀들이 이미 취학연령을 지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 추념 및 유족지원사업 등

○ 일제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고, 개별지원에서 제외된 8・15이후 사망자유족에 대해서도 간접지원

○ 역사기념관 건립 : 독립기념관 부지에 강제징용에 관한 기념관을 추가 건립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

* 별도 추념공원 등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

○ 유족단체 지원 : 국·공영 유족회관등을 건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일소송 등 유족단체의 활동을 간접지원

3) 제 3차 차관회의

'05.7.22일 제 3차 차관회의가 개최되어 한일청구권협정 법적쟁점 및 협정에 의한 해결 범위, 한국정부의 책임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정부대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가) 청구권협정의 법적 쟁점

(1) 법적 쟁점

○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범위와 우리정부의 책임

- 일본에 대해 한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민사적 개인청구권이 일괄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우리정부의 책임
-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청구권 소멸여부
- 전쟁으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향후 우리정부가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주장하지 않기로 한 범위와 한국정부의 책임

(2) 일본정부의 법적 견해

○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뿐 아니라, 법적 근거 유무를 불문하고 한국정부 및 한국국민의 모든 대일청구권(불법행위 포함)이 해결

- 협정문언상 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고, 명문으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청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점
- 국제법상으로 양국간 청구권의 일괄타결방식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

○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당시 한국인도 일본국민이었으므로 원래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는 사항임. 다만 한국정부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기에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은 다시 주장할 수 없음

- 식민지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의 위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한국에게 강제동원 피해보상을 해 준 것은 원호적 성격이지 식민지배상 차원이 아님

⇒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군위안부 등 반인륜적 불법행위 문제도 해결된 것이 되며, 우리정부 및 국민이 일본측에 주장할 것이 전혀 없어짐

나)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범위

(1) 재정적 · 민사적 채권채무관계

○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한일간 영토분리를 계기로 "'45년 해방 전 정상적 관계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재정적 ·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임

○ 청구권협정은 재정적 · 민사적 재산 및 청구권을 포함하나, 모든 개인의 대일재산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일괄 소멸된 것은 아니고, 협정에서 양국의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개인청구권 소멸여부는 개별재산권별로 검토해야 함

- "한일회담백서" 및 "한국과 일본간의 조약 및 협정해설서"에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만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위임한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위임을 명시

- 일본 국내법을 통해 한국민의 개인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한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정문언상 명시하고 있으나, 일본 국내법에서 모든 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소멸시키지 않았음

* 협정직후 일본이 제정한 법률 제144호에서 무체재산권은 존속, 일본회사가 한국인소유 주권(株券) 인정사례, 후생연금탈퇴수당 지급사례 등 개인청구권 비소멸 경우가 있음

○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개인간의 통상적 권리관계는 일괄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작업장에서 사용주의 선관주의 위반과 같은 통상의 불법행위책임은 해결된 것임

* 우리측이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한 8개 요강에 "청구권협정 체결 후에도 한국 자연인 · 법인의 일본정부 및 일본인에 대한 권리행사 여지를 남

기도록 한 항목(제6항)" 포함

○ 따라서, 개별재산권중 일본국내법으로 소멸시키지 않은 개인권리(무체재산권 등)는 유효하게 존속

(2)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45년 해방이전에는 일본법상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배상청구 문제는 청구권협정 범위에 포함될 수 없었음(군위안부, 강제동원과정의 가혹행위 등)

- 강제동원은 징집에서 귀환까지 전체과정이 국가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민간기업에 강제동원되어 근무하다가 발생된 불법행위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보아야 함

- 전전(戰前) 일본 메이지헌법 하에서는 강제동원과 같은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해서 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았으므로,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배상청구는 법적 근거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 한일협정 당시 논의대상이 될 수 없었음

- 특히 군위안부 등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정 자체가 국제인권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음

* 유엔인권소위에서 채택된 "맥두걸 보고서"에서도 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일본정부는 군위안부 피해자 개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

○ 따라서 우리국민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능하며, 한국정부도 책임추궁 가능

(3) 강제동원 피해보상

○ 강제동원은 일제시대에 적용되었던 일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일제당시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본래부터 한일협정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민사적 재산권)이 아니었으며 한국정부가 정치적 차원 등 별도의 고려에서 제기하였던 사항임

- 다만, 일본에게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이 강제동원의 불법(일제지배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불법)에 대한 배상적 성격인지, 특별한 희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원호적 성격인지 불분명함

* 우리측은 강제동원에 따른 인적피해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측은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일본인이었으므로 일본인에게 주지 않는(즉 법적근거 없는) 배상적 지불은 할 수 없고 원호적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 일본이 무상자금의 산정과정에서 전전(戰前)일본법상의 조위금(미수금에 포함)과는 별도로 강제동원 사상자에게 추가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려고 시산표를 마련한 정황이 있음

* '62.2.8 회담 시 일본측 발언내용

  한국측은 생존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당시의 한국인의 법적 지위가 일본인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일본인에 지불된 바 없는 보상금은 지불할 수 없다. 그러나 사망 및 상병자에 대해서는 당시 국내법에 의하여 급여금이 지불되었을 것인 바 미지불된 것이 있으면 피징용자 미수금으로 정리될 것이니 그 항목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피징용자 보상금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서는 응하기 어렵다

○ 협상과정을 보면 우리측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일본도 강제동원 피해보상을 원호적 문제로만 보았으므로, "고통받은 역사적 사실자체"(정의에 반하는 행위)에 기하여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받은 것이며,

- 징용자체의 불법성에 기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정부가 대신 행사하여 이를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이러한 차원에서 받은 무상자금은 피해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에 기한 것은 아니며, 국가가 국민을 대표하여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협상을 통해 받아낸 성격의 것임

○ 따라서 한국정부가 현시점에서 식민지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차원(징용자체의 불법성)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의칙상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곤란

- 그러나, 한국국민은 징용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4) 기타 사안

○ 사할린 한인 : '65년 당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할린 한인의 경우 한국정부가 이들을 대표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권협정에 미포함

○ 원폭 피해자 : 전후 일본 원호법에서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적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권협정과 별개 사안임

다) 한국정부의 책임문제 검토

(1) 재정적 · 민사적 채권채무(강제동원 미수금 등 개인재산권)

○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국내적 조치로 소멸시킨 개인재산권은 일본에 대해 주장할 수 없으며, 개인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

○ '75년 당시 대부분의 대일재산권에 대해서 보상했으나, 입증곤란 등을 이유로 강제동원 미수금, 은급, 우체국소관 생명보험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음

- 강제동원 미수금(사망자 조의금, 미불임금 등)은 일본에 공탁금 명부요청 등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입증곤란을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 은급(공무원연금)은 친일파 재산이라는 이유로, 조선총독부 우정국에 가입한 생명보험 등은 한국 우체국이 승계해서 보상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방직후 은행송금 분은 혼란기의 예외적 사례라고 하여 보상에서 제외

○ 보상에서 제외된 재산권과 관련 개별 청구권별 보상여부 결정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정부의 법적 보상 책임이 없다는 해석 가능

○ 그러나 민사적 개인재산권은 당시 우리정부의 책임이 명확함에도 '75년 당시 보상이 미흡하였던 부분이 있으므로 법적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차원에서 추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강제동원 미수금은 현재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강제동원피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보상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

-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당시 정부가 미보상 사유로 "증빙자료 미비"를 들었으나, 일본에 대한 공탁금 명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음

* 미수금은 당시 주일연합군총사령관사령부(SCAP)의 지시로 각 지방공탁소에 공탁한 이래 일본은 아직까지 국고환수하지 않고 있으며, 공탁금총액은 약 2억 37000만 엔

○ 은급, 조선총독부 생명보험 등 나머지 재산권의 경우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제기(현재 서울지법에 1건 제소 중), 단체결성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인적피해와 직결된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도의적 책임은 크지 않음

(2)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 국가(일본정부 · 군)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정부의 법적 보상책임은 없음

○ 한국정부는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 및 일본의 국가책임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

(3) 강제동원피해

○ 일제 당시 우리국민은 강제동원피해에 대하여 일본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체를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는 개인의 권리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적 보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든지 무상자금중 일부는 강제동원 피해보상조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제동원 피해보상으로 받았다고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함

- 다만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되었는지와 양국이 어느 피해유형(사망 · 부상 · 생환)까지 보상하려 했는지가 불분명함

라) 정부 대책방향 검토

(1) 기본원칙

○ 청구권협정 법리해석을 토대로 정부대책을 마련하되, 동대책으로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기되어 온 강제동원 피해자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여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국민화합을 도모

-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75년 당시 보상에 있어 법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일제식민지배하에서 일반인이 감내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선 고통에 대해 인도적, 국가 원호적 측면에서의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함
-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일본의 자발적인 피해자 지원을 유도

⇒ 청구권자금 등을 토대로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한 현 시점에서, 과거 소홀했던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적 차원의 지원조치를 추진

(2) 개인별 지원의 필요성

○ 6.25 참전용사 지원, 다른 과거사 보상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청구권협상관련 보상 문제는 다른 사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 국가가 당시 수령한 청구권자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데 대한 도의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개인별로 지원하지 않고 단체에게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개인 몫의 금전을 유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해결되지 않음
- 일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지원이므로 국가유공자와 같이 교육, 의료 등 적극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 피해자 · 유족들의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 고령이며, 통일성을 갖춘 집단이 아니므로 단체지원의 실효성이 적음

○ 다만,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역사적 교훈, 개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추념공간 마련, 유족단체지원 등 단체지원도 병행할 필요

(3) 대책방향(안)

□ 개별지원

○ 강제동원 미수금에 대해서는 보상의 법적 정당성이 가장 컸음에도 '75년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감안, 입증이 되는 대로 적절하게 조치

* 일본정부에 공탁금 명부를 요청하여 강제동원 미수금 청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미흡한 과거사 청산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

○ 해방 당시 부상 생환자

- 한일협상 당시 정부가 가장 많은 보상액을 일본에 청구하였고, 오랜 기간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강제동원피해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

○ 해방이전 사망자(약 2~3만 명)유족

- '75년에 보상하였으나 희생정도에 비해 당시 보상금액(30만 원)이 너무 적었고, 엄격한 입증요구로 인하여 상당수가 탈락했으므로 도의적 차원에서 추가지원 필요

○ 해방 당시 미부상 생환자

- 현재 생존자(약 5~6만 명)는 피해의 정도는 약하지만, 피해 직접당사자라는 상징적 측면과 독일 사례 등을 감안 최소한의 지원 필요
- 해방이후 사망자(약 50~60만 명)의 유족은 논리상 생존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직접 피해당사자는 아니고, 그 대상자수가 너무 많으므로 재원문제 등을 감안 정부대책 대상에서 제외

○ 국내강제동원자(연인원 약 650만 명)는 한일협상 당시 우리가 일본에 요구한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제 당시 대부분 국민이 국내 노무동원을 당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불법행위피해자 구제여부, 재일교포·사할린한인 등 외국 국적자 문제, 군위안부·원폭피해자·국가유공자지원 등 타법률 등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해방직후 귀국선침몰 사망자 보상문제 등은 추가 검토 필요

□ 단체지원

○ 역사교육 등을 위한 추념공간 마련 : 용산민족공원 또는 독립기념관 등에 역사교육관·추념비 등을 건립

○ 유족단체지원 : 피해자 소송지원, 해외 전몰자 추념행사지원, 피해사실 확인작업 지원 등

(4) 피해자 지원 규모

○ 피해자대책은 일본에서 수령한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재산권과 강제동원피해보상을 위해 일본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일본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여 추산한 최소 7천만 불 이상, 그리고 최대로는 무상자금 3억 불 범위 내라고 추정

- '65~'75년까지 원화자금으로 조성된 누계 1,077억 원을 자금도입 중간시점인 '70년부터 '05년까지의 물가상승률로 곱하면 3억 불의 현재가치는 1조 7555억 원

- '75년도 보상액 103.7억 원(물가상승률 7.86% 감안 시 현재가치 815억 원)

○ 이러한 재원범위 내에서 유사 과거사의 국제관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 지원금 결정

* 해외사례

일본의 재일동포 군인·군속 보상('01년) : 사망자 200만 엔, 중증장애자 400만 엔

독일의 동유럽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보상('01년) : 평균 440만 원

미국의 2차대전시 일본인 억류에 대한 보상금('88년) : 1인당 2천만 원

(5) 대책 추진 기구 문제

○ 대책은 정부기관이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기구를 통해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며, 집행의 효율성, 대일관계, 외부재원 출연의 여지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함

* '75년도에 재산권과 강제동원사망에 대한 개인별 보상업무를 재무부가 일

괄 수행했으나, 일본(적십자사)과 독일(기억미래재단)은 민간재단을 통해 개인별 보상 실시

○ 재단 설립 시 장단점

- 일본정부 · 기업으로 하여금 출연금을 받기가 용이하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 민간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쉽고, 지속적 역사교육 및 추념사업을 추진하기 용이
- 다만, 재단을 통한다고 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민간재단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경우 행정력부족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업무차질, 피해자들 간 갈등 발생 시 조정능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업무 성격에 따라 피해 정부기관과 재단 간에 역할분담 필요

- 미수금 보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개인별 지원업무는 대상자수가 매우 많아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하므로 민간기구보다는 정부기구(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등)를 지정하여 추진
- 유족단체 지원 등 단체지원 업무는 피해자 지원단체등이 참여하는 순수민간재단 형태와 적십자사와 같은 경험이 있는 공공단체를 고려할 수 있음
- * 원폭피해자, 사할린동포의 경우 한일 양국정부가 적십자사에 출연하고, 적십자사에서 피해자회관 및 주택건립, 의료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

4) 제 4차 차관회의

'05.8월에 개최된 제 4차 차관회의에서는 피해자단체 및 언론 등의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외교문서 추가공개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가) 최근 동향

(1) 피해자 단체

○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제동원진상규명위"의 1차 피해신고접수 완료, 한일 외교문서 추가공개 등으로 정부 보상에 대한 기대가 매우 고조되어 있음

-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인「태평양전쟁희생자생활안정지원법」의 조속한 처리 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수준의 정부대책 요구

* 생활안정지원법안 : 강제동원 사망자의 유족 : 5천만 원+월 60만 원
생환자중 현재 생존자 : 3천만 원+월 50만 원

○ 재산권(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금 등) 관련 피해자도 「사적재산권 피해보상 대책위」를 구성하여 정부의 재보상을 요구
* 보험소비자연맹은 약 2000명의 일제시대 재산권 소지자 피해 접수

(2) 정치권 및 언론

○ 정치권은 정부의 피해자 대책 추진에 따라 대체로 관망 자세임
- 대책기획단 부단장이 열린우리당 문서공개 T/F회의(8.17)에 참석하여 정부 입장 등 설명

○ 각 방송 및 신문 등은 8.15전후 특집보도 등을 통해 "우토로 한인", "731부대 생체실험" 등을 다루었으나, 강제동원 피해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음

(3) 일본

○ 일본 외무성은 8.12일 홈페이지에 과거사 현안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게재하고, 종군위안부 피해배상, 재산·청구권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

나) 외교문서 추가공개에 따른 조치 계획

(1) 외교문서공개 관련 검토사항 종합정리 및 발표

□ 민·관공동위원회(총리주재) 개최

○ 그간 민·관공동위 분과위, 차관급 T/F 회의에서 검토해 온 청구권협정 법리해석, 정부 대책방향 등을 8.26일 오전 민·관공동위에서 종합 정리

□ 언론 설명회

○ 8.26일 오후 갖게 될 언론 브리핑에서 민·관공동위 논의사항을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설명
- 외교부는 문서공개내용, 대책기획단은 정부대책 방향등을 중점 설명

(2) 민·관공동위 논의 내용

□ 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

- 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나, 일본 국내법에 의해 소멸시킨 재산권은 한국민이 주장하기 어려움
- 후생연금탈퇴수당, 무체재산권 등 일본국내법으로 소멸시키지 않은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

○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 군위안부, 강제동원 중 발생한 가혹행위 등 당시 일본정부·군이 관여한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우리국민이 일본정부에 배상청구 가능(한국정부도 책임추궁 가능)

○ 강제동원피해 보상

- 한국이 식민지불법성에 근거해서 강제동원보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요구
- 한국민이 식민지 불법성을 근거로 일본정부에 보상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다만, 현실적 구제가능성 적음)

○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는 청구권 협정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었음

□ 외교적 대응방안

○ 한일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반인도적 국가범죄행위 중 군위안부문제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책임 추궁

- "해남도 학살사건", "731부대 생체실험" 등 당시 일본군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건은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조사 작업후 정부 대응방안 결정

○ 사할린 한인동포, 원폭피해자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

□ 강제동원 피해 등에 대한 정부 대책

○ 미수금은 강제동원피해와 직결된 것이므로 개인별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

이 도의적으로 타당. 다만,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75년 당시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였다는 도의적 책임차원에서 지원대책 마련

○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역사적 교훈차원에서 역사교육관 건립, 추념공간 마련 등도 검토

○ 무상자금 3억불(현재가치 1.1조~2.5조원)에서 '75년 기보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한 적정한 금액을 피해자 지원대책에 사용

(3) 언론발표 내용(안)

□ 청구권협정의 법적효력

○ 청구권협정은 한일양국간 민사적 · 재정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군위안부 등 국가가 관여한 불법행위는 협정에서 제외된 사안임을 명확하게 밝힘

○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방안 제시

○ 무상자금의 성격 규명 : 국가로서의 청구권, 개인재산청구권, 강제동원피해보상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수령된 자금

□ 강제동원 피해자 대책

○ 정부가 도의적 책임에 따라 피해자 지원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는 점과 재원한도 등을 밝히되, 구체적 정부대책은 부처협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겠다는 추진일정 제시

○ 미수금도 한국정부가 해결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힘

5) 제 5차 차관회의

'05.12.13일에 개최된 제 5차 차관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현황과 피해자 및 사회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살펴보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의 기본방침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 그간 추진현황

(1) 피해자 및 사회각계 여론수렴 실시

○ 민·관공동위원회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 피해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9.9), 피해자대상 공청회(9.21), 사회 각계인사 토론회(10.13)를 개최하여 지원원칙,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사회각계의 여론수렴

○ 국회에서도 전문가간담회(10.18),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피해보상소위(10.19), "태평양희생자생활안정지원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공청회(11.18) 개최

○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12.5~12.31, 한국갤럽)

(2) "현시점에서 확인가능한 피해자수" 추정

○ 진상규명위 피해신고자 중에서 징용자명부 등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피해내용이 입증·확인될 수 있는 피해자수 추정

구 분	신고사유별 건수			계
	동원중 사망	후유장애	생환자중 생존자	
신고기준	27,705	43,229	40,090	111,024[주1]
확인가능 건수	14,051	914	40,090	55,055

주1) 해외 강제동원신고자 총수 178천 명 중 행방불명 7,478명, 생환 후 사망 67,521명은 건수에서 제외

<추정 방법>

1단계 : 전체 신고자중 강제동원사실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수는, 5개 광역지자체 신고건수(72천 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

2단계 :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의 피해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그간 진상규명위원회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추정

○ 다만, 향후 보상을 전제로 추가 신고를 받는 경우, 사망자수 및 생존자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진상규명위 2차 신고접수 : 12.1~12.12기간 중 794건만이 신고

(3) 강제동원 해외자료 실태 및 외국의 보상사례 조사(10.16~10.28)

○ 일본정부기관이 보유한 강제동원자 명부 등 자료실태 파악

○ 일본의 대만인 · 재일교포 징용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사례, 독일 "기억 책임미래재단"의 개별 보상사례 등 조사

(4) 민·관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대책방향 논의

○ 민간위원 전체회의(11.7) 등을 통해 사회각계 여론 분석 및 지원대책과 관련한 구체적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의

⇒ 민간위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가급적 충분히 지원하자는 것이 전반적 의견이었으나, 지원수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나) 피해자 및 사회각계 의견수렴 결과

(1) 피해자 의견

○ 현재 국회계류중인 피해자생활안정지원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주장이 가장 많음(희생자유족회, 생존자협회)

-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법적인 피해보상(일시금 2억 원+경제유공자 지정)을 하라고 요구하며 생활안정지원법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단체들도 있음

○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재정상황과 관계없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수령한 청구권자금 전체 및 이에 따른 경제적 과실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정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길을 차단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것에 책임이 있으므로, 강제동원자 모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전문가 간담회 · 토론회 시 사회각계 의견

○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대책추진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나, 지원수준, 지원대상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음

○ 지원대상자

- '75년도 정부보상이 미흡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므로 가급적이면 생존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 6.25 참전군인 및 타과거사 보상사례와의 형평성, 일본의 강제동원책임에 대한 면책효과를 줄 우려 등을 감안하여 생존자에 대한 금전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대책추진시기
-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을 감안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일부에서는 "선(先)진상조사 후(後)보상 · 지원"을 주장하였음

○ 지원방법
- 청구권협정에 따른 무상자금 수령사실 등을 감안할 때,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금전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소수의견으로는 여타 과거사에 대한 개인별 금전보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단체보상적 성격의 지원(요양시설 건립 등) 또는 민간재단 등을 통한 역사교육 성격의 장기 프로그램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음

○ 피해자 확인방법
- 오랜 세월이 지나 개인들이 피해신고 및 입증을 하기 어려우므로, 신고가 없더라도 국가가 찾아서 지원해 주어야 하며 피해자 판정 시 정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지원의 명분 및 성격
- 우리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 일본에게 책임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3) 국회

○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공청회 등에서 현재 국회계류중인 "태평양희생자생활안정지원법안"은 막대한 예산 소요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 법안 발의 시 재정추계 : 1조 1,087억 원(생존자 5천 명, 유족 20천 명)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추계 : 5조 5,695억 원(생존자 11천 명, 유족 609천 명)

○ 앞으로 정부의 대책안이 마련될 경우 의원입법안과 같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속한 정부대책 마련을 요구

다)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의 기본방침 검토

(1)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개인별 금전(위로금) 지원 대상

□ 사망자, 중부상 생환자(본인과 유족) : 포함

○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았으며, 한일 협상과정에서의 논의내용과 무상자금 수령사실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적 금전지원이 불가피

- 특히 일본이 대만인·재일동포 강제동원 사망자, 부상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1인당 약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차원에서도 추가지원 필요

○ 사망자의 경우 '75년 당시 정부의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일부 유족들은 보상을 받았으나, 금액이 적었고 당시 홍보부족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보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추가 지원 필요

* 일본이 보내온 사망자명부(노무자 제외) 22천 명 중 8,500명만 보상 받음

○ 부상자의 경우 한일협상 당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는데, '75년 당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도덕성 문제가 있음

- 다만, "일본정부의 대만인 징용자에 대한 보상"에서와 같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제외하고, 중한 부상을 입은 자에 한하여 지원 필요

○ 개인별 금전지급 수준

- 정부의 피해자 지원은 법적 보상이 아니고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 의한 것이므로, 개인별 지원수준은 국제관례, 재정상황,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 해방 후 일반 생환자(본인과 유족) : 제외

○ 한일협상과정에서 논의내용과 다른 나라 강제동원자에 대한 일본의 전후 보상사례를 감안하면 무상자금에 생환자 몫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정됨

*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생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상필요성을 부인하였고, 우리정부도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생존자를 제외하는 대안을 정부

훈령으로 시달

* 청구권문제에 대하여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만의 경우, 일본은 대만출신 강제동원자중 사망자와 중부상 생환자에 대해서만 위로금 지급

○ 강제동원 생환자를 지원할 경우, 6.25참전용사 등 다른 과거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생환한 사람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여 막대한 재정부담이 됨

□ 국내동원자

○ 국내 강제동원(연인원 약 5백만 명)을 보상하는 경우 전국민에 대한 보상 성격이 될 수 있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므로 제외

○ 한일협상 당시 국내동원에 대해서는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일본 및 독일 미래기금의 경우에도 국내 동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강제동원자의 미수금 구제대책

○ 한일협상과정에서 논의내용을 감안하면, 강제동원자들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 문제는 우리정부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타당

- 특히,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강제동원 생환자에게는 강제노역의 대가인 미수금만큼은 반드시 보상해 줄 필요

○ 그러나 일본에서 공탁금 명부 입수가 불확실하여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입증자료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

- 현재 일본정부는 공탁관계 서류를 일괄해서 우리측에 전달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난색 표시

○ 향후 확보되는 공탁금 명부 등에서 확인되는 자 및 개별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피해자에게는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지급

※ 보상배율은 그간 물가변동, 일본정부가 대만인(군인군속)의 미수금을 보상할 당시 적용한 배율(120배)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 일본정부가 관련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정부가 미수금 피해자들의 신청을 모아서 일본에 일괄해서 요청하는 방식을 추진

6) 제 6차 차관회의

'06.2.17일에 개최된 제 6차 차관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경과와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위로금 지급수준, 미수금환산배율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피해자 설득 및 대국민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가) 그간 추진경위

(1) 지난 관계차관회의('05.12.13)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방향을 결정

○ 지원대책 방향

- 국외강제동원중 사망・중부상자에게 개인별 위로금 지급(일반생환자・국내동원자 제외)

○ 국외 강제동원된 자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있는 사람부터 구제

⇒ 3차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마련

(2) 일반국민(120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05.12 한국갤럽)

○ 국민여론은 생환자까지 모두 지원하자는 의견(55%), 국내 강제동원자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61%)등 온정주의적 경향을 보였으나,

○ 우선 지원대상으로는 부상생존자(64%), 사망자유족(27%), 생환자(2.7%) 순으로 들고 있어 정부의 지원방침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3) 민·관공동위 민간위원회의에서 대책방향 및 지원법안 토의('05.12, '06.2)

○ 정부대책방향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다만 생환자중 생존자는 지원하자는 의견과, 국내대책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본에 책임추궁을 하는 등 외교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됨

(4) 6개 피해자단체 회장단간담회(2.7)를 통하여 정부대책 설명 및 사전설득

○ 정부대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생환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제외 부분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을 시사

나)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률(안) 주요 내용

(1)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 국외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 : 1인당 00백만 원 위로금 지급
  - 다만, '75년 당시 보상을 받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0백만 원 차감
○ 국외강제동원기간 중 부상 등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현재 생존여부 불문)
  - 중증 장해 : 00백만 원
  - 경증 장해 : 00백만 원(중증 장해의 반액)
○ 강제동원된 자의 미수금 : 일본화폐 1엔당 현재가치 원화로 환산・지급
  - 100엔 미만 소액 미수금에 대해서는 100엔으로 간주
  * 지원 제외 :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타법률 등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
    (군위안부 피해자・원폭피해자・사할린 한인 등)

(2) 유족의 범위

○ 위로금 지급 : 강제동원 당시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함
  * 손자녀는 당시 친족관계는 아니나, 국민감정 등을 감안하여 포함
○ 미수금 지급 : 강제동원된 자의 민법상 상속인(현재 친족관계를 기준)

(3) 지원 추진기구

○ 총리소속으로 지원심의위원회(9인)를 두고, 사무국 설치
○ 위원회에서는 증언청취 등 사실조사는 하지 않고, 진상규명위 판정결과 등
  신고자가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결정

(4) 지원금 신청・심의절차

○ 신청기간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2년 연장
○ 결정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년 이내에 지원여부를 심사, 결정
○ 부상자의 경우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에서 판정

(5) 지원금에 대한 조세면제 등

○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면제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요건 심사 시 특례 적용

다) 지원법률(안)관련 논의 필요사항

(1) 위로금 지급수준 및 미수금 구제기준

□ 위로금 액수를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문제

○ 1안 : 법률에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중요사항이므로 입법부에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률 심의과정에서 온정주의적으로 증액될 가능성

○ 2안 : 법률에는 위임근거만 남기고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 법률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용이하고, 정부가 예정하는 재정한도 범위 내에서 대책을 추진하기 용이하나, 금액수준 결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는 부담이 있음

⇒ 검토의견 : 피해자지원대책에 대한 논란의 조기종결을 위해 법률에 규정

□ 위로금 지급수준(사망자 및 부상자)

○ 한일청구권협정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추정하여 위로금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

- '87년에 대만인 군인군속 사망자 · 중증 장애자에게 일본이 2백만 엔 지급

- '00년에 일본국적 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 대만인에게 사망 · 부상 사망의 경우 260만 엔, 부상생존의 경우 4백만 엔 지급

□ '75년 정부 보상 시 30만원을 지급받은 유족의 경우, 이번 위로금에서 상계해야 할 금액수준

○ 1안 : '75~'06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7.8배)만큼인 234만 원을 차감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장 대표성 있는 근거자료이나, 일반인들이 느끼는 물가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2안 : '75~'06년간의 물가 · 임금 · 쌀 · 금값 등의 상승률평균(14배)인 420

만 원을 차감

- 일반인들이 느끼는 물가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나, 대표품목선정 등 계산 방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 가능성

⇒ 검토의견 : 2안이 바람직

□ 미수금의 원화 환산배율

○ 1안 : '75년 우리정부의 원화환산율(1엔 : 30원)에 '75~'06간 물가·임금·쌀값 등의 상승률평균(14배)을 곱하여 결정(1엔당 420원)

- '75년 당시 재산권에 대한 보상기준과 일관성·형평성은 있으나, 1인당 지급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 2안 : '95년 일본이 대만인 미불임금 보상 시 적용한 배율(1엔당 1200원)

- 청구권협정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직접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상수준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설명은 용이하나, '75년도 재산권 보상 시 적용한 기준과 다른 이중 잣대라는 비판 가능성

* 일본정부는 '95년에 대만인 강제동원피해자의 미불임금을 일본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45년 당시 1엔을 120엔으로 산정하여 보상

⇒ 검토의견 : 2중 잣대라는 문제는 있으나, 타국 피해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너무 낮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취지가 훼손될 가능성 있으므로 2안이 바람직

(2) 행방불명자의 지원대상 포함 문제

○ 한일협정 당시 우리측은 강제동원 중 행방불명자를 사망자·부상자수에 포함시켜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전쟁 중 행방불명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에 포함 필요

* 특수임무자, 광주민주화보상 등 타과거사 보상법률에서도 실종자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음

⇒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 "행방불명 판정" 및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는 것을 지원요건으로 법률안에 규정

(3) 위로금과 미수금에 대한 유족범위 문제

○ '75년 보상 시 유족은 강제동원 당시 및 보상일 현재 모두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대상자도 처, 자녀, 부모, 조부모로 한정

- 그간 세월이 30년이 경과되어 1세대 유족 중 상당수가 사망하였고,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유족범위를 일정정도 확대할 필요

○ 1안 : 위로금은 강제동원 당시 2촌 이내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를 기준 (다만, 직계 손자녀는 현재친족관계 기준) : 배우자·자녀 → 부모 → 손자녀 → 형제자매

·미수금은 민법상 상속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급

- 위로금은 당시 유족이 받은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권성격을 가진 미수금과는 달리 당시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 미수금구제가 재산권 보상적 성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동일한 희생자에 대하여 위로금수령자와 미수금수령자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2안 : 위로금과 미수금 모두 현재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하되, 유족범위는 2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하는 방안

- 위로금과 미수금의 유족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미수금구제가 법적 보상차원이 아님을 부각시킬 수 있고, 유족관계 확인 등이 용이

- 현재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희생자 사망 후 재가한 배우자는 제외되고, 희생자 사망 후 태어난 형제자매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위로금 취지가 퇴색

- 미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 시 위헌판결 가능성이 있음

⇒ 검토의견 : 위로금취지를 살리면서 미수금구제에 따른 법적 분쟁여지를 없애기 위해 1안이 바람직

(4) 주관부처 검토

○ 향후 대책기획단에서 하위법령 마련, 추진기구 출범준비,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사무국 출범 전까지 담당할 예정이지만,

- 입법예고(3월), 소관 국회상임위 결정, 법안심의, '07년 예산반영 등을 위해서는 주관부처가 결정되어야 함

○ 1안 : 재정경제부

- '75년 당시 청구권보상 주관부처였으므로 당시 보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부각할 수 있고, 산하집행기관(세무서)도 갖추고 있으나,
- 도의적 · 인도적 지원이라는 대책 취지가 약화우려

○ 2안 : 행정자치부

- 유사한 과거사 보상경험이 많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의 협조 등을 통해 피해확인과 유족의 소재지파악 등이 용이하고,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와 연계해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각 자치단체에는 진상규명위 신고접수, 사실조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운영 중
- 거창양민학살 · 제주4.3사건 등 관련입법이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심의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됨

○ 3안 : 보건복지부

-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살릴 수 있고, 원폭피해자 · 사할린한인 등 유사 일제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태평양전쟁희생자생활지원법안(의원입법)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임
-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원입법안과 병합심리 시 정부입법안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 복지 측면에서 지원대상 · 수준을 확대해 달라는 피해자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 있으며, 집행을 위한 지방조직이 취약함

라) 피해자 설득 및 대국민 홍보방안

(1) 피해자(특히, 생환자)들에 대한 설득방안

□ 생존자들을 위무하기 위한 별도조치 강구

○ 생존자들은 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이고,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통해 이들에게 보상 기대를 갖게 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책 검토

○ 1안 : 생존자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조사에 협조한 진술 사례금 명목으로 50~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약 200억 원 소요추정)

*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법률 제 18조 :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자료제공자에 한하여 자료의 가치에 따라 50만 원,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음('05년에 18건, 평균 314만 원 지급)

○ 2안 : 생존자들에 대하여 대통령의 위로편지와 상징적 물품(시계 등)을 제공하는 방안

□ 정신적 위로를 위한 조치 병행

○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시 대통령 명의의 위로서한을 동봉

* '93년 미국은 전시 중 억류한 일본인에게 보상 시 클린턴대통령 사과서한 첨부

○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 위령공간조성, 유골봉환, 해외 위령제행사 등 희생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조치를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

□ 지원대책의 실효성 제고 노력

○ 일본의 공탁금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여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 확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

(2)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방안

□ 방송 및 신문 홍보

○ 국무총리(또는 관련부처 장관 등) 담화문 발표 검토

○ K-TV 정책대담,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서 정부대책을 마련한 경위 및 의의 등 소개

○ 전문가 신문기고를 통하여 문서공개 및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의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하여 홍보

-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외교부 문서공개심사에 참여한 교수, 법리검토에 참여한 국제법 교수 등을 섭외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홍보

○ 국민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진상규명위 홈페이지와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홍보

□ 공청회 개최 검토

○ 타과거사 보상의 경우 파행 등을 우려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사례가 없으나, 이번 대책은 국민일반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검토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피해자집단에 의한 공청회 좌석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청권 사전배포 등 참가자 조정

⇒ 법안에 대하여 피해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계속하되, 피해자들의 방해 등으로 불상사 발생 우려가 큰 경우 공청회 취소

(3) 국회

○ 과거사 당정특위 등 당정협의체에서 정부지원법안에 대하여 논의

○ 법안이 상정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설명회 또는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설명

5. 피해자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가. 피해자 공청회

1) 개요

○ 일시 : '05.9.21. 14;00~16;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참석자 : 국내 일제 피해자 및 유족, 약 700명

○ 주최 : 민·관공동 위원회

○ 내용 : 대책방안 설정을 위한 피해자 17인의 의견청취

2) 피해자들의 주요 요구내용

○ 지원 입법관련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주도로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희생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망
-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과 피해보상지원법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입장을 감안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 한일 양국의 책임관련

- 이번에 우리정부가 보상한다고 해서 일본의 배상책임이 면죄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일본의 배상문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
-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해야 하는 한국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차원이 아니라 의무적 사항이라고 주장

○ 지원 우선순위 관련

- 피해 생존자 죽기 전에 생존자를 우선, 신속 처리하여 생활비 지급
- 우선 살기가 힘드므로 생활비 지원을 요구
- 강제징용노동자들이 벌어온 돈을 정부에서 국가산업발전에 활용함으로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희생자들에게 경제유공자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
- 일본에서 공탁되어 있는 개인 미수금을 받아달라고 요구
- 유해송환을 우선적으로 처리 요구

○ 지원금액 관련

- 희생자 1인당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의견
- 먼저 정부가 사과하고, 원폭 피해자를 포함한 희생자를 위로하고, 후세에 역사성을 간직할 수 있는 위령탑 등 건립해 달라고 요구
- 원폭피해자에게 전문병원건립과 월 50만 원 정도 생활비 지원

○ 피해 확인작업 관련

- 진상조사 작업 관련하여 조사 속도를 빨리 하라고 요구
  - 현재속도로 진상규명을 실시할 경우 5년~7년의 세월이 요구되므로 조속한 처리 요구
- 현재 고령인 인우 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
- 호적상 잘못으로 유족자격 판정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제기사항

- 유족들이 단결 화합하여 요구를 관철하자는 의견도 제시
- 총각으로 강제징용당하여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직계 유족이 없는 사람이 많고, 그 분들이 유족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심한 갈등이 예상되므로 재검토 필요
- 민·관공동위원회 내에 사안별 특별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

나. 제 1차 피해자단체대표 간담회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05.9.9. 11:30~14: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 참석자(16명)

○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8명)

- 양삼승 위원, 백충현 위원, 이재춘 위원, 유병용 위원, 한정숙 위원, 전종훈 위원, 김학순 위원, 이복렬 위원

○ 피해자단체장(4명)

-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 선태수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대표
- 김경석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대표
-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회장

○ 대책기획단(4명) : 오균 부단장, 장진복 과장 , 정병규 과장, 김충렬 사무관

2) 주요 논의 내용

《 선태수 대표 》

○ 과거 입법에 관한 사항

- 생존자협회는 15대 국회부터 16대 국회까지 회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선거법 문제 등에 밀려 무산되었음
- 17대 국회에서는 생존자협회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공동으로 '04.6월에 『생활안정지원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고, '05.2.1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

○ 『생활안정지원법』 입법처리 요구

- '05.1월 한일수교문서공개 전에 생존자협회와 유족회에 등록한 회원들은 국회와 정부에서 인정하여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람

○ 생존자협회의 소망사항

- 생존자들이 고령으로 매일 매일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7~8년이 흐르고 나면 다 죽고 말 것임
- 따라서, 살아생전에 단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생활안정지원법을 성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음

《 김경석 대표 》

○ 보상의 의의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한일협정에서 일본측은 개인보상을 주장한데 반해 한국정부는 일괄보상을 주장하여 관철시켰음
- 오랜 세월동안의 희생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지금 와서 심적ㆍ 물적 보상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다행한 일임

○ 보상의 내용

- 보상은 물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60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온 희생자 및 유

가족들에게는 정신적 위로가 더 중요함

○ 보상이 간절한 이유

- 이번 정부대책은 근대사의 한 획을 긋는 "눈"이 될 것임
- 지급방법에 있어 그 액수는 신중히 하여 정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리는 액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일시 보상금 형태가 바람직함
-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일시금 얼마에 월 얼마를 지급한다는 논리는 지급금의 성격상(보상금) 불합리함

○ 맺음말

- 생존자의 거의 대부분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년대임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끝내 주었으면 함

《 양순임 회장 》

○ 대책기획단에 희망사항

- 2차에 걸친 문서공개로 우리정부의 책임과 일본의 책임이 구분되어 향후 일본의 사죄촉구등 한일 과거청산 운동의 재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은 대책기획단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정부가 한일협정 자금을 당시 국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국가재건에 이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국가계획을 세워야 함
- 보상은 확실히 진상규명이 된 확인자부터 먼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 시행 요구
- 피해자 판정 시 정부가 인우보증을 받기 전 기존단체에서 받아둔 인우보증은 진실한 것이므로 정부가 인정해야 함
- 추후 한일 과거 청산을 위해 실피해 희생자 단체를 포함한 종합적 기구설립을 촉구하는 바임
- 또한, 기존 단체들이 한일과거청산을 위해 떳떳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기 바람

《 이금주 회장 》

○ 청구권의 의미 및 정부대책의 성격

- 한일협정 시 청구권은 국가간의 청구권이었으므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 최근의 한국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해주지 못한 채 냉대와 무시를 하였던 것에 대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기본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봄
- 국가가 보상을 하더라도 무상자금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을 "경제유공자"로 부르고 대우할 것을 강력히 제안함
- 이러한 조치들은 희생자들이 오늘도 죽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보상관련법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이희자 대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 정부대책의 바람직한 방향

- 지원과 보상의 기준은 강제동원 이후 사망자나 중부상자 강제동원 이후 단기근무로 인한 피해, 강제동원 이후 장기근무 또는 억류로 인한 피해로 그룹화 할 수 밖에 없고, 피해 경중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 또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입증이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만큼 조사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회차원에서는 여야를 떠나 법 국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의견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공히 수렴하여 실효적인 대책방안으로 입법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기구는 개별 보상 또는 지원과 기금방식을 아우르는 융합적인 형태가 바람직함
- 향후 보험소비자연맹에서 주도하는 간이생명보험과 강제동원 이외의 식민지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시 국권상실의 시기에

통상적인 전쟁피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점과 청구권자금을 통한 경제개발의 혜택이 전국민에 공히 돌아갔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상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한일협정 문서공개

- 본 협회는 한일협정 문서공개 이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된 문서의 상세적인 검토를 거쳐 피해자문제 해결방안과 협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함
  - · 협회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8월 30일 구성하였으며, 1차 회의를 8월 말에 마쳤으며, 2차 회의를 10월 초, 3차 회의를 10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며, 그 이후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 보아야겠지만 정부의 금번 문서공개에 대한 협회의 시각은 다음과 같음
  - · 민·관공동위원회가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청구권자금 중 극히 일부분만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의적 · 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을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한데 대해서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다. 제 2차 피해자단체대표 간담회

1) 개요

☐ 일시 : '06.2.8, 12:00-15:30

☐ 참석자 : 16명(피해자대표 11명, 대책기획단 5명)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양순임, 장유식)

○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선태수, 김종만)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이희자, 김은식)

○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이금주, 김인성)

○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김경석, 이상찬)

○ 대한민국대일민족소송단중앙단(최순학)

○ 대책기획단(오균 부단장, 손영재, 정병규 과장, 김충렬, 이형석 사무관)

2) 주요의견 및 질의답변

《 대책기획단 》

○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조사('05,1~'05.8), 피해자 공청회('05.11), 여론조사('05.12)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정부의 지원대책에 섭섭한 점이 많겠지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당부드림

○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한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2개월 정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대책기획단은 '06년 상반기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법통과를 위해서는 피해자 단체측의 협조가 긴요한 사항임

○ 현재까지 논의된 정부입장을 정리하면

- '미수금'과 '일본이 성의표시로 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원

- 위로금 지급 문제는 대만과 재일교포사례 등을 참고하였고, 지원대상자는 사망자와 부상자까지 확대하며, 생존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유족의 범위로는 피해자의 처, 직계자손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

《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김경석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대책기획단과의 관계

<답변> 당초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견은 피해자 규명 등에 참고하고 있음

○ 정부입법, 국회승인, 시행령 제정 등 시일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변> 정부지원은 공식적이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나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선태수 》

○ 수혜대상자 유족 범위 확정과 관련, 지원대상은 직계가족이 되어야 할 것임

○ 허위신고자 배제 및 정확한 피해자 수 추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

○ 사망자는 지원범위에 포함되나 생존자는 포함되지 않는 이유

<답변> 미수금의 경우 생존자도 포함

- 대만의 경우에도 사망자, 부상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

○ 군인, 군속은 명단이 있는데 징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군인, 군속에 대해서는 후생성 등에 자료가 존재하나 징용자에 대해서는 자료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일본법원은 일제강제동원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나, '65 한일협정 제 2조 1항으로 동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임

<답변>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사망자, 부상자, 생존자 모두 포괄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임. 포괄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은 국가간의 문제나 민사상 재산권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지 일제강점하 불법행위에 기인한 행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

○ 정부가 피해자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분명히 사죄를 하고 성의껏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진상규명위와 대책기획단은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길 부탁

○ 대책기획단에서 수차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므로 앞으로 문제해결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김인성 》

○ 행불자에 대한 지원여부도 검토해주길 부탁

<답변> 행불자에 대해선 현재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미수금 환산비율

<답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일본이 대만에 대해 지불한 비율이 1,200배 정도 되는 것을 참고로 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대책기획단 》

○ 예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원금액이 피해당사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해하길 바람

○ 생환자 중 부상자의 경우, 부상상태를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미부상생환자 대책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면 검토하도록 하겠음

6.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

가. 토론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05.10.13. 14:00~17:00. 코리아나 호텔 4층 에머럴드홀

2) 주최 : 민·관동동위원회

3) 참석자

○ 민·관공동 위원회 : 양삼승 위원장, 유병용 위원, 이복렬 위원, 김학순 위원 (4명)

○ 각계 전문가

- 발표자 : 정근식 교수, 이원덕 교수
- 기타 : 김민영 교수, 김용수 부장, 박환교수, 승현스님, 안종철 국장, 오창익 국장, 장완익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8명)

○ 방청객 : 학술연구단체, 대학생, 대학원생 및 관련 공무원 (20명)

○ 대책기획단 관계자 (6명)

4) 행사진행 : 발표자 각각의 발표내용 청취 후 궁금한 사항 질문 후 자유토론 시간을 가짐

나. 한일협정문서 청구권관계 주요내용 및 쟁점

1) 발표자 :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2) 주요내용

□ 주요내용

○ 한일협정문서 청구권 관계 주요내용 - 협상 경위

- 제 1차 회담 : 청구권 대 역(逆) 청구권
  - 강화조약 참가 좌절로 전쟁 배상, 보상의 요구가 재산, 청구권 요구로 축소
  - 8개 항목의 대일 요구 제기
  - 한국의 청구권 요구에 일본이 제기한 역 청구권 주장으로 첨예한 대립
- 제 3차 회담 : '구보다 발언' 파동
  - 일본측 수석대표인 구보다가 '36년간 일본의 한국 강제 점령은 한민족에 유익하였다'는 내용을 비롯한 한국측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논쟁 발생
  - 이후 4년 반의 회담 중단 초래
  - '57년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 정권이 구보다 발언과 역 청구권 주장 철회
- 제 5차 회담
  - 청구권 각 항목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의견 접근은 실패
- 제 6차 회담 : 청구권 타결
  - 군사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자금과 기술도입을 위해 회담재개
  - 실무교섭과 별도로 정치적 일괄타결을 위해 특사 파견
  - 한국측이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총액 6억 불로 타결

○ 한일 청구권 협정의 주요 쟁점

-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격
  - 일본 :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배상이나 보상적 요구를 원천 봉쇄
  - 한국 : 일본이 입장을 고수하자 총액방식으로 선회, 경제발전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섭
- 대일 청구권 무상 자금의 성격
  - 총액결정 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 추정이 어려움
  - 무상 자금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 금액의 추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
- 강제동원 피해보상 요구 및 협상과정
  - 한국정부는 당초 청구권으로 강제동원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정함에 따라 "고통 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해

보상 요구

· 협정이 총액 타결방식으로 종결되어 어느 피해유형 범위까지 보상 필요성에 합의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음

- 일본 전후처리의 국제비교

· 일본은 강화조약을 통한 국가 대 국가 방식을 추구하였고, 독일은 개인 보상 방식으로 해결 추구

· 동남에 4개국에 대해서는 이국 간 교섭통한 배상방식으로 해결

· 중국과 대만은 배상 포기하였고, 북한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다.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의 의미 및 추진방향

1) 발표자 :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 주요내용

○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의 의미

-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

- 보상의 방식과 수준은 앞으로의 여타 과거사 현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피해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시키며, 일본의 불충분한 보상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

○ 지원대책의 추진 방향 설정

-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 및 과거 피해보상의 연혁

·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는 정부차원의 정확한 조사가 없어 추정치에 그침

· 과거 '75년 피해보상은 보상대상, 보상수준, 보상방법에 문제 존재

- 새로운 정책수립을 위한 준거

· 청구권 보상이후 국내에서 군위안부,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등에 지원

· 청구권 보상이후 형성된 외국에서의 사례

· 집단적, 개인적 운동 형태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 피해자들이 지원 단가에 대하여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법안'을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

- 정책수립에서의 주요 쟁점
  · 진상규명과 지원대책 수립의 추진시기
  · 지원방식의 문제
  · 지원대상 피해유형 문제
  · 지원재원의 총규모와 재원부담자
  · 지원 추진기구
  ·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방법의 문제

7. 국민 여론조사

□ 주관

○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 조사 목적

○ 한일문서공개에 따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해외강제동원 피해 지원의 필요성,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시기 및 방법, 재원의 범위 등에 대해 일반국민의 여론을 조사하여 정부대책 마련에 참고

□ 조사 범주

○ 대상자 선정

- '04.12.31일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1,200명 선정
- 조사거부 등을 고려하여 200명 정도 추가 선정

□ 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기간

○ '05.12.7~12.26 (20일간)

□ 조사방법

○ 한국갤럽의 조사원이 피조사자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 실시

□ 조사항목

○ 지원의 필요성
- 일제의 해외강제동원 사실 인지 여부
- 해외강제동원 한국민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의견
- '75년 정부 보상과 관련하여 추가대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 추가대책에 의한 적정 지원방법
- '75년 보상을 받은 사망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지원대상 범위 및 시기
- 지원대상으로 피해의 유형 고려 여부
- 피해유형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
- 지원실시 시기
- 국내강제동원자 포함 여부

○ 지원수준과 지원방법
- 소요재원 규모
- 강제동원중 부상자에 대한 부상고려 정도
- 소요자금 마련 방법
- 강제동원자 지원의 효과

□ 조사결과

질의 항목	조사 결과
○대책수립여부	- **'동의' 90.3%**
○ 지원방법	- **피해개인별 위로금 지급: 58.2%** - 의료장학등 복지지원 : 25.2%
○ 개인별 지원대상	- **피해정도에 상관없이 강제동원자 모두에게 지원(54.7%)** - 징용 중 사망, 부상 등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지원'(43.5%)
○우선지원대상	- **강제동원기간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유장애를 갖고 있는 현재 생존자(본인)' 63.9%** - 강제동원중 사망한 자의 유족 27.1% - 미부상귀환 생존자 3%, 미부상귀환후 사망자 유족 0.5%
○ '75보상자 포함여부	- **'75년 보상액 차감 지원 71.1%** - 추가지원대상에서 제외 28.3%
○ 국내동원자 지원여부	- **해외강제동원자와 같이 지원 61.3%** - 지원대상에서 제외 37.3%
○ 재원규모	- **재정여건, 해외사례 고려 62.6%** - 무상3억달러 범위내 23.8% - 피해자요구수준지원 13.2%
○ 부상자 지원여부	- **심한부상을 입은 자 61.4%** - 경미한 부상 포함 모두 38.55%
○재원마련방법	- **정부예산 55.9%** - 정부예산 및 국민성금 39.4%

※ 이 결과는 자료집 '한일수교회담문서 공개에 따른 정부대책 관련조사'로 발간 ('05.12)

8. 연구용역조사 및 워크숍 개최

가. 연구용역조사

1) '65년 한일수교회담에서 나타난 각종금액에 대한 현재가치 연구

□ 연구목적

○ 한일수교 협상과정과 협정 체결 이후 도입된 청구권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집행 상황에 대해 분석

- 이를 바탕으로 과거 우리정부가 실시한 개인 재산권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액을 물가 및 상품가격, 시대상황 등을 반영하여 검토한 후, 통계적·경제학적 접근방법론에 입각하여 당시 일제시대 화폐의 현재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개인 피해자 보상수준 토의를 위한 이론적 기초 자료 제공

□ 연구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구결과

○ '45년 당시 1엔의 가치가 '05년 현재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분석

○ '75년도에 강제 징용사망자에 대한 우리정부의 보상금액을 '05년 현재가치로 계측하여, 현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보상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 후, 보상금액의 적정 수준을 제시

○ '62년 우리정부가 한일회담 협상 시 일본에 제시한 1인당 사망자 보상금 1,650달러에 대해 '75년 현재가치 및 '05년 현재가치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당시 보상금 지급시점 가치와 현재가치의 수준차이 제시

○ '66~'75년 10년간 일본에서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에 대한 '05년 현재기준의 화폐가치를 계측함으로써, 당시 우리정부의 대일본 청구권 금액 제시 수준의 재평가와 타당성 여부를 검증

2) 일제강제동원 부상장해자 장해등급 분류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 일제 강제동원자에 대한 지원법이 제정되면 부상·장해의 정도 및 장해정도에 따른 위로금액의 수준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여야 함.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장해 등급책정과 장해등급을 관련 국가기록을 근거로 합리적인 분류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금액 산정의 객관적 기초자료 마련
- 정부 지원에 있어서 장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하여 장해등급을 통한 지원금의 형평성 있는 집행을 유도하고, 장해가 없는 당시 부상에 대해서도 질병의 자연경과 및 자료 분석을 통한 등급 제시

□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법의학교실

□ 연구결과

○ 지원대상 범위

- 외상+질병 포함

○ 지원등급 분류

- 장해등급 : 신체 장해정도에 따라 분류 14개 등급(안)과 5개 등급(안)제시
  * 국가배상법을 기본으로 한 5·18 보상법의 14개 등급을 준용
- 장해가 없는 외상·질병 등급 : 상병·위로등급을 제정하여 3개 및 2개 등급(안) 제시
  * 외상의 경우 '손상정도계수'를 적용하여, 3등급, 2등급, 동일취급(안) 제시
  * 질병의 경우 '질병등급분류표'를 적용하여, 3등급, 2등급(안) 제시
- 등급 제외대상 : 성병(매독 등), 권태, 식욕부진 등

○ 최종 지원 등급(안) 제시

- 지원등급표는 <장해+상병·위로등급>을 통합한 장해 5등급 + 상병·위로 2등급(7단계 안) 제시

※ 부상장해자 장해등급 구분표 (5단계 안)

등급	신 체 장 해, 질 병 및 외 상 정도	노동력 상실률 (%)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3.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4.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8. 한 팔 이상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 이상에서 기능이 전폐된 자 10.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폐용 또는 상실한 자 11.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2. 한 다리 이상에서 기능이 전폐된 자 13.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 한 자 14.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80-100
제2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3.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4.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5.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6.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7.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9.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가 남은 자	50-70

제2급	10.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11.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4.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15.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6.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7.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18.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9.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20.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자 2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2.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50-70
제3급	1.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5.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6.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7.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8. 한 팔에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1.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30-40

제3급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4.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5.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6.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30-40
제4급	1. 한 눈 이상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3.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6.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10.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11.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12. 한 손의 둘째손가락 또는 가운데 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이 상실 또는 폐용된 자 1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둘째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5.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6. 외모에 흉터가 남은 자	15-20

제5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5.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 또는 폐용된 자 7. 한 손의 한 개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8. 한 손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9.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10.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2.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상실 또는 폐용된 자 13.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10

※ 상병 · 위로등급 구분표 (2단계 안)

등급	판 정 기 준
제1급	(1) 당시 외상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3, 4, 5항인 사람 (2) 당시 외상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2항이 2개 이상인 사람 (3) 당시 외상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 중 2항인 사람이 실제 입원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4) 당시 외상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1항인 사람이 실제 입원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5) 외상의 평가기준 중 2항 또는 1항인 사람이 당시 판정을 '中等' 및 '重'을 받은 경우 (6) 당시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7) 당시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2급이 2개 이상인 사람 (8) 당시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 중 2급인 사람이 실제 입원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9) 당시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1급인 사람이 실제 입원일수가 120일 이상인 경우 (10) 질병의 평가기준 중 2급 또는 1급인 사람이 당시 판정을 '中等' 또는 '重'을 받은 경우

제2급	(1) 당시 외상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높은 등급이 2항 이하인 사람 (2) 외상의 평가기준 중 1항인 사람이 당시 판정을 '輕' 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 (3) 당시 질병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높은 등급이 2급 이하인사람 (4) 외상의 평가기준 정도에서 당시 판정을 '輕' 이하를 받은 경우

나. 워크숍

1) 미수금 지원대책 실무 워크숍

□ 개요

○ 일시 : '06.10.4, 14:00~17:30

○ 장소 :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회의실

○ 참가자 : 10명

○ 주관 :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 목적

◇ 정기 국회에 제출('06.9.25)한 「일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률」 제정 시행에 대비한, 미수금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대책 마련

◇ 미수금(공탁금) 명부 확보를 위한 일본과의 외교적 노력 등 필요

※ 지원법 제 5조(미수금 지원금)

□ 진행순서

○ 개회 · 인사말씀

-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장동환 부단장

○ 주제발표

- 정부기록원 노영종 학예연구사

○ 개별 발표

-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손영재 협력지원과장

- 정부기록원 구익서 서울사무소장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이세일 후생연금 담당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김창주 공탁금 담당
-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여중협 준비기획단장
-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임경훈 서기관 등

□ 안건

○ 국가기록원 미수금(공탁금) 명부 현황에 대한 검토
-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공탁 관련 명부의 조선인은 모두 147,710명
- 그러나, 다른 기록도 다소 포함되어 있고, 공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

○ 미수금(공탁금) 지원 추진대책 보고
- 미수금 현황
- 일본의 공탁금관리 현황
- 공탁금 명부 확보 대책

○ 국내(공탁금) 명부자료 관리 실태 및 DB 작업계획

○ 후생명부 확보회의 전략

○ 진상규명위 공탁금 명부 조사 작업현황 및 대책

○ 지원법 제정 및 미수금(공탁금) 지원

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제정관련 워크숍

□ 개요

○ 일시 : '06.11.17, 10:00~16:00

○ 장소 : 규제개혁위원장실(정부중앙청사 1층)

○ 주관 :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 목적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06.9월 국회제

출에 따른 법률의 위임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동법률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함

□ 진행 방식

○ 담당분야별로 검토한 주요 의제에 대해 「개인별 발표」 진행

- 각 의제별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마지막 3분 「질의응답」 진행

○ 마지막 40분 「전체 토론」 진행

□ 안건

○ 부상장해자 인정 및 등급처리 추진방안

- 부상장해자 현황 및 지원 기본방향

-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

○ 미수금(공탁금)지원 대책현황 및 지원시행 세부지침 검토

- 미수금 (공탁금) 관련 현황

- 미수금 지원 세부지침(대상자 인정기준, 자료 인정기준 등) 검토

○ 정부의 미수금(공탁금)지원을 위한 대일 외교적 노력과 성과

-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개요

- 동경 법무국 방문 등 주요 내용 및 성과

○ 위로금 등 지급절차

- 신청 및 접수 절차

- 지원위원회 심의 및 지급절차

○ 태평양전쟁희생자생활안정지원법(안) 비교 검토 등

3) 부상장해 등급에 관한 워크숍 개최

□ 개요

○ 일 시 : '07.6.11. 16:00~17:30

○ 장 소 : 규제개혁위원장실(중앙청사 1층)

○ 주 제 : 일제강제동원 부상장해자 등급 분류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서울대의대 유성호 교수)

○ 참 석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
- 관계기관 : 청와대(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 행자부(주민제도팀장), 진상규명위원회(관련과장),
- 총리실 대책기획단, 행자부 준비기획단 관계관

□ 목적

○ 정부 지원법에서는 부상자에게 장해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0여년이 지난 사안이라 많은 어려움 예상

○ 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해등급 분류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시행령안에 반영하기 위함

* 부상장해자 장해등급 분류에 관한 연구용역(4.18~6.17, 서울대의대 이윤성 교수)

□ 안건

○ 연구용역 결과 요약

-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등급 분류

○ 용어의 정리

- "장애"는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장해"는 법률적 용어로 "장해" 사용

○ 장해등급과 상병등급의 통합에 대한 세 가지 방법 제시 및 논의

- 각 등급간 균등 분할 방안
- 장해5급과 상병1급간 격차 확대 방안
- 장해5급과 상병1급간 격차 축소 방안

9. 주요 발간 자료

가. 유인물

- ○ '75년도 피해보상내용 분석 및 시사점 ('05.4)
- ○ 독일의 전쟁피해 보상사례 ('05.4)
-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06.3.22)
-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06.6.30)
-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자료(1) ('06.9)
-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06.9)
- ○ 미수금(공탁금) 지원 대책 실무 워크샵 ('06.10.4)
- ○ 정부 지원 법률(안) 관련 국회 설명자료 ('06.10)
-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06.10)
-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축조 설명자료 ('06.10)
- ○ 일제 강제동원 피해대책 관련 각종 회의 자료 ('06.10)
-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경과 ('06.10)
-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06.11)
-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제정관련 워크숍 ('06.11.17)
- ○ 공탁금 확인요청 명부 리스트(3,000명) ('07.5)
- ○ 미수금(공탁금) 금액확인요청 명부 리스트(700명) ('07.5)

나. 발행 책자

- ○ 한일청구권 협정 해석 참고자료 ('06)
- ○ 일본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전후보상 및 국내원호관련 자료집 ('06.2)
- ○ 독일의 강제동원 보상관계 자료집 ('06.3)

다. 용역 관련 자료집

○ '65년 한일수교회담에서 나타난 각종 금액에 대한 현재가치 연구 ('05.12)
○ 일제 강제동원 부상장해자 장해등급 분류에 관한 연구 ('07.8)
○ 한일수교회담문서 공개에 따른 정부대책 관련 조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05.12)

10. 자료수집 및 사례탐구를 위한 국내외 조사활동

가. 국외조사활동

1) 대만
○ 기간 : '05.10.24~10.28
○ 주요 조사내용
- '87년 대만출신 군인·군속 사망·부상자 보상
- '95년 대만인출신 일본 군인군속 우편저금 등 미불임금(확정채무) 환불
- '00년 재일외국인중 일제 군인·군속 전몰·전상자에 대한 보상

2) 사할린
○ 기간 : '05.6.20~6.27
○ 목적
- 일제강점하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3) 일본
□ 1차 조사
○ 기간 : '05.10.18~10.22
○ 목적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강제동원현황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일본정부기관을 방문하여 자료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일본정부가 전후에 실시한 바 있는 각종 지원사례 조사

- 일본 내에서 피해자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면담을 통하여 일본정부가 시행한 바 있는 강제동원피해자 처리현황을 청취하고 관련자료 수집

○ 주요 조사내용

- 일제강점하의 우편저금의 관리 및 지급 현황 (우정공사)
- 공탁금 기록 보관현황 및 공탁자, 공탁금 확인 방법 (법무성, 후생노동성)
- 후생연금 관리 및 지급 현황 (사회보험청)
- 일본의 자국내 전후보상, 일본의 대만 군인군속에 대한 조위금 등 지급 현황 및 일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조위금 지급 현황 (민간단체)

□ 2차 조사

○ 기간 : '06.6.14~6.17

○ 목적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자 미불임금 등 미수금공탁명부 관련 협의

□ 3차 조사

○ 기간 : '06.6.28~7.1

○ 목적

- 한일협정 관련 공탁금 명부 확인

4) 폴란드

○ 기간 : '05.10.16~10.23

○ 목적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책수립을 위한 해외자료 수집

나. 국내조사활동

1) 서울지역

□ 6개 관련단체 방문

-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유족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일제강제연행한국인생존자협회, 한국정신대연구소

○ 기간 : '05.2.15~2.17

○ 목적

- 피해자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관련 학술연구단체 및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의 의견청취, 지역별 피해신고 접수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 수렴

□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 기간 : '05.3.4, 11:30~14:00

○ 면담자 :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김경석 회장, 이재만 춘천지부장, 춘천라이온스클럽 마무일 회장

○ 목적

- 피해자단체들의 공통된 의견표명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단체 개별 접촉으로 단체의 주장요지 파악
-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향후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2) 충청도 (대전 국가기록원)

□ 1차 조사

○ 기간 : '06.6.1~6.2

○ 면담자 : 수집관리팀, 서비스혁신팀, 정보화팀 담당자

○ 목적

- 일제강제징용자 명부 국가기록원 자료 실태조사

□ 2차 조사

○ 기간 : '06.9.26

○ 면담자 : 국가기록원장, 서비스혁신팀, 기록정보화팀 담당자

○ 목적

- 10월 중순 개최 예정인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에 대비, 국가기록원 보유 일제강제징용자 명부자료 중 공탁금 관련 자료 현황파악
- 향후, "한일 공탁금액 명부 확인채널"구축 후, 명부 확인에 활용하기 위한

일제강제징용자 명부 공탁금 사항 기록자료에 대한 D/B구축 방안 협의
- 일본정부 보관 공탁금 명부 자료에 대한 "한일간 공동D/B 구축" 활용방안 및 소요비용 분담계획 등

3) 경기도

□ 파주시

○ 기간 : '06.6.12

○ 면담자 : 남상균 지적과장

○ 목적 : 특별조치법 시행과정에서 인우보증에 의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과제 조사

4) 전라도 지역

□ 전라북도

○ 기간 : '05.3.18, 14:00~17:00

○ 면담자 : 전라북도 실무위원회 및 피해신고자

○ 목적 : 전북지역 피해자 의견 청취

□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 기간 : '05.3.19, 11:00~13:00

○ 면담자 :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 노정희 상임이사,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

○ 목적 : 광주지역 태평양전쟁희생자 의견 청취

□ 광주광역시, 완주군, 익산시

○ 기간 : '06.5.2 ~5.4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자 확인조사 처리 현황 조사
- 광주민주화 보상사례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광주민주화 보상 시 장애등급 판정과 관련한 문제점파악

5) 제주도

○ 기간 : '05.11.24~11.26

○ 목적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제주도청의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방문하여 실무처리 담당자 면담 및 자문
- 사건경과 기간이 일제강점하 피해자와 유사한 제주4·3사건 부상자의 직접 면담 및 의료비 지원내용 파악
- 제주도내의 장해 진단서 발급한 국공립병원 의사 면담을 통해 향후 치료비 책정 및 부상정도 파악과 관련한 애로사항 의견청취

6) 경상도 지역

□ 부산광역시

○ 기간 : '05.5.31, 10:00~11:30

○ 면담자 : 강제동원생존자 및 유족

○ 목적 : 부산지역 피해자 및 유족 의견청취

□ 경남 거창·합천, 경북 안동

○ 기간 : '05.6.14~6.17

○ 목적

- 일제 강제동원 생존자 중 경상도 거주자와의 직접 대면 면담으로 당시 상황, 현재의 생활형편,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 지역 민심 등을 여과없이 청취하여 추후 대책 수립 시 참고
- 합천군 소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원폭피해자 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회관의 운영실태 현황 파악
- 「우키시마호 격침사건」 피해자의 유족 중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및 진상규명을 위해 30여 년간 힘쓴 한영용 (우키사마호 피해진상 및 보상대책협의회 회장) 면담 및 경과 청취
- 한일협정 후 「대일민간청구권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안동세무서에서 청구

권 보상업무에 종사하였던 안동거주 "배갑석"씨를 면담하여 그 당시 상황 청취 및 정부대책 관련 자문

□ 경주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기간 : '06.5.8~5.11

○ 면담자 : 피해자유족, 생존자, 태평양전쟁유족회원, 시도진상규명위 업무담당자

○ 목적 : 민원동향 확인

- 정부지원법률안에 대한 인지도와 전반적인 반응
- 정부지원법률안과 장복심의원법률안에 대한 의견동향
- 무사생환자에 대한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에 대한 반응
- 피해자 지원대상 유족범위에 대한 반응
- 피해자신고에 대한 피해확인판정에 대한 반응

제 3 장 지원법 제정 활동

1. 지원법 추진 활동 개요
2. 지원법 제정 절차
3. 지원법의 주요 내용
4. 지원법 통과를 위한 한일대책기획단의 국회 대응 활동
5.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

제 3장 지원법 제정 활동

1. 지원법 추진 활동 개요

'05.8.26일 제 3차 민·관공동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부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약 1년간 정부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마침내 '06.9.25일 국회에 지원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법제정 절차에 따른 정부의 활동과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원법 제정 절차

가. 관계부처 협의

○ '06.3.13일부터 '06.3.22일까지 관계부처에 공문으로 의견 조회를 요청, 이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 타 부처 의견 없었음

나. 입법예고

□ 개요

정부는 관보와 정부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21일간('06.3.16~'06.4.5)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주요 의견 내용

○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 재판상 화해 조항의 삭제
- 일본과 미해결된 부분에 대한 정부 교섭 촉구, 피해자가 대일 투쟁 시 정부 지원

-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가 피해자의 몫으로 주장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 주길 당부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연대
- 일본으로부터 피해자의 몫으로 받아온 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길 요구
- 위로금 1인당 2천만 원의 수준은 매우 미흡
- 지원법률이 피해자를 납득시키기에 역부족, 법률안 철회 요구

○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
- 국회에 계류 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안에 미불임금 조항 삽입
-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요구
- "일제강점하"라는 법률 명칭 거부
-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지원대상 포함
- 유족범위 확대 요망
- 생환자 중 생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재단이나 기금 설치

○ 한국인 원BC급 전범자 「동진회」
-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은 일본국과 외교교섭을 재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보상 기대

○ 한국원폭피해자 협회
- 원폭피해자의 복지회관 건립 요망
- 박물관 및 위령탑 건립 요망

○ 우키시마호 사건배상 추진위원회
-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단 공개 요구
- 피해자 시신 암매장 장소와 시신 명단 공개 요구
- 대량 학살에 대해 일본해군의 사죄와 배상 요구

○ 한국시베리아 삭풍회
- 생존귀환자도 희생자와 동일 수준의 보상 희망

○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
- 정부 귀책 부분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 당부
- 피해자들이 대일 소송 시 정부의 구체적 지원

다. 공청회

□ 개요

'06.3.22일 정부중앙청사별관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는 10여 개의 주요 단체와 소속회원, 지방공무원 등 200여 명 참여 하에 한일대책기획단 손영재 과장 진행으로 8명이 토론(좌장 : 손혁재, 발제 : 대책기획단 오 균 부단장, 토론자 : 진상규명위원회 박성규 사무국장, 수암 스님, 이호경 교수, 이원덕 교수, 박완규 교수, 하종문 교수)에 나섰으며, 방청객들도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 주요 토론 내용

○ 법안 주요내용 설명 (오 균 부단장)

○ 정신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바람직 (수암 스님)

○ 청구권자금의 성격에 대해 청구권 협상부터 지금까지 양국간 견해 차이가 있으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국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 (이원덕 교수)

○ 청구권협정에 국한하지 말고 좀더 광범위한 접근 필요 (하종문 교수)

□ 기타 방청객 의견

○ 한일협정 당시 일본국으로부터 받아온 강제동원피해자의 몫을 되돌려주길 요구

○ 생환자 중 생존자와 사망자유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

○ 미수금에 대한 지원금액 매우 미흡

○ 위로금 지원보다도 유골봉환이 우선시되어야 함

○ 우키시마 침폭에 대해서 사망자파악 등 사실관계 확인과 사망자의 시신 안치장소 지정 문제가 중요

○ 일제강점하 고통을 받고 현재 6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피해자 지원에 시간이 많이 소요

라. 당정협의

□ 개요

'06.6.30일 정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렉싱턴호텔 2층 리틀도쿄에서 지원법의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 참석자

- 당　측 : 유인태(행자위 위원장), 문병호(제1정조위원장), 노현송(행자위 간사), 장복심,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
- 정부측 : 이용섭(행정자치부장관), 유종상(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권혁인(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정해방(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장동환(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 차성수 비서관(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기 춘 행정관(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 주요 논의 내용

○ 유족 범위 확대

- 피해자단체에서 민법상의 재산상속인까지 확대 요구 의견이 많음

→ 위로차원의 지원이므로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함이 타당

→ 타 과거사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함이 타당

⇒ 정부안에 잠정 합의

○ 위로금 증액

- 위로금액 증액(일시금 5천만 원, 연금60만 원 수준) 타당

→ 위로금액은 외국사례 등을 참고로 결정

→ 위로금액은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고려

⇒ 정부안에 잠정 합의

○ 재단설립

- 피해자 단체에서 재단설립 요청 빈발

→ 가해국가인 일본국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

→ 특별법에 의한 재단설립은 이중지원 문제 발생, 수많은 지원대상자(10만여 명)로 행정비용 과대 소요

→ 재단설립은 시민단체 · 기업이 자발적으로 함이 타당

⇒ 대안 검토 당부

○ 의료 및 교육지원

-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은 과다한 행정비용 수반

→ 교육지원은 행정비용 과다 수반으로 삭제함이 타당

→ 교육지원은 입법 예고가 이미 되었고, 생환 후 생존자와는 달리 생환 후 사망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 어려움

⇒ 생존자 의료지원에는 합의, 생환 후 사망자 교육지원은 좀더 논의

○ 소관위원회

- 소관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 지정 주장

⇒ 국회에서 조정할 계획

○ 법안 명칭

- 법제명을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법"으로 함이 타당

→ 태평양전쟁으로 기간을 한정하면 대상자가 축소되므로 정부안이 타당

→ 정부안에 대부분 동의

⇒ 정부가 마련한 법안 명칭에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결론

마. 법제처 심사

1) 법제처 1차 심사

□ 심사 개요

'06.7.20일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실에서 법제처(임병수 법제심의관, 이광숙 사무관)와 대책기획단(정병규 과장, 이형석 사무관) 관계자들이 지원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하였다.

□ 주요논의 내용

가) 진상규명법과는 별도의 지원법 제정 필요성

○ 별도 구성의 필요성 인정

나) 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안 제10조 제6항)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

○ 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항은 위임대상으로 부적절, 법률 규정 사항으로 판단

다) 위로금등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안 제20조 제1항)

○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로 규정

→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지급신청"을 "지급결정"으로 변경

라)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벌칙 (안 제26조 제2항)

○ 비밀누설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이 타당

마) 위원회 규칙 공포 권한(안 부칙)

○ **부칙**에 "이 법은.. 시행한다. 다만, 위원....**위원회규칙의 제정 · 공포**, 위원회의...할 수 있다."로 규정

→ 현 지원법률에서 '공포' 문구의 삭제

바) 재심의 사유의 위임 (안 15조 제4항)

○ "재심의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

→ 재심사유를 제한은 삭제함이 타당

사) 기타 사항

○ 제안이유에서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부문" 삭제 의견

○ 위원장과 위원의 연임규정(제10조 제4항)에 "1차에 한하여" 추가

2) 법제처 2차 심사

□ 개요

'06.8.3일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 심의관실에서 법제처 임병수 법제심의관, 이광숙 사무관)와 대책기획단(정병규 과장, 이형석, 정광근 사무관)의 관계자들이 모여 합동 심사('06.8.2, 법제처) 시 제기된 문제점 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주요 논의 내용

가) 권리의 발생 및 소멸(안 제20조) 수정 검토

○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사유** 규정 ①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②**의료 및 교육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 ③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후 지급전에 친족관계가 소멸한 경우**

→ "권리의 발생 및 소멸"조항을 삭제하고, "소멸시효"로 규정

나) 결정전치주의(안 제17조) 삭제 검토

○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 가능**

→ 결정전치주의 삭제

다) 기본원칙(제2조)의 삭제

○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청구권 협정에 기초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강제동원과 관련된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제2조(기본원칙)를 삭제하되, 청구권협정관계는 적절한 문구로 목적조항에서 규정하고,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부분은 삭제

라)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및 대안 마련(안 제26조제2항)

○ 비밀누설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사유에서 규정

마) 분과위원회 조문 신설 (안 제10조)

바) 위원회 명칭 중 "심의" 삭제 (안 제9조)

○ 당초안에서는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심의**위원회"로 규정

→ "심의"조문 삭제

3) 법제처 3차 심사

□ 개요

'06.8.17일,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실에서 법제처(임병수 법제심의관, 이광숙 사무관)와 대책기획단(손영재 과장, 김덕곤, 이형석 사무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률안 주요 쟁점 논의·확정을 위한 심사를 하였다. 또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조문화 후 수정법률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하기로 하였다.

□ 주요논의 내용

가) 교육지원금 삭제

○ 제7조(의료지원금 및 교육지원금) ②국외 강제동원 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손자녀에게 부교재비 구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 법제처 교육지원 삭제 합의

나) 위로금등의 지급유형(고정급형, 변동급형)에 따른 법체계 검토

→ 의료지원금은 변동급 형태로 하고 “의료지원금 권리의 발생” 조항 신설

다) 부상장해자에 대한 위로금액 조정

○ 제4조(위로금) 2. 국외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1인당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1천만 원 이상” 삭제

라) 공동위원장 신설

마) “위원의 직무상 독립”(제12조) 조항 삭제

바) 유족의 범위 수정

→ 유족의 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조문화는 법제처에서 실시

바. 차관회의 (‘06.9.7)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논의

사. 국무회의 (‘06.9.12)

○ 원안 심의, 수정 없음

아.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06.9.25)

○ 원안 심의, 수정 없음

3. 지원법의 주요 내용

가. 지원법 개요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75년 정부보상 - 피해자 보상금액이 적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사망자만 보상, 부상자와 미수금피해자는 제외

나. 법안 주요 내용(본문 27개 조문, 부칙)

1) 목적(안 제1조)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2) 유족의 범위(안 제3조)

○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

3) 위로금(안 제4조)

○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각 구분에 따라 위로금 지급

- 사망·행방불명된 경우 2천만 원
-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4) 미수금 지원금(안 제5조)

○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1,25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

5) 의료지원금(안 제6조)

○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6) 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위원장 2인 포함 11인 이내,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의 임기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8)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함

9) 위로금등의 신청(안 제14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10) 심의와 결정(안 제15조)

○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원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 1회에 한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11) 결정서 송달(안 제16조)

○ 위원회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12) 재심의 등(안 제17조)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90일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13)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안 제18조)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서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 청구

14) 소멸시효(안 제21조)

○ 위로금 및 미수금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15) 시행시기(안 부칙)

○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지원법 통과를 위한 대책기획단의 국회 대응 활동

가. 행자위 심사

1) 행자위 전체회의 상정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06.11.27. 16:00~17:00, 국회 행자위 회의실

○ 진행 : 제안 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정갑윤 의원)과 공동상정

○ 정부측 참석

- 이용섭 행자부장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 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은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한일대책기획단장 자격으로 일괄답변

○ 회의결과

- 행자위 법안소위 회부(공청회 개최 포함) 의결

나)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여 · 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60여년이 지난 오랜 사안이므로 조속히 처리함이 타당
- 생환 후 사망자, 생환 후 생존자의 지원에 대해 좀더 전진적 자세 필요

<답변> 당초 생존자에 대해 200불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반대 입장. 다만, 현재생존자는 고령임을 감안 의료지원금 지급

- 의원입법안의 경우 유족의 범위를 사후양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임

○ 최연희 의원(무소속)

- 일제 강제동원 위로금의 지급수준(2천만 원)을 대만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정히 함이 타당

<답변> 당시 요구금액을 기준(12백~15백만 원)으로 하면 위로금액 적어지므로 대만의 사례 참고

- 정부지원법안의 경우 미수금의 환산배율(1,250배)이 너무 적으므로 상향 조정함이 타당

<답변> 미수금은 대만사례를 기준으로 하였고, 물가상승률 · 환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38.4.1 이전 강제동원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함이 타당

<답변> 강제동원 시점을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국가총동원법 이후로 보고 있음

○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 미수금은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피해자의 권리임
- 청구권자금을 사용한 기업 등이 참여하는 위로사업 등을 추진함이 타당

○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 기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와 재협의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
<답변> 신의칙상 재협상은 곤란
-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국민적 동의를 얻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함이 필요

○ 이상배 의원(한나라당)
- 양법안의 경우 위로금의 지원금액, 적용대상, 유족범위에서 차이가 나는데 적정한 위로금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액수로의 접근이 필요
- 법안명칭은 정부안과 같이 "일제강점하"로 함이 타당

다) 관련 단체 반응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20여명의 피해자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방청하였고, 마지막에 참석자 중 일부가 약간의 소란 야기

3) 행자위 법안소위 공청회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06.12.6. 11:40~13:00, 국회 행자위 소위원회실
○ 참석의원
- 강창일 법안소위위원장, 노현송 · 최규식 · 홍미영 위원(이상 열린우리당), 김정권 위원(한나라당)
○ 진행 : 진술인 발표 ⇒ 질의 · 답변
○ 진술인
-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 장동환 국조실 대책기획단 부단장,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중앙회회장, 최봉태 변호사(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 시민연대 공동대표)
※ 공청회 안건보고(정부지원법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는 지방행정본부장(행자부), 답변은 한일대책기획단부단장이 함

나) 주요 질의 · 답변내용

○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

- 생존자 및 생환 후 사망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근거는

<답변> 한일협상 시 사망자 · 부상자는 논의가 되었는데 생존자의 경우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타과거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생존자에게 위로금 지급은 곤란

- 문서공개를 계기로 정부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재정부담 때문에 생존자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생존자는 '75년도 보상에서도 제외되었고, 대책마련하면서 고민이 많았음. 다만, 생존자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

- 청구권자금을 당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균등하게 사용하였는데, 포스코 등 수혜기업이 피해자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 청구권 협정 시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지원법안에 규정을 하여야 하지 않느냐

<답변>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밝혔음

○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 공탁금 반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 '06.9월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개최를 통해서 3천 명분에 대해 일본에 공탁금액 확인을 요청했으며, 향후 17만 명 분에 대해 확인요청할 계획

- 일본군 위안부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고, 대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부가 노력을 하고 있음

- 포스코가 납부하는 법인세 등을 지원금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이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기금확보 문제는 별개의 사항으로 검토함이 타당하고, 지원이 시급하므로 우선 일시금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역사적 진실규명 후 기금문제를 논의함이 타당

○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

- "일제강점하" 제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답변> 제명은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태평양전쟁"용어는 일본과 미국간의 관계로 비춰질 수 있고, "일제강점하"라는 용어는 역사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타과거사 법률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 "강제동원"에 포인트를 두면 생존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답변> 정부지원대책은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75년 정부보상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마련

- 미수금 지원금의 환산배율이 너무 미흡하지 않은지

<답변> 일본의 대만인 보상사례를 참고로 환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

- 공탁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 태평양전쟁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안(장복심 의원)이 2년 전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정부지원법안과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함

- 정부안과 의원입법안과의 절충과 관련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먼저 법률이 빨리 제정되어야 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위로금의 총액과 관련하여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하고, 포스코가 정부에 내놓은 3조 원 정도는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진상규명위원회 신청분 19만 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천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포스코와 일본정부, 일본기업이 기금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 양순임 회장 발언

- 진상규명위원회 피해 판정자 27천여 명 중 지원대상자는 5천여 명에 불과하고,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위로금 외에 연금을 요구함

○ 강창일 위원장(열린우리당)

-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충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이므로 좀더 고민해 주시고, 향후 법안소위 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행자위 법안소위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07.1.19. 11:10~11:50, 국회 행자위 소위원회실

○ 참석의원

- 강창일 위원장, 노현송 · 최규식 위원(이상 열린우리당), 정두언 · 김정권 위원(이상 한나라당) 참석

○ 정부측 참석

-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 장동환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

○ 진행 : 공청회 및 전체회의 대체토론 내용 설명(수석전문위원) ⇒ 의원 발의안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및 질의 · 답변

※ 정부측 법안 입장설명은 행자부 제2차관, 답변은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이 함

나) 주요 질의 · 답변내용

○ 강창일 위원장(열린우리당)

- 정부의 지원법에 대한 입장은 이해되나, 대안을 가지고 위원과 유족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견해차를 좁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 요망

<답변> 현재, 정부에서는 피해자 단체 등이 주장하는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임

- 외교적 교섭 등을 통해 일본정부로 부터 유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명부 등을 받아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지난해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개최('06.11), 국내보관 자료에 대한 DB화 진행, 실무회의를 개최('07.1.18). 향후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국회차원에서도 한일의원연맹 등을 통하여 지원 협력 요망

○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 정부가 지원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갖고 전향적 검토 필요

<답변> 현재, 정부에서는 피해자 단체 등이 주장하는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

○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

- 수혜기업 (포철, 도로공사)이 정부로부터 빌린 돈만 다 갚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답변> 포철의 경우, 정부 출자지분은 공기업 민영화('00년)를 통해 정부에 상환하여 별도의 재정부담 요구 곤란하며 정부상환액 3조 8,899억 원 중 무상자금(121억 원) 부분을 추정해 보면 2,162억 원(총상환액의 5,56%) 수준임

※ 강창일위원장은 포철 등 수혜기업이 정부에 상환을 하였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원방안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다) 피해자 단체 반응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양순임 회장 등 유족 15명은 법안 소위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회의 결과가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나자 소위위원들을 향하여 피해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등 일부 소요가 있었음

5) 행자위 법안소위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07.2.21. 11:45~12:10, 행자위 소위원회실

○ 참석의원

- 강창일 위원장 · 홍미영 위원(이상 열린우리당), 유기준 · 정두언 · 김정권 위원(이상 한나라당), 노현송 · 최규식 위원(통합 신당)

○ 정부측 참석

-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 장동환 국무조정실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

※ 정부측 법안 입장설명은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 답변은 장인태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이 함

나) 주요 질의 · 답변내용

○ 강창일 위원장(열린우리당)

- 한국정부, 일본정부, 수혜기업 등 3자가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소위까지 정부에서 청사진을 간략히 문서화해 제출하고, 장학재단 등의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포철 · 도공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함

<답변> 다음 소위까지 제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고 포철 · 도공과의 협의도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곤란. 정부안은 민·관공동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법안임을 이해 요망

- 다음 행자위 법안 소위 시에 정부의 청사진과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답변> 26일 법안소위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음

○ 노현송 의원(통합신당)

- 법안 취지를 감안할 때, 강제동원 된 사실에 초점를 맞추어야 하며 따라서 생환 후 생존자와 사망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정부가 적극적 대안을 가지고 노력 요망

<답변> 노현송 위원(생환후 사망자)과 최규식 위원(생존자)간의 지원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

○ 최규식 의원(통합신당)

- 정부가 성의를 보여 생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대폭 올려야 하나 이 자리에서 결정이 어려운 바, 다음 소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현행 50만원 → 80만원 수준)하여 위원장과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함

<답변> 정부입법안은 한일청구권 협정 시 생환자 문제는 논의에 빠졌으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 미수금과 관련, 산정부분과 일본정부의 공탁금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

<답변> 금년 3월에 일본에 가서 실무접촉을 할 예정이며, 3천명의 자료에 대한 D/B화 작업 중으로, 일본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일본측에서 보완

요구한 부분을 3월 중순까지 보완하여 미수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음

○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 정부의 재정여건상 전향적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나 일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정부측에서 노력했던 흔적들을 보여 달라

6) 행자위 전체회의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07.4.25. 10:15~10:30, 국회 행자위 본회의실

○ 정부측 참석

- 박명재 행자부 장관(답변), 한범덕 행자부 제2차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 장동환 국조실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

※ 강창일 법안소위원장 궐위(건교위로 이동)로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의결이 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 3당간사간 협의(4.25, 09:30) 후 전체회의에 상정 · 의결키로 합의

○ 진행

- 법안소위 중간심사 보고(정부안 · 의원안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 제시) ⇒ 대체토론(축조심사, 질의 · 답변) ⇒ 의결

※ 중간심사는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이 법안소위를 대표하여 보고함

〈 위원회 대안 주요내용 〉

① 유족의 범위 : 정부안에서 손자녀 포함(형제자매 앞 순위)

② 미수금 지원금 : 1엔당 1,250원 ⇒ 2,000원으로 상향조정

나) 주요 질의 · 답변내용

○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 법률안 제20조의 조세감면 규정과 관련, 조특법 개정을 하여야 하지 않는지

<답변> 법안 입법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하였음

○ 김기춘 의원(한나라당)

- 미수금 지원금, 손자녀 추가 등에 따른 추가 예산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 추가 예산 분은 사전에 예산부처와 협의를 하였음

○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 일제강제동원피해는 6·25 등 타과거사와 차이점이 있으므로 생환자에 대해 좀더 나은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예산문제, 타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다) 관련 단체 반응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회장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되자, 법제명에 불만을 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일부 소요가 있었음

나. 법사위 심사

1) 법사위 전체회의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07.6.14. 11:47 ~ 12:01,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참석의원

- 안상수(한나라당, 위원장), 문병호·선병렬(이상 열린우리당), 나경원·박세환·주성영(이상 한나라당), 조순형(민주당), 김동철(무소속)

○ 정부측 참석

- 최양식 행자부 제1차관(답변), 장동환 국조실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 등

○ 주요 결과 : 법사위 제2법안 소위로 회부

나) 주요 질의·답변

○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 유족범위를 좁혀나서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어 법리적 검토 필요

○ 박세환 의원(한나라당)

- 민법상 정당한 상속권자로 조카를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유족들이 수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속권자(조카포함)는 당연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필요

<답변> 동 법은 보상법이 아니고 지원법임

○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 생존자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대책 검토 필요

<답변> 한일청구권협정 시 생존자는 제외되었음

○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 금번 지원과 관련없이 보상이나 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지원법으로 지원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

○ 김동철 의원(무소속)

- 한일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강제동원 측면에서는 국내외를 가릴 필요 없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답변> 한일청구권 협정 시 국내 강제동원자는 요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

2) 법사위 법안2소위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07.6.18. 20:18 ~ 20:23,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 참석의원

- 이주영 소위원장(한나라당), 이상민(열린우리당), 박세환 · 김명주(이상 한나라당)

○ 정부측 참석

- 한범덕 행자부 제2차관, 장동환 국조실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

나) 회의 결과

- 의결정족수(5명) 미달로 행자위 대안을 잠정 의결

※ 6.26 소위에서 추가심의 없이 정식 의결

다) 주요 질의 및 답변

○ 박세환 의원(한나라당)

- 지원법에 의한 총 소요예산 규모와 '08년 예산확보 여부

<답변> 총 4,507억 원 규모이며 '08년 예산은 기예산에 반영

○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 법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로 바꾸는 의견에 대한 견해

<답변>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인 '태평양전쟁'보다는 보다 '일제강점하'가 구체적 · 함축적으로 법 내용을 내포

3) 법사위 전체회의

가) 개요

○ 일시 : '07.6.18. 10:40

○ 정부측 참석 : 박명재 행자부 장관 등

○ 회의결과 : 행자위대안대로 원안 의결

나) 주요 질의 · 답변

- 문병호(우) : 유족범위 확대, 생존자 위로금 지원, 법제명 수정 필요 주장

<답변> (박세환 의원/소위 대표자격) 유족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감안 필요

다. 본회의 심의('07.7.3)

가) 개요

○ 행자위 대안과 대안에 대한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외 46인의수정안이 원안과 동시 상정되어 수정안이 의결

※ 표결결과 : 출석의원 187인 중 찬성 114, 기권 53 반대 20

나) 수정안 주요내용

○ 법 제명 수정

-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을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으로 수정

○ 위로금 지급대상에 생환자 중 생존자 추가(1인당 5백만 원)

다) 주요 경위

○ 장복심의원 수정안은 당초 7.2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나, 열린우리당 요청으로 심의가 보류

○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이 추가되었으나, 수정안 처리에 대해 각 당은 당론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하기로 결정

5.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

가. 주요 경위

○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이 7.20일 정부(법제처)로 이송

○ 당초 정부제출 법안 주관부처인 행자부는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7.26 법제처에 재의요구안 심사 요청

○ 법제처 심사를 거쳐 7.3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 8.1일 대통령 재가, 8.2일 국회 제출

나. 주요 재의요구 사유

○ 재정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정부와 사전협의 부족

○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생환자 중 사망자’와의 형평성, 다른 유사사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우려

○ 법 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로 수정하는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등 다른 법률과 동일한 시기를 규율하면서도 법제명은 달리하게 되어 법체계상 혼동 발생 우려

※ 재의요구안 전문 : [부록 7]

제 4 장 공탁금 명부확보를 위한 활동

1. 활동 개요
2.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
3. 제 1차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4. 제 2차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제 4장 공탁금 명부확보를 위한 활동

1. 활동 개요

가. '05.8.26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대책 지원 방향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에서는 '05.8.26일 '52년에서 '65년까지의 14년간에 걸친 한일외교기록 3만 5,354쪽을 전면 공개하면서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 지원 방향에서 미불임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45년 8.15일 일제 패망 후, 일본 기업들은 연합군사령부(GHQ)로부터 「미불임금과 명단」을 일본 내 각 지역공탁소에 맡겨 두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정부는 이 공탁금 명부를 확보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나. '05.10.27 동경 한일외무장관 현안회의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안 중 「일제강점기 피해자 증빙자료 인도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선인 노무자 후생연금 명부와 미불 공탁금 관련 명부를 일본정부가 건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 마치무라 노부타가(町村 信孝) 외상은 「후생연금 명부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문제로 곤란함이 있다. 법적 제약 속에서도 현실에서 무엇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06.3.8 제 4차 민 · 관공동위원회의 정부지원대책 방안

'06.3.8 개최된 제 4차 민·관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양삼승 민간위원장)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대책 방안의 하나로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 미불임금 등 미수금을 구제하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1) 구제대상 미수금

○ 강제동원 당시 일본정부·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었던 임금, 여러 가지 수당, 부조료 등 미수금에 대해 구제

* 후생연금은 현재 일본정부에서 탈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제외

2) 미수금 구제 기준

○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본과 '65년 청구권협정이 없었더라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직접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준('95~'99년 일본이 대만 징용자에게 보상한 1엔당 120엔)을 지급

- 일본화폐 1엔당 1,250원으로 환산·지급하되, 100엔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100엔으로 간주

3) 미수금 지급대상 유족 범위

○ 미수금 구제 조치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상이 아니고, 인도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지원대상 유족 범위를 위로금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

※ 이러한 우리정부의 일제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06.1.13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일본에 있는 임금지급관련 자료 및 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방침이며, 일본정부는 협력을 마다해서는 안된다'는 사설을 게재함

라. 지원법에 미수금 지원금 지급 조항 신설

1) 지원법(제2조, 제5조 제1항)

○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과 함께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 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을 당

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지급한다.

* '06. 11월에 마련된 국회 행자위 대안

2) 지원법(제5조 제2항)

○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마. 미수금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한일대책기획단에서는 미수금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우선 한국정부(정부기록원)에 보관되고 있는 국내 미수금공탁금 명부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1) 국가기록원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조사

○ '일제 강제연행자명부'는 일본정부로부터 '71년 노태우대통령 방일을 전후하여 「피징용사망자연명부」를 처음으로 인수받은 것부터 김영삼 대통령 방일 시까지 5차에 걸쳐 외무부를 통하여 전달 받은 것들이다.

○ 명부 13종 544권과 마이크로필름 26롤 480,693명에 대한 기록자료 들로 다음과 같다.

<명부별 등재인원수>

명부명	수량	등재인원수(명)	비고
13종 계	544권, M/F 26롤	480,693(100%)	
유수명부	114권	160,148(33.3%)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	15권	69,766(14.5%)	
임시군인군속계	103권	46,164(9.6%)	
소위조선인징용자에관한명부	6권	27,949(5.8%)	
피징용사망자연명부	10권	21,692(4.5%)	
병적전시명부	67권	20,222(4.2%)	
일제하피징용자명부	3권	14,410(3.0%)	

군속선원명표	26권	7,046(1.5%)	
부로명표	156권	6,942(1.4%)	
군인・군속명부	1권	2,623(0.5%)	
공원명표	13권	2,102(0.4%)	
병상일지	30권	851(0.2%)	
해군군속자명부	M/F 26롤	100,778(21.0%)	

그러나 위 13종 544권, M/F 26롤의 480,693명의 자료를 세부분석한 결과 군인・군무원 89,588명을 포함하여 약 173,000명이 공탁자로 확인되고, 표본자료 분석 결과 그 중 약 7%선만이 공탁금액 기록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공탁금 명부자료 확인이 선결되어야 미수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2) 진상규명위 공탁금 신청

'06.6.30일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약 19만 건의 신청접수자 중 약 2만여 건을 판정하였는데, 공탁금피해자 신청은 약 6천 명으로 파악되었다.

* 피해자단체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에 공탁금 미지급금 확인 증명을 약 1,500명이 받아 놓고 있음

3) 일본정부의 공탁금 관리

'56.8.30 후생성 작성 「조선출신 구 육・해군 군인・군속 급여건 공탁」에 의하면 조선출신 육해군 군인・군무원 89,588명 91,316,115엔이 공탁되어 있고,

연합군사령부(GHQ) 명령 「국외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채무면제를 위한 공탁 특례에 관한 정령」 제22호에 의하여 SCAP 자료 근거에 의하면 「조선인 노무자 미지불임금 공탁」이 약 30만 명 총액 215,147,000엔(공탁금액 167,791,400엔, 공탁유가증권 47,355,600엔)이 공탁 되어 있다. 동 공탁금액에 대하여는 일본은행에 보관되어져 있다고 '04.12월 고이즈미 총리가 국회에 답변한 바 있다.

4) 한일대책기획단의 공탁금 명부 확보를 위한 활동

이에 따른 대책을 위하여 공탁금 명부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관계부처 실무

대책회의를 3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제 1차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에 앞서 '미수금(공탁금) 지원대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

가. 제 1차 실무대책회의

1) 일시 및 장소 : '06.6.12, 15:00~18:00, 한일대책기획단 회의실

2) 참석자 : 대책기획단 손영재 과장, 진병철 사무관,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임경훈 2등 서기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안승대 서기관, 국가기록원 제도혁신팀 이진영 학예연구관, 진상규명위 조사총괄과 송준호 사무관, 이세일 연구관

3) 회의 주요내용

가) 일본과의 공탁금 협상 시 신중한 접근 중요성 공감

○ 미수금 구제를 위한 공탁금과 후생연금 명부 확보에 대해서 일본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우리측의 제안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정부도 공탁금 명부 확보협상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 있음

- 현재 일본에 공탁금 명부 샘플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전달하여 확인을 요청 중이며,
- 이의 추진경과를 주시하면서 6.29~30일 제 4차 한·일(유골협상)협의회 시에 공탁금 명부 확보협상을 추진

나) 미수금 구제 공탁금 명부 협상 추진

○ 6.15~16일 이틀간 일본에서 개최예정인 한·일(유골봉환) 실무자 협의에 손영재 과장이 참석하여 공탁금 명부 확보협상을 위한 사전 탐색 등이 필요

※ 외교부는 현재 실무협상대표단 등 이미 훈령을 시달한 바 있어 추가 참관자로 참석

○ 6.29~30일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일 협의회(유골봉환) 시 대책기획단 부단장이 회의에 참석, 미수금 구제 공탁금 명부 확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등과 사전조율 추진토록 함

다) 공탁금 명부 확보를 위한 자료 D/B방안 강구

○ '06.6.12 현재 진상규명위 피해 확정 및 심의조서가 완성된 총 17,000여 건 중에서 공탁금 사항이 있는 자료 5,200건은 공탁금명부 확인자료로 활용가능

- 국가기록원 보유 일제강제동원명부 중 공탁금 관련 사항이 기록된 14만 명에 달하는 명단과 세부사항에 대한 자세한 D/B구축은 일본측의 명부확인 작업 결과를 보고, 실효성을 검토하여 추진함이 필요

라) 공탁금 명부 협상 추진 시 대책기획단·외교부·진상규명위의 공조협조 필요

○ 향후 일본과의 공탁금 명부, 후생연금명부 확보 등 외교협상은 진상규명위와 대책기획단 양 기관에서 필요한 공통 업무이기 때문에 상기 협상업무는 두 기관 간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

○ 향후 제 4차 한·일 협의회 회의 관련 공식 의제선정, 대표단구성, 훈령 등은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대책기획단과 진상규명위는 실무협상내용 중심으로 추진

- 미수금 관련 공탁금 명부 확보협상, 후생연금명부 확보협상 등

나. 제 2차 실무대책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06.7.27, 15:00~18:00 대책기획단 회의실

○ 참석자 : 대책기획단 손영재 과장, 진병철 사무관, 진상규명위 조사지원팀장 이세일, 지원심의위 준비기획단 정광근 사무관, 외교통상부 동북아 1과 임경훈 2등 서기관, 국가기록원 이영숙 서비스혁신팀장

2) 회의 주요내용

가)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공식화 추진

○ 미수금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책기획단이 "공탁금 명부 확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9월 차기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대표단 구성은 "한일 유골조사협의회"와 별도로 추진토록 하며,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과 협의조치 예정

※ 대표단 구성(안):대책기획단(부단장 수석대표), 외교부(주일대사관), 행정자치부(준비기획단, 국가기록원), 진상규명위등

○ 9월 회의 시에도 일본정부의 공탁금 명부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입장이 지속된다면 장관급 또는 총리급 회담 추진을 건의

※ 외교부는 '06.7.27일 개최된 "ARF 한일외무장관 회담" 시 '공탁금 명부 정보제공"을 의제화하여 일본에 요청함

나) 9월 동경회의 준비 및 대응방안

<기 제출된 공탁금 명부 자료 확인 요청>

○ '06.5.31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기 제출된 공탁금 명부 샘플자료에 대한 확인을 일본측에 촉구토록 외교부에 요청

<공탁금 명부 확인자 명단 작성 작업 검토>

○ 차기 회의 시 "공탁금액 명단"작업 결과를 일본측에 제시

- 국가기록원 공탁금 관련 11만 명 자료를 D/B 화 작업 실시

※ 공탁금명단 D/B 자료 프로그램 구축(소요예산 200만 원 소요)

○ 동 프로그램 D/B 자료를 활용하여 「공탁금 확인요청서」명단리스트 작업 용역 추진(별도 계획수립 추진)

- 진상규명위 공탁금 리스트작성은 진상규명위에서 작업(약 5,900명)

○ 향후, 일제강제징용자명부의 D/B 자료를 공유

- 진상규명위 구축 "강제징용자명단 D/B자료" 등을 향후 지원심의위원회 미수 공탁금 확인자료로 업무에 활용

<피해자 개인의 공탁금액 확인요청 협력작업 추진>

○ 일본이 공탁금 명부 제공 및 확인을 거절할 경우 대비하여 추진

- 미수금 피해자 개인이 일본측에 공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 행정서비스 체계구축
- 외교부는 공탁금액 신청서식, 일본정부(후생성 및 법무성) 접수처 주소, 신청절차 등 일련의 확인절차 파악 후 통보

<공탁금 명부 회의 대비 대응자료 준비>

○ '06.9월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시 대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보·수집하여 동 회의의 내실화 추진
  - 예시 자료 : 일본 오오사카 공탁소에 보관된 "한국인 노무자에 대한 공탁금액 리스트"를 증거자료로 제시(조선징용인 분리 작성 자료)
  - 95년 대만인 군인, 군속의 미불임금 보상 근거 자료로 활용된 '51-'61년 "미불급료처리작업" 명부 파악 시에 작성된 한국인 군인, 군속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국내 홍보>

○ 9월 차기 동경 개최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참석시에는 사전에 국내외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미수금 명부회의 대국민 홍보

<기타 해외 공탁금 자료 수집 강구>

○ 해외 보관 자료처(미 국립 기록 관리청, 일본 국립공무서관, 유엔도서관)의 미수금(공탁금) 관련 자료 발굴 및 활용방안 강구

다. 제 3차 실무대책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07.2.7, 16:00~18:00. 대책기획단 회의실

○ 참석자 : 대책기획단 손영재 과장, 진병철 사무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지원준비기획단장 여중엽 과장, 진상규명위 조사1과 이세일 팀장, 국가기록원 이영숙 홍보서비스팀장, 동북아역사재단 김준용 제1연구실 팀장
  * 외교부 동북아1과 임경훈 서기관은 사할린 출장으로 불참

○ 회의 안건
  - 일본요구 공탁금 확인창구 일원화에 대한 정부입방 검토

- 제 2차 한일공탁금회의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 추진사항 점검 및 기타 관련 사항 준비대응 등

2) 공탁금확인 창구일원화 검토 의견

○ 공탁금 확인요청 창구일원화는 한일정부간 공탁금액 확인채널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 가능

-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를 통해 일본의 전향적인 공탁금 확인협조가 가능하고, 또한 한일정부간 공탁금확인채널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정부의 공탁금확인 창구일원화 추진 가능

○ 정부지원법이 국회통과 되고, 미수금 지원조직이 구성된 이후에야 정부의 공탁금 확인창구일원화 추진이 가능

- 현재 진행 중인 한일간 공탁금확인작업은 정부지원법에 근거한 미수금 지원의 실효성을 위한 사전적 작업이며,

- 공탁금확인 창구일원화를 추진한다면,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에서 요구하는 확인작업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없으며,

- 현 정부지원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에게 공탁금확인 창구 일원화 추진은 시기상조

○ 향후 피해자단체를 대상으로 공탁금 확인창구 일원화 계획에 대한 행정지도 추진은 가능

- 정부의 공탁금확인창구일원화 계획을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에게 홍보하고,
- 개인적인 공탁금 확인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행정지도 추진

3) 2차 한일공탁금회의 대비, 부처별 추진사항

가) 일본측 요구 공탁금 확인명부 보완작성 : 2월까지

○ 유수명부상 일본이름만 기재할 수 있는 2,000명 공탁금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한글이름이 없이도 공탁금액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본측에 확인 (외교통상부)

○ 일본측 확인결과에 따라 2,000명 명부에 대한 본적지를 한자로 변환하는 작업 실시 (대책기획단, 준비기획단, 국가기록원)

- 한자변환을 위해 한자 · 일어를 해독 가능한 일용직 활용 필요
- 대책기획단에서는 일용직 1명(1개월)을 고용하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작업을 위한 지도 협조

○ 향후, 공탁금 관련자 총17만 명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공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국내미수금 피해자 추적 가능성여부와 미수금지급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공탁금 D/B화 리스트작업 결정 검토 (대책기획단, 준비기획단, 국가기록원)

○ 피해판정 확인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군인 · 군속 1,000명의 공탁금 확인명부 보완작성 (진상규명위원회)
- 보완작업을 위한 일용인력 예산(1명,1개월)을 대책기획단에서 지원하고, 작업은 진상규명위에서 추진

○ 향후, 1,000명 이외의 나머지 피해판정 확인자를 대상으로 공탁금 확인명부 리스트 작성계획 추진 (진상규명위)

나) 노무자 공탁금 확인명부 작성 : 2월까지

○ 진상규명위 노무자 피해판정 확정자중 공탁금 관련자를 대상으로 공탁금액 확인명부 작성 (진상규명위)
- 진상규명위 조사1과(노무자 담당)에서 작성협조

○ 일제하 한국인노무자를 채용한 일본기업리스트를 작성하여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노무자의 공탁금액 확인여부 타진(대책기획단, 국가기록원, 외교통상부)

다) 동북아 역사재단과의 업무협조

○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추진하는 한일 관련 역사사업, 현장조사 사업 등을 수행 시에 대책기획단과 업무공조 유지

○ 대책기획단의 백서 발간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소속의 일제강점기 관련 전문가 활용 협조

라. 미수금(공탁금)지원대책 실무 워크숍 개최

1) 개요

가) 워크숍 목적

○ '06년 정기 국회에 제출(9.25)한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대비한 미수금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대책을 마련

○ 미수금(공탁금) 명부 확보를 위한 일본과의 외교적 노력 등 필요성 대두

나) 회의 개요

○ 일시 : '06.10.4, 14:00~17:30

○ 장소 : 국무조정실 의료산업기획단 회의실 (이마빌딩 604호)

○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회의 참석 대표단 10명

다) 주요 내용

○ 국내 미수금(공탁금)명부 현황에 대한 검토 분석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 미수금(공탁금) 지원 추진대책 보고 (한일대책기획단 협력지원과장)

○ 국내 공탁금 명부 자료 관리실태 및 DB작업계획 등 (국가기록원 서울사무소장)

○ 진상규명위 공탁금 명부 조사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진상규명위 공탁금 담당자)

○ 지원법 제정 및 미수금(공탁금)지원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준비기획단장)

3. 제 1차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가. 개요

○ 일시 : '06.11.8~11.10

○ 장소 : 일본 동경 미타(三田)정부공용회의소 국제회의실

○ 양국 대표단

- 한국측 9명 참석 :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대책기획단 손영재 과장 수석대표 대리(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장동환 수석대표 대리로 참석), 동 대책기획단 진병철 사무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 장만희 과장, 외교부 동북아1과 사무관 임경훈, 국가기록원 서울사무소 구익서 소장, 주일한국대사관 신상목 서기관 등
- 일본측 14명 참석 : 일본 외무성 아세아대양주국 참사관 우메다 쿠니오(梅田 邦夫) 수석대표,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업무과조사자료실장 가기하라 요지(柿原 洋二), 노동기준국 야스가와 히로히사(安川 裕久), 법무성 민사국상사과장 오가와 히데키(小川 秀樹) 등

나. 회의 성과

○ 첫째, 양국간 공탁금 명부 회의의 정례 채널화 합의

○ 둘째, 일본측이 전향적·적극적인 자세로 본 회의에 임함

- 지원법의 국회통과여부와 관련, 다음 동경회의 시기가 정해질 전망

○ 셋째, 회의 실질 내용인 3,000명 공탁금액 확인 요청에 대해

- 일본측은 구체적인 확인양식을 정해서 건네주기로 했고, 이에 따라 양국은 보완 작업키로 함

○ 넷째,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 일본측과 다음의 핵심사항을 이끌어 냄
  - 국의 공탁금 명부 금액 확인 요청에 대해 일본측은 제반 제약이 있어도 어떠한 협력이 가능한지 성의있게 검토하고자 함
  - 우리측의 구 일본군 군인·군속 공탁금 확인 3,000명분의 자료 전달에 대해 양국은 충실한 작업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함
  - 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건에 관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다. 공탁금 명부회의 준비

1) 국내 공탁금 자료 D/B 구축

○ 행자부 정부기록원, 진상규명위와 협조하여 추진

- 국가기록원 미불임금 등 공탁금 자료(약 17만 명)와 진상규명위 미불임금 등 공탁금 접수자료(약 6,000명)를 D/B화 작업 추진

2) 일본과 공탁금 협상안

○ 제 1단계 : 미수금(공탁금)명부 자료 확보를 요구

- 일본법무성, 후생노동성 등 공탁금 명부자료의 인도를 위한 한일정부간 외교 협상 지속추진

○ 제 2단계 : 개인별 공탁금 확인 증명 요청

- 「공탁금 확인 요청서」 작성 제출, 공탁사실 확인증명 요청

  ·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공탁번호, 동원지역, 사업장 등

- 또는 개인별로 일본측에 확인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서식 및 신청 절차 등 제공)

○ 제 3단계 : 일본의 협조 불가 시, 지원신청자 대상 「지원위원회(가칭)」 지급결정

- 정부보관 공탁금 명부 자료, 개인보관 일본 공탁금 증명원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판단

라. '06.9월 「공탁금 명부 회의」 개최 준비

○ '06.9월 동경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시, "한일 유골조사협의회"와는 별도의 정부대표단 구성 추진

- 대표단 구성(안) : 10명 내외로 구성

  · 대책기획단(수석대표), 외교부(주일대사관), 행정자치부(준비기획단, 국가기록원), 진상규명위 등

○ 향후 공탁금 명부 회의의 정례화 필요

※ 한일외무장관 회의에 지속적으로 의제화하여 자료확보 촉구

○ 공탁금 확인 요청 : 확인리스트 작성 제시
- 9월 회의 대비, "공탁금 확인 요청서" 자료 약 3,000명을 사전에 작성

마. '06.9월 동경「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연기

○ '06.9.29~9.30 일본 외무성 회의 개최 통보 및 내부사정으로 연기
○ '06.10월 일본 외무성 2차 회의 개최 통보 및 일본은 '06.10.9 북한핵실험 관련 업무폭주로 2차 회의 연기 요청

바.『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개최

1)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주요 내용

가) 지원법 주요내용 소개

○ '06.11.10일「한일 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시에, 11.9 상견례 및 회의의견 조율 시 일본 우메다 수석대표(梅田邦夫 외무성 참사관)가 미리 요청한 바 있는
- 정부의「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정부입법 추진경과와 금후 전망을 설명
- 지원법에 따른 미수금(공탁금)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자료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일본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

○ 일본측은 지원법의 시행기간, 예상소요예산 등 법안관련 구체사항을 질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일본측으로서도 가능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힘

나) 공탁금 자료(군인 · 군속)

○ 군인 · 군속의 공탁금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탁금액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우리측의 질문에 대해
- 후생노동성측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면 공탁금액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힘

- 다만 관련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관계로 한달에 평균 60-70건 정도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함
- 우리측은 일제강제징용자명부상 공탁금 관련 기록자 17만여 명에 대해서도, 향후 공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한일정부간 공탁금액 확인채널」구축을 제의한 바,
- 일본측은 우선 3,000명에 대해 확인여부를 체크한 후, 다음 회의 시 검토결과 및 향후 협조체제 방안을 협의토록 제안
- 또한 일본측은 우리의 공탁금 관련자 17만 명에 대한 공탁금액 확인은 실제 강제동원 피해신청자와 연계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확인작업이 될 것임을 언급

○ 우리측은 사전에 준비한 「군인・군속 3,000명 공탁금액 확인요청」 명부자료(3개 책자와 1개 CD)를 전달하고 공탁금액 확인을 요청한 바,

- 일본측 후생노동성은 본적지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등 현재의 상태로는 본격적인 확인작업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측의 선 검토 후, 한국측에 보완요청을 하기로 함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은 군인, 군속 공탁금액 명부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공탁금액 확인 사항도 처리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은 한달에 60건~70건의 공탁금액 확인을 처리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우리측은 확인요청자료는 공탁번호, 동원부대명 등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확인이 가능할 것임을 설명, 향후 공탁금액 확인 소요시간 등 구체검토사항을 추후 알려주기를 희망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다음 회의 시에 일본측이 공탁금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신청양식 등을 정해 주면, 그에 준해 명부를 보완하여 제공하기로 함

○ 한편 일본측이 현재 한국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 약 2,000건의 공탁금액 확인요청이 들어와 있으며 그 중에는 지원금을 노리고 불순한 목적에 자료를 사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를 밝힌 것에 대해

- 우리측은 일본정부에 대한 공탁금액 확인 요청의 경우 가능한 한 한국정부로 창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힘

- 「한일정부간 공탁금확인 채널」은 외교경로를 통해서 처리하고 우리측은 대책기획단이, 일본측은 후생노동성 또는 법무성 담당 여부를 내부조정하기로 함

다) 공탁금 자료(노무자)

○ 공탁금액 확인요청 자료 작성이 어려운 노무자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성에 공탁금액 자료협조 방안을 타진

- 노무자 공탁금 확인을 위한 기관으로 미쓰비시 등 관계기업 612개사, 지방정부, 후생노동성, 각 지역공탁소중 어느 채널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 요구 및 확인 채널 일원화 필요
- 한국인 노무자 공탁금 기록이 집단으로 되어있는 오사카 공탁소의 "한국인 노무자 공탁금 명부 샘플리스트"증거자료를 .제시, 일본 법무성측에 노무자 자료 협조 및 공탁금액 확인가능성을 타진
- 일본 법무성 담당자는 상기 한국인 공탁 근거자료를 검토 후에 차기 회의 시에 확인 가능여부를 협의키로 함
- 일본측은 전국 지방법무국(347개 공탁소)에 분산 보관되어 있어 공탁금자료 확인추적이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노무자의 공탁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동원지역, 동원장소, 공탁번호가 있어야 가능함을 언급
- 우리측은 한국인 노무자의 미불임금 공탁기간이 1차('46-47년)와 2차('50-52년)임을 감안, 상기기간 중 공탁 자료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면 공탁자료 확인이 가능함을 언급하면서 일본법무성에 전향적인 자료확인 협조를 요청
- 일본 법무성측은 확인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사항은 차기 회의 시에 협의하기로 함

○ 노무자 공탁금액 확인 가능 여부를 묻는 우리측 질문에 대해,

- 법무성측은 특정인의 공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탁소명,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자 성명 · 주소, 피공탁자 성명 · 주소 등 다섯 가지 항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함

○ 우리측은 한국인 노동자의 미불임금 등에 대한 공탁이 '46~47년도와 '50~51년도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공탁을 행한 관계기업 612

개 사업소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색 대상 시기와 지역을 좁힐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탁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힘

○ 또한 우리측은 한국인 노무자가 대부분 공탁 이전에 한국으로 귀환함으로써 공탁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 일본측이 한국인 피해자에게 공탁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 나아가 한국인 노무자 공탁 문제는 단순히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한일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에서 빚어진 문제인 만큼,
- 다섯 가지 항목의 정보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재차 요청

○ 이에 대해 일본측은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항목이 갖춰지면 공탁금액 확인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밝히고, 한국측의 입장을 이해한 위에 어떠한 협력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임

○ 「한일 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정례화 추진

- 양국대표는「한일 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를 내년 중에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공탁금확인 협조 등과 함께 외교채널을 통해 통보하기로 협의

2) 전반적인 회의분위기 및 합의, 보도문안 작성

가) 전반적인 회의분위기

○ 일본측 대표단의 회의대응 분위기가 고무적임을 감지

- 일본 대표단은 금번회의에 우리측의 관심사항에 대해 상당히 준비하여 답변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측의 요구에 대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감지

나) 합의

○ 양국수석대표(손영재 · 우메다 쿠니오)는『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

- 내년 공탁금 명부 회의는 동경에서 개최하며, 세부 개최일정협의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함

다) 보도문안 작성

○ 양국이 합의한 보도내용기준(Press Guide Line)을 정리하여 양국에서 보도키로 함

- 우리측 보도자료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주일동경특파원에 당일(11.10) 배포

3) 외교적 성과 및 향후 계획

가) 외교적 성과

<공탁금 명부 회의 성과>

○ 첫째, 양국간 공탁금 명부 회의의 정례 채널화 합의

○ 둘째, 일본측이 전향적·적극적인 자세로 본 회의에 임함

- 지원법의 국회통과여부와 관련, 다음 동경회의 시기가 정해질 전망

○ 셋째, 회의 실질 내용인 3,000명 공탁금액 확인 요청에 대해

- 일본측은 구체적인 확인양식을 정해서 건네주기로 했고, 이에 따라 양국은 보완 작업키로 함

○ 넷째,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 일본측과 다음의 핵심사항을 이끌어 냄

  · 한국의 공탁금 명부 금액 확인 요청에 대해 일본측은 제반 제약이 있어도 어떠한 협력이 가능한지 성의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 우리측의 구 일본군 군인·군속 공탁금 확인 3,000명 분의 자료 전달에 대해 양국은 충실한 작업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건에 관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나) 향후 계획

○ 금번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를 계기로 우리측은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발굴하고 공탁금액 확인자료 DB를 정리하여

- 적극적으로 향후 공탁금 명부 회의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협조 분위기를 이끌어감이 필요

○ 군인·군속 공탁금액 확인요청 관련

- 일본 후생노동성이 3,000명의 군인·군속 공탁금액 확인이 가능함을 인정했지만, 순조롭고, 신속한 확인추진은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
- 향후 실질적인 공탁금액 확인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자료를 대응함이 필요

○ 일본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17만여 명의 공탁금액 확인이 실제 미수금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금 시행관련 우리정부의 「미수금구제 지급방침」 마련이 필요

○ 양국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7만 명의「공탁금 금액확인 리스트」 D/B작업은 일본의 3,000명 자료 확인 추진상황 여부를 보아가면서 추진 결정이 필요

○ 노무자의 공탁금액 명부확보 추진 관련

- 노무자 공탁금액 확인은 일본 법무성 공탁소 보관 공탁금 명부 자료의 확보만이 유일한 방법임 감안, 구체적인 협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법무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도함이 필요
- 노무자 공탁금 명부 자료는 후생연금 자료와는 달리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법무성의 협조를 통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일본후생성 대표는「일제강제징용보상금 수수료 사기사건 : '05.3」에 따른 민원과 관련, 향후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망해옴에 따라,

- 공탁금 명부 금액 확인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공탁금피해자 대상 순회홍보 교육 필요

사. 동경 법무국 방문 등 주요 내용

1) 동경 법무국 공탁금 명부 서류 실태조사

○ 표제 회의 종료 후 우리측 대표단은 11.10일 14:00~15:30간 동경 법무국을 방문하여 공탁업무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공탁서 보관 실태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

- 동경 법무성 공탁소 관계자는 공탁금 명부 서류보관 상태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고, 우리측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탁금 서류 보관상태를 설명
- 공탁금서류는 국가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동원지역별, 사업장별로 작성되어 전국 347개 공탁소에 분산되어 보관하고 있는바, 한국인노무자 공탁금의 일률적인 파악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

○ '50년을 전후한 시기의 공탁서가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는지를 묻는 우리측 질문에 대해,
- 일본측은 동경법무국 자체가 세 차례에 걸쳐 청사를 이전한 등의 관계로 당시 공탁서의 보관 상황은 일본측으로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함

○ 우리측이 금후 직접 창고에 들어가 공탁서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일본측은 어렵다는 뜻을 밝힘

○ 이에 대해 우리측이 일본측 관계자가 우리측을 대신하여 당시 공탁서의 현재 보관 상태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 일본측은 우리측이 보관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정확한 연도 등을 정리하여 주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공탁금서류가 체계적으로 D/B화 되어있지 않아, 한국인 피해자 공탁금서류 확인 추적에는 시간상, 인력상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을 피력

○ 우리측은 한국인 노무자 공탁금 명부 견본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한 바, 법무성 내부검토를 통해서 차기 회의 시에 알려주기로 함

아.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정보 파악

○ 일본 국립공문서관은 11.10일 15:00~16:00에 방문하였음
- 일본의 중앙행정기관 기록보존소로서 '71년 총리부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관계법령에 의거 2001년부터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 으로 운영
  * 일본 각성청에서는 30년이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이관 여부를 검토 후, 국립공문서관에 이관하고 있는 있음

○ 국립공문서관 보관 자료 중, 일제강점하 강제징용자명부, 미점령군사령부 (GHQ, SCAP) 자료문서 등의 소장여부를 파악하였는 바,

- 강제징용자 명부 자료는 후생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미군정 시 미점령군사령부(GHQ, SCAP) 문서는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에서 미국에 있는 원본을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된 바, 향후 일본국회도서관과 접촉 상기문서 자료입수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립공문서관 中島 계장, 大賀 담당, 법무성, 외무성 관계관 배석

4. 제 2차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가. 개요

○ 일시 : '07.10.9~10.11

○ 장소 : 일본 동경 외무성 회의실

○ 양국 대표단

- 한국측 8명 참석 :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대책기획단 부단장 장동환 수석대표, 동 대책기획단 손영재 협력지원과장, 동 대책기획단 김양수 사무관, 외교통상부 일본과 이호식 서기관, 주일한국대사관 상승만 서기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김형국 공개관리팀장, 일제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준비기획단 여중협 과장 등
- 일본측 13명 참석 : 일본 외무성 아세아대양주국 참사관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동 아세아대양주국 과장 야마다 시게오(山田 重夫),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업무과조사자료실장 가기하라 요지(柿原 洋二), 법무성 민사국상사과장 아이사와 테쯔 등

나. 회의 성과

○ 첫째,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 11만 명 공탁금 명부자료 한국에 인도 합의
○ 둘째, 노무자 700명 공탁금 금액확인 명부(3부 및 디스켓) 전달 등 노무자 공탁금 문제 협의

다. 「제 2차 공탁금 명부 회의」 개최 준비

○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등 「조선인노동자명부」 자료 중 미불임금 등 공탁금 관련 자료 분석작업 추진
○ 사업내용 : '07.10월 개최 예정인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준비작업 일환으로 추진
-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선인노동자명부(21권, 약 10만 명) 중 공탁금 관련자료 분석작업 추진
* 조선인 노동자 표본에 대한 명부 작성

< 조선인 노동자 명부 작성양식 >

本名	日本名	本籍地	生年月日	所屬(連行地)	事業場名	供託番號	備考

* 노무자 10만여 명 중 공탁금액 기록 분석작업 및 기록 정리작업

○ 「노무자 공탁금 금액확인 명부 자료(700명)」 작성 완료
-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시 「노무자 공탁금 금액확인 명부 자료(700명)」를 일본측에 전달하여 금액 확인을 요청할 계획

라.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개최

1)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주요 내용
가) 군인·군속 공탁금 명부
○ 지원법 제정관련 최근 동향 설명

○ '07.4월 한일대책기획단에서 명부를 장성하여 일본측에 확인을 요청한 국인·군속 3,000명에 대한 공탁금액 확인결과 질의
- 일본측은 4월 명부자료 접수 후 현재까지 300명만을 확인했다며, 확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답변

○ 일본측은 다음 사항을 약속해줄 경우 군인·군속 공탁금 명부 전체(11만 명, 9100만 엔) 사본의 전달 가능 의사를 표명
- 동 명부를 공탁금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
- 본인·유족 등을 제외한 제 3자에게 정보 불제공
- 인도 후, 한국정부 책임 하에 공탁금액 확인 추진 채널화

○ 추후 양국 외교채널간 구상서(Note Verbal)형식으로 매듭
- 일본측은 구상서 접수 후 DVD 등과 같은 전자매체로 제공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우리측은 일본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구상서에 관해서는 귀국 후 정부 내부 검토를 통해 추후 우리 입장을 전달키로 함

나) 노무자 공탁금 확인

○ 우리측은 노무자 공탁금 확인을 위한 일본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측에 노무자 700명 확인자료 명단(책자 및 디스켓) 전달
- 군인·군속의 확인자료와 같이 보완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측에 알려줄 것을 당부
- 일본측은 노무자 명부는 국적구분이 없고, 법무성 산하 전국 각 공탁소(347개)에서 공탁서 사본만을 보유하고 있어 확인이 어려움을 설명
  * 우리측 확인 요청 시 공탁번호 명시, 번호가 없을 경우 근무연도·근무처·공탁소 등을 적시해야 조사가 가능함과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설명

다) 실무회의 개최 등

○ 우리측은 지원법 시행 이전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일본측도 향후 외교경로를 통해 양국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당부

2) 전반적인 회의분위기 및 보도문안 작성

가) 전반적인 회의분위기

○ 일본측 대표단의 회의대응 분위기가 자발적

- 일본 대표단은 금번회의에 대해 상당히 준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측의 요구에 대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임

나) 보도문안 작성

○ 동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한일 양국은 공탁금 명부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키로 함

- 우리측 보도자료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주일특파원에 당일(10.10) 배포

* 일본 NHK, 한국 연합뉴스, YTN 등 동경발 보도

3) 향후 계획

○ 정부 내의 검토회의를 통해 우리입장을 정리, 전달

마. 국회도서관 방문

1) 일본 국회 도서관 관계관 면담

○ SCAP · GHQ 문서 보관 관련

- 한국인 징용 징병자와 노무자의 공탁금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바. 군인·군속 공탁금 명부 인수 관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07.10.22 15:00

○ 장소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실 (정부중앙청사 1003호)

○ 참석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관, 기획예산처 행 · 재정기획단장, 외교통상부 아주국장,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국장, 국가기록원장, 청와대 시민사회비서실 행정관

2) 제 2차 한일 공탁금 명부 회의 결과 주요 내용 설명

○ 군인 · 군속 11만 명 공탁금 명부 자료의 한국에 인도 합의

○ 노무자 공탁금 금액 확인 700명 자료 명부 전달, 협조 당부

- 일측은 공탁소별 확인조사 등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임을 설명

3) 공탁금 명부 인도 구상 대책 논의

○ 정부 내 관계기관 의견 조율, 우리측 입장을 정리하고,

○ 추후 한일 외교채널간 구상서(Note Verbal) 형식으로 매듭

《 주요 쟁점 》

① 인수 시기, 인수 방법, 공탁금 명부 보존 방법, 기관

② 향후, 우리정부 창구 단일화 기관 및 확인 업무 추진기관

③ 공탁금 명부 인수 대표단 구성 문제 등

제 5 장 주요 민원 내용

제 5장 주요 민원 내용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발족 이후 일제 강제동원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었는 바, 그간의 주요 민원내용을 민원의 제기 주체에 따라, 크게 단체민원과 개인민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단체 민원

현재, 활동 중인 일제강제동원피해단체는 19개 단체로 파악되며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정부에서 마련 중인 일제강제동원희생자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종 의견 및 민원을 제시하였다. 우선 단체별 요청내용 등을 살펴보고 주요 단체현황을 정리하였다.

□ (사)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및 (사)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 정부는 외세에 유린당한 민족을 대신한 피해희생자들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생존자등 모두 포함하여 연금정책 등으로 국가가 희생자들 상처를 치유 및 보호에 노력해야함
- 법률안 명칭 중 "일제강점하"라는 용어는 일본의 침략근성을 부추기고 우리민족의 역사관정립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 명칭을 삭제 요망
- 생존하고 있는 희생자도 현지사망자나 행방불명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요청
- 귀환 후 사망자의 유가족도 지원대상을 인정 요청
- 지원대상범위를 직계손자, 손녀와 조카도 지정요청
- 미불임금의 용어를 "환급금"으로 수정하고 환율변동과 물가상승률을 정확하게 적용요청

○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의 유족회 지원요청

○ 진상규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일본 현지 추도행사를 유족회 주관으로 추진 요망

□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 피해자들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단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친일파 재산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주장에 입각하여 환수받은 친일파 재산을 피해자를 위한 평화재단의 설립기금으로 출연요청

□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 여성으로서 어린시절 끌려간 특별한 희생을 감안하여 위안부에 준하는 지원대책 수립 요청

○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일제강제동원 생존자로 간주하여 의료비만을 지원하는 정부대책은 부당함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대책과 별도로 지원 요구

-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지원방안」 포함 요청

- 지원 입법의 주요 내용 중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문제를 별도로 한 지원책 요청

·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지원(월 50만원 지원)

· 미불임금 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미수금에 대한 구제 요구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 정부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유족범위를 민법상의 상속범위로 확대할 필요

- 생존자에 대해 위로금 대상에 포함(특별한 희생에 대한 위로금)

-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지원법에 재단설립조항을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기업,

일본정부와 기업도 기금 마련에 동참 요청

- 추진기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위원회와 단일기구로 운영함이 타당하고, 기구의 위상을 상향 조정할 필요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 보상대책협의회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 위로금 지원대신 보상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2억 원 이상 보상요구
- 미불임금에 대한 환산배율확대 요청(140,000배)
- 유족의견을 수렴하여 유해봉환 및 현지위령 실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단체 현황(19개)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서울 동대문구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02-957-8817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광주 남구 진월동 410-4	062-672-5906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강원 춘천 소양로3가 77-1	033-253-1001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90-1 영월빌딩 5층	02-795-331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 성북구 동소문4가 221	02-926-4917 925-3151
시베리아 삭풍회	인천 계양구 오류동 180 신동아 APT 12-907	032-511-6897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서울 종로 낙원동 150-1 파고다 빌딩 502	02-744-4815
1.20동지회	서울 광진구 구의1동 242-1	02-3437-1297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02-392-5252
나눔의 집	경기 광주 퇴촌면 원당리 65	031-768-0064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구 중구 서문로1가 14	053-254-1431 257-1431
우키시마호폭침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	-	055-943-1269 011-809-2145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충남 천안 쌍용1 1233 광명 APT 106-1901	041-570-2425

중소이산가족회	대구 중구 태평로2가 1번지	053-254-2339
원폭피해자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구 남구 봉덕3동 1005-4	053-477-0515
사할린 고향마을 노인회	-	031-437-6919
중진회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삼천리 APT 101-1205	033-742-7434
일본제철징용자회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0-6 극동 ATP 5-303	02-471-1736
일본제철가마이시재판원고단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도문리 362-2	

2. 개인 민원

개인민원의 경우 강제동원 생존자 본인과 유가족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민원내용이 서로 다르게 파악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구분과 지원일정 문의와 조속한 법제정요구 등 제기된 민원내용을 기준으로 구분 등으로 정형화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가. 생존자 본인 및 유가족 등 각자의 입자에 따른 구분

□ 생존자 본인의 경우

- ○ 생존자는 고령이므로 우선적으로 보상하라
- ○ 강제징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해 억울하다
- ○ 말로만 하는 정부대책 우리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 ○ 진상규명된 피해자부터 단계적으로 지원금 지급
- ○ 보상대책 발표되기 전 사망할 경우 자식에게 지원금 지급요구
- ○ 일시금으로 지급 요망

□ 유족의 경우

- ○ 부친의 도움없이 평생 힘든 생활 유지 (학벌, 경제력 등)
- ○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요구
- ○ 일시금으로 지원금 지급 요구 (지원금액 궁금함)

나. 제기된 민원 내용에 따른 구분

□ 지원금 지급 일정 문의

○ '05.2.1일부터 '05.6.30일 사이에 피해신청한 자로서「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희생자로 결정되었는데 앞으로의 보상일정은 어떻게 되나?

○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1차로「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자 신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왜 또 2차 신고서를 접수하며, 또한 앞으로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

□ 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요구

○ 한일수교 회담 시 피해 보상금 받아와서 일부 (10%)만 보상하고 전부 포항제철 짓고, 경부고속도로 닦는데 유용하였으니 나머지 90%를 하루빨리 『태평양전쟁희생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만들어 보상하라

□ 지원금 액수 문의

○ '75년 정부보상 시 30만 원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당시 30만 원은 개값보다 못한 금액이다. 앞으로의 추가 보상은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지나?

○ 최근 한센인 보상금으로 일본에서 800만 엔(한화 8,00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도 적어도 이정도 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지원대상 문의

○ 일제강제 징병으로 끌려간 작은아버지는 그 당시 총각으로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현재 장조카인 민원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으니 당연히 조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보상금 수령대상은 어디까지 인가?

○ 정부가 가만히 있는 사람 들쑤셔서 피해신고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직계가족만 하겠다고 하면 생업을 마다않고 인우인 보증이다, 제적등본이다 발급받으러 다녔는데 보상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하라고 했느냐?

부 록

-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훈령
-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조직
  구성 및 파견 공무원 명단
- 민 · 관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민 · 관공동위원회 명단
- 민간위원회 회의 발표자료
-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안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 8개 요강 및 한일회담
  주요내용
-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 부상장해자 장해등급 및 상병·위로등급 구분표
- 주요 언론보도

[부록 1]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138호

한·일 수교회담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5년 1월 14일

대통령 노 무 현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수교회담에 관한 문서공개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둔다.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대한민국과 일본국(이하 "한·일"이라 한다.)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 및 외교통상부 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에서 파견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기획단에 총괄기획팀 및 민원대응팀을 둔다.

③ 기획단의 팀장 및 팀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과 관련된 종합대책의 수립
2.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대응방안의 마련
3.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과 관련된 후속대책의 소요예산에 관한 확보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된 사항

제3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 중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기획단의 운영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외교통상부차관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단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관련 조정회의) ① 기획단의 종합대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관련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6인 이내의 관계부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된다.

제5조(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전담심사반) ① 기획단의 문서공개등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한·일 수교회담 문서 등 공개대상 문서 중 외교적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전담심사반을 둔다.
② 반장은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되며, 반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 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① 기획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제9조(여론의 수렴)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직원, 자문 및 전문위원,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근무자명단

소 속	성 명	직위(급)	근 무 기 간	비 고
국무조정실	유 종 상	단장(기획차장)	05. 1.14 ~ 07. 1.25	
	이 병 진		07. 1.26 ~ 07.10.31	
	오 균	부단장(고위공무원)	05. 1.14 ~ 06. 5.14	
	장 동 환		06. 5.11 ~ 07.10.31	
	정 병 규	기획총괄과장(4급)	05. 1.14 ~ 06. 8.24	
	정 연 명		06. 8.25 ~ 06.12. 7	
	김 경 원		06.12. 8 ~ 07. 8.10	
	손 방		07. 8.13 ~ 07.10.31	
행정자치부	장 진 복	민원대응과장(4급)	05. 1.14 ~ 06. 1. 8	
	손 영 재	협력지원과장(4급)	06. 1. 9 ~ 07.10.31	
재정경제부	백 서 룡	행정사무관	05. 1.31 ~ 07. 1.31	
	김 양 수	행정사무관	07. 2.21 ~ 07.10.31	
외교통상부	조 홍 주	행정사무관	05. 1.14 ~ 06. 2.21	
	진 병 철	행정사무관	06. 2.22 ~ 07. 2.14	
	강 필 호	행정사무관	07. 5.28 ~ 07.10.31	
보건복지부	김 덕 곤	행정사무관	05. 1.21 ~ 07. 4.11	
기획예산처	김 충 렬	행정사무관	05. 1.24 ~ 07. 1.23	
국가보훈처	정 원 미	행정사무관	05. 1.17 ~ 07. 1.16	
	강 명 중	행정사무관	07. 1.19 ~ 07.10.31	
경 상 북 도	이 형 석	행정사무관	06. 2. 1 ~ 07. 5.31	
국무조정실	김 춘 화	사무보조원	05. 1.14 ~ 06. 6.29	
국무조정실	남 유 미	사무보조원	06. 6.30 ~ 07.10.31	

[부록 3]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1. 위원회 설치목적 및 기능

□ 설치목적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문제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정부와 사회각계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책 방안 등 논의

□ 기능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및 재원마련방향 등 논의

○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 방안 논의

○ 법률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민간위원 자문

2. 위원 구성(21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이용훈(변호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 정부위원 : 9명

○ 재정경제부 · 외교통상부 · 행정자치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본훈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 간사 :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

□ 민간위원 : 10명

○ 법률 전문가 : 양삼승 (법무법인화우 대표변호사)
　　　　　　　　백충현 (서울대 명예교수)

○ 외교 전문가 :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

○ 사학자 : 유병용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
　　　　　한정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종교계 : 전종훈 (청량리성당 주임신부)

○ 시민단체 :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경제단체 : 조건호 (전경련 고문)

○ 언론계 : 김학순 (경향신문 논설위원 · 미디어칸 대표)

○ 피해자단체 : 이복렬 (호원대학교 교수)

3. 위원회 운영

○ 총리님 주재로 민·관합동회의 형식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공동위원장이 주재

　* 월 1회 정도 개최를 목표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

○ 위원회 운영 지원

- 대책기획단에서 회의안건 준비 등 사무국 기능 수행
- 민간실무전문가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외국사례분석, 사회적 합의도출방안, 지원방안 등 검토

[부록 4]

민 · 관공동위원회 위원 명단

1. 위원장

성 명	현직 및 주요경력	비고
이해찬 (李海瓚)	· 국무총리	
이용훈 (李容勳)	· 대법관, 변호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 2005. 8. 26 사임	민간위원장

2. 민간위원(10명)

성 명	현직 및 주요경력	비고
양삼승 (梁三承)	·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현)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현) ⇒ 2005. 9.12. 민 관공동위원장 위촉	법률전문가
백충현 (白忠鉉)	·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 · 서울대 법학과 명예교수	〃
이재춘 (李在春)	· 주 일본대사관 공사, 차관보(전) · 주 러시아대사(전)	외교관련 전문가
유병용 (兪炳勇)	· 정신문화연구원 교수(현) ·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현)	사학자
한정숙 (韓貞淑)	·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현) · 서울대 부설 러시아연구소 소장(현)	〃
전종훈 (全鍾勳)	· 청량리성당 주임신부(현) · 전국정의구현사제단 총무(현)	종교계
손혁재 (孫赫載)	·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성공회대 연구교수(현)	시민단체
김학순 (金學淳)	· 경향신문 논설위원 겸 미디어칸 대표(현) · 경향신문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언론계
조건호 (趙健鎬)	· 과학기술부 차관(전) ·전경련 고문(현)	경제계
이복렬 (李福烈)	· 호원대학교 교수(현)	피해자단체

3. 정부위원(9명)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부록 5]

민간위원회 회의 자료

Ⅰ. 1차 민간위원회 회의 자료

1. 한일청구권협정의 법리해석

1) 개인청구권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1견해 : 모든 청구권이 해결(일본정부 입장)

○ 협정문언상 청구권에 대한 개념규정 없이 모든 청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 국제법상으로 양국간 청구권의 일괄타결방식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

☞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군위안부 등 불법행위 문제도 포함된 것이 되며, 우리정부가 전후보상과 관련하여 일본 측에 주장할 것이 전혀 없어짐

(2) 제 2견해 : 청구권협정대상에 불법행위는 미포함(개인재산권은 해결)

○ 문언 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판단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일양국간에 특별협정으로 해결하라고 위임한 범위 내에 배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을 상호 인정

- 법적 근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만 토의대상으로 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음

☞ 징용미수금 등 민사적 채권채무문제는 해결된 것이지만, 군위안부·징용과정의 폭력적 행위 등 불법행위는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징용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협정에 미포함

(3) 제 3견해 : 개인재산권도 일괄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님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 2견해와 동일

○ 일본이 한국민의 개인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일본국내법에서 모든 재산권을 일괄 소멸시키지 않았음

* 일본법률 제144호에서 무체재산권은 비소멸, 일본회사가 한국인소유 株券 인정사례, 후생연금탈퇴수당 지급사례 등 개인청구권 비소멸 경우가 있음

☞ 불법행위 책임은 협정대상이 아니므로 일본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가 소멸에 대한 책임을 부담

2) 종합 결론

(1) 판단기준

○ 일본이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사실적 법적 근거에 기초한 논리로써 접근

○ 일본이 진정한 과거청산을 위해서 추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도록 법적인 종결선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 현재 피해자들의 대일소송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피해자 소송은 금전적 배상보다도 국제사회에 이슈화하는 측면이 큼

(2) 각 견해별 비교

○ 제 1견해는 일본에 대해서 군위안부 등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줄 소지가 있고, 협상당시 법적 근거있는 것에 한하여 토의하려고 한 실체적 사실과도 상반되므로 채택 곤란

○ 제 2, 3견해는 일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 두 견해는 개별적 개인재산권의 소멸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일본국내법을 통해 최종 소멸시키도록 한 협정 문언해석 및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여지가 남는다는 점에서 제 3견해가 바람직

○ 제 3견해에 따르면 징용미불임금·조의금 등 개인의 재산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사할린 동포문제, 군위안부, 원폭피해자문제, 징용과정의 폭력행위 등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됨

* 미불임금이 해결된 것으로 할 경우 향후 일본에서 공탁금반환청구소송 등 이 곤란해지는 결과 초래

2. 대외적 대응방안

1) 한일협정에서 미해결된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 군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제도적 불법행위이므로 일본정부의 자발적인 사죄와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UN등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원폭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직접 원폭피해자건강수당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등폐지 추진

○ 사할린 한인동포에 대해서는 정착주택 건립확대 등 영구귀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의 지속적 지원 촉구

○ 징용자 보상 문제는 일본에 대해서 법적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차원에서 과거청산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협의

○ 재일한국인문제는 차별이 철폐되도록 관련사항별로 협의

2) 한일관계의 재정립 문제

○ 한일협정에서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등 한일간 과거청산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독도, 역사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정치지도자 망언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겨남

- 따라서 기존 협정의 법적해석에 따른 대응만으로는 진정한 과거청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큰 틀로서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을 포함한 새로운 한일관계정립 등 정치적 ·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 '65년 한일협정의 기존 틀을 벗어나 인류보편적인 과거청산방식(진상규명→사과→ 배상 · 보상→ 화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일본의 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청산 촉구

- 정부는 외교부, 바른역사기획단 등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문제 등 한일과거사 현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정리 및 장단기 외교적 대응책 강구

- 민간은 일본의 양심세력, 동남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올바른 과거청산 노력을 촉구

○ 다만, 한일협정의 재협상문제는 양국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 필요

- 향후 북일수교시 또는 남북통일 후 한일관계 재정립차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견지

3. 국내대책문제

1) 정부대책의 법적성격(제 3견해를 따를 경우)

○ 개인재산권중 '75년 당시 보상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해서는 개인재산권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정신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에 법적 보상책임이 있음

○ 징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 문제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지 못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에 따른 것이며 위로차 법적 책임에 기한 보상적 성격은 아님

2) 정부대책의 기본방향

(1) 지원형태

□ 법적 책임있는 것만 개별보상하고 나머지는 기념사업으로 추진

○ 미불임금은 개인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상하고, 강제동원 피해 전반에 대해서는 후손에 대한 역사교육 및 추념사업 등 실시

- 법적으로 책임관계가 명확해지고 재원도 최소한으로 소요됨

-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보험·채권 등 다른 재산권에 대해서도 재보상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 및 사실입증이 어려워 수혜자가 적고, 개인당 지원액이 피해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게 될 경우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 예상

* 미불임금은 현재가치로 보면, 1인당 14~303만원에 불과(군인군속 생환자 631엔, 사망자 2,524엔, 징용노무자 106엔)

□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고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유형에 따라 지원

○ 미수금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피해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생존피해자에게만 지원할 것인지, 유족은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

① 45년 이전 사망자 유족

② 45년 이전 사망자 유족 + 부상 후 사망자 유족

③ 45년 이전 사망자 유족 + 45년 이후 사망자 유족

○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강제징용과정에서의 저임금 가혹행위 등 고통을 국가가 위로해 줄 수 있어 피해자 및 국민의 공감대 형성

○ 권리와 보상 간에 대응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고, 막대한 재원 소요 발생

□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고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유형에 따라 지원하되, 미수금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상 실시

○ 위 두 가지 안의 절충적 방안

○ 정부의 원호적 조치로 강제동원피해자를 지원하되, 법적책임 논란이 있는 미수금 문제도 정당하게 해결

○ 지원절차가 복잡해져서 행정비용이 추가되고 지원에 장기간 소요

(2) 도의적 책임에 따른 지원방안

○ 징용으로 받은 고통에 대하여 정부가 일시금으로 위로금만을 지원하는 방안

* 다만 징용 생존자의 경우 6.25 · 월남전 참전자(월 7만원 지급)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

○ 피해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지원금(연금형태)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

- 생계지원금은 그 성격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곤란하고, 성인이 된 후손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 시까지 생계를 지원하지만, 자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지원함

○ 교육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자손들이 이미 취학 연령을 지났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의료지원은 징용과정에서 장애부상을 입은 생존피해자에 한하여 검토 필요

- 다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하였고, 생존자의 경우도 징용부상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

(3) 강제동원자의 범위

○ 학계 등에서는 '44년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 이외에 모집이나 관알선에 의하여 해외 노무동원된 경우도 강제동원피해로 보고 있는데,

- 모집·관알선의 경우에는 돈벌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간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움

○ 징병의 경우 일제체제에 순응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도 일부 있으므로 이들의 구분 문제 존재

Ⅱ. 2차 민간위원회 회의 자료

1. 주요 추진현황

1) 정부대책방향에 대하여 피해자 및 사회각계 여론수렴 실시

○ 민관공동위원회 주관으로 피해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9.9), 피해자대상 공청회(9.21), 사회 각계인사 토론회(10.13) 개최

○ 국회 보건복지위 주관 전문가간담회(10.18),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피해보상소위(10.19) 참석

※ 대책기획단주관으로 전문가간담회, 해외 지원단체 관련자 면담 등도 수차례 가지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

○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역사자문위원회"에서도 타과거사 보상과의 형평성문제 논의

2) 강제동원 해외자료 실태 및 외국의 보상사례 조사(10.16~10.28)

○ 일본 정부기관이 보유한 강제동원자 명부 등 자료실태 파악

○ 대만인, 재일교포 징용자에 대한 일본의 위로금 등 지급사례 조사

○ 독일의 개별 보상경험 및 기타 사회복지 지원내용 조사

2. 피해자 및 사회각계 의견내용

1) 피해자 의견

○ 현재 국회계류중인 피해자생활안정지원법안(유족: 일시금 5천만 원 + 매월생활비 60만 원)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주장이 가장 많음

-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릴레이시위 등 단체행동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대책안도 현재 계류된 지원입법 틀 내에서 조율하라고 주장

○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법적인 피해보상(일시금 2억원+경제유공자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생활안정지원법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단체들도 있음

○ 피해자들은 한일협상과정을 검토한 결과 무상자금에 생환자 보상문제 해결성

격이 포함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에 반발

- 정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길을 차단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생존자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2) 사회각계 의견

○ 전반적으로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결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임

○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하되, 타과거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 특히 생존자문제는 6.25참전용사, 식민시대 다른 피해유형 등을 감안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 금전보상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기념비건립, 역사교육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

○ 타과거사에서 개별 금전보상의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료요양시설, 지원금의 국가관리 등 실효성있는 대책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 청구권자금에 의해 해결된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일본이 책임을 분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 정부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일본에서 받은 돈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

○ 오랜 세월이 지나 개인들이 피해신고 및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정황도 고려하되, 신고가 없더라도 국가가 찾아 주어야 한다는 의견

⇒ 지금까지 사회각계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사회각계 대표로 구성된 민관공동위 민간위원회의에서 사회적 합의 모색

- 11월 중 민간위원 전체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

3.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할 주요 쟁점

1)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추진시기

○ 생존자들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므로 여명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

○ 타과거사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충분한 진상규명 없이 보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고, 경제적 보상주의로 변질되면서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현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확인작업을 하고 있으나, 자료부족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피해신고 20만 건 중 '05.7~10월간 약 1천 건 심사)
- 총 피해자수 등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으면, 투입되어야 할 총 소요예산 추정 및 1인당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움

2) 지원방식 문제
○ 피해의 성격이 전국적이고 특정세대 전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의료등 간접보상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일본에서 받은 무상자금으로 인해 정부의 도덕성 논란이 해결되기 어려움
○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 강제동원자중 일부만이 피해확인이 가능하고, 개별보상 방식으로는 대다수 피해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
○ 사회각계 토론회에서 무료요양시설 건립 및 이와 연계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생애사 채록"등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됨
○ 개별 금전지원방식은 각종 현대사관련 피해보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최근에는 거창사건,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 6.25를 전후한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보상 요구가 높아짐

3) 지원대상 피해유형을 정하는 문제
○ 해외강제동원자수는 약 130만 명(그 중 70%인 91만 명이 남한출신으로 추정)
- 그러나 현재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20% 수준에 불과
○ 한일협상 당시 우리정부는 해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중 생존자, 사망자, 부상자 모두(103만 명)에 대해 보상청구를 하였으며,
- 일본이 생존자 문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뒤 내부 협상전략 조정과정에서 생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함
○ "징용피해보상"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의사록 작성

- 협상이 정치협상에 의해 총액 타결방식으로 종결됨에 따라 양국이 어느 피해 유형까지 보상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는지 명확하지 않음

4) 지원수준

○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 사망자 1인당 30만 원 지급(8,552명, 27억 원)

○ 태평양전쟁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안('04년 발의 국회계류 중)

- 생존자 : 3천만 원 + 월 50만 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월 34만 원 + 의료급여
- 해방 전에 사망한 피해자 유족 : 일시금 5천만 원 + 월60만 원 + 의료급여
- 생환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 일시금 2천만 원

○ 일제강점하 여타피해 지원사례

- 군위안부(115명) : 일시금 4300만 원 + 매월 생활비 70만 원
- 사할린한인 : 영구귀국 지원(임대주택 + 기초생활비) + 일시모국방문 지원
- 원폭피해자(1,029명) : 원호수당 월30만 원 + 연 130만 원 내에서 진료비지원

○ 외국의 강제동원 보상 사례

- 일본의 재일한인 중 강제징용자 지원 : 사망 2천만 원, 중부상 46백만 원
- 일본의 대만인 강제징용자 보상 : 사상자 200만 엔
- 2차대전 중 미국 내 일본계 민간인 강제수용 보상 : 1인당 2만 불
- 독일의 강제노동피해자 보상 : 피해정도에 따라 120만 원~900만 원

5) 재원부담자

○ 사회각계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법적 보상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는 입장이며, 도의적 책임에 따른 지원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희박

○ 피해자들은 무상자금이 포철, 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수혜기업을 밝혀내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당시 공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전체국민에 대한 보상차원이라 볼 수 있으며, 당시 투입된 자금은 "국가로서의 청구권" 해결성격의 금액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

6) 지원 추진기구

- ㅇ 민간기업이 재원마련에 참여하는 형태인 경우로서 , 재단 등을 만들어서 추진한 사례가 있음(독일 화해재단, 일본 하나오까평화기금 등)
- ㅇ 우리정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대책인 경우, 정부기구에서 보상을 실시(광주민주화보상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단 등)

7) 향후 지원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방법 문제

- ㅇ 공청회 등 개최

[부록 6]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안

Ⅰ.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 및 축조 설명 자료

의 안 번 호	175021

제안년월일 : 2006. 9. 25.
제 안 자 : 행정자치부장관

1. 의결주문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65.6.22. 체결, '65.12.18. 발효)된 이후 '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안 제2조)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군인·군무원·노무

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과 노무제공 등의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유족의 범위(안 제3조)

유족의 범위를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미수금 피해자의 배우자·자녀·부모 및 형제자매로 정함.

다. 위로금의 지급금액(안 제4조)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위로금을 지급함.

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금액(안 제5조)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당시의 화폐금액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함.

마.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안 제6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하여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바.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과 위로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둠.

사.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안 제14조)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0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다. 합의 : 재정경제부 ·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06.3.16 ~ 4.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폐지 등 : 없음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제동원희생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2. “강제동원생환자”라 함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2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미수금피해자”라 함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미수금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형제자매

②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第5조(미수금 지원금) ①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1천 25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第6조(의료지원금) ①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第8조(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 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⑤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 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 ·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 · 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이나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심의와 결정) ①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 · 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등) ①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재심의 및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따른 위로금 및 미수금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2조(환수 등) ①국가는 이 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등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第26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第27조(벌칙) ①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축조심사

題名[1] : 일제강점하[2] 국외[3]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4] 법률

가. 제명의 의미

○ "일제강점하" : 한일청구권협상에서 일본국에 요구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지원

○ "국외"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중 한일청구권협정('65년) 논의대상에 포함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원대상이나,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해당없음

※ 당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연인원 650만여 명으로 추정

○ "강제동원" : 한일청구권협상과정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항목으로 요구

○ "희생자 등" : 지원법상 지원 대상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행불·부상자),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이므로 "희생자 등"으로 표현

○ "지원에 관한" :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은 법적책임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75년 정부보상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

※ 75년 정부보상 내용(92억 원 정도)

- 강제동원 사망자 : 26억 원(8,552 명), 개인재산권 : 66억 원(74,963 건)

나. "일제강점하" 용어의 적정성(일부 유족회에서는 "태평양전쟁"으로 변경 주장)

○ 법 제명은 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도록 규정함이 타당

- 일본국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는 "태평양전쟁"보다는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보다 직접적·구체적

○ 또한,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은 교과서, 언론, 학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

- 일부 법률에서 이미 법 제명으로 사용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등

다. "국외"로 한정한(국내 강제동원자를 제외한) 이유

○ 청구권협상과정에서 국외 강제동원자에 한정하여 논의, 국내 강제동원자는 논의대상에서 제외

※ 국외 강제동원자 103만 명에 대해서만 청구

○ 당시 국내 강제동원자는 연인원 650만여 명에 이르는 등 전국민이 피해를 당하였으며,

- 국내강제동원피해자까지 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

라. "보상법"이 아니고 "지원법"인 이유

○ 무상자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한국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할 책

임은 없음

- 다만, '75년 보상이 미흡하였다는 판단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대책 마련

○ 청구권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통 받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피해보상 요구

- 일본정부는 강제동원이 해방 전 당시 일본법에 의한 합법행위였으므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부인

제1조(목적) 이 법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한일청구권 협정"과의 관계를 명시한 이유

○ 정부지원대책은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기초로 마련되었기에, 한일청구권협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

- 청구권협정과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일제강점하 기타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방지
-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일본국에 있음을 명확히 함

※ 청구권협정 체결과정

- '65.6.22일 : 청구권협정 정식 조인(이동원,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 '65.8.14일 : 한국 국회 비준(야당 보이콧 속에서 찬성 100, 반대 0, 기권 1)
- '65.11.12일 : 일본 중의원 비준 · '65.12.11일 : 일본 참의원 비준
- '65.12.18일 : 비준서 교환(서울), 협정 발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제동원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1]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2] 또는 **노무자 등**[3]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4]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5]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2. "강제동원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2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미수금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강제동원 기간이 1938년~1945년인 이유

○ 청구권협상 문서를 보면, 본격적인 노무동원은 1939년부터 실시하였고,

- 1938.4.1일(5.5 발효)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실시

※ 국가총동원법 주요내용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학계에서도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를 강제동원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함

※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사실조사 및 진상규명 차원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법보다 범위가 광범위('31년 만주사변 이후로 규정)

나. 군속⇒군무원으로 수정된 배경

○ 청구권협상 과정에서는 군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한글 표준화 용어에 의해 군무원으로 규정

다. "노무자 등"에서 "등"의 의미

○ 노무자의 개념을 협의로 징용노무자만으로 축소해석 소지 차단,

- 여성근로정신대, 보국대 등도 포괄할 수 있도록 "등"으로 표현

라. 강제동원 기간에 1945년 이후 귀환과정이 포함된 이유

○ 우키시마호 폭침사건등 귀환과정에서의 사망·행방불명도 강제동원 피해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우키시마호 폭침사건('45.8.26) : 한국인 강제동원자를 태우고 부산으로 귀국 도중 교토시 인근 마이즈루항에서 배가 폭발, 침몰한 사건

- 유족은 당시 사망자가 수천 명(승선자 7,500~12,000 명)이라고 주장

마. 진상규명위원회와 별도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

○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하여 일제에 의해 자행된 국내외 강제동원피해 전반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이 진상규명위원회의 목적

- 지원법은 과거 보상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국내적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진상규명특별법과는 업무내용, 대상자 범위 등에서 상이

※ 지원대상은 한일협상과정에서 논의된 국외동원 희생자

○ 현재 진상규명위원회의 작업성과는 향후 위로금 등 지급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하나, 위로금등 지급업무는 집행적 사항이므로 별도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제3조 (**유족의 범위**[1]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 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2]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3] 4. 형제자매 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가. 유족의 범위를 한정한 이유(조카를 제외한 이유)

○ 이 법에 의한 지원은 법적 보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임

- 강제동원 희생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였다고 인정되는 친족(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으로 한정

⇒ 따라서 민법상 재산상속인까지 확대는 곤란

※ '75년 보상시 유족 범위 : ①처 ②자녀 ③부모 ④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

○ 일제강제동원피해가 오래된 사안이므로 사실혼 관계 확인 곤란

○ '75년도 정부보상 당시에도 사실혼관계는 배제

※ 광주민주화보상법에서도 사실혼 관계자 불인정

다. 손자녀가 포함된 배경

○ 입법예고안에서는 직계비속으로 규정되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대습상속 위배에 따른 위헌의 소지로 자녀로 수정

○ 손자녀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마련과정에서 포함

라. 손자녀가 형제자매보다 선순위로 규정된 배경

○ 의원입법안(정갑윤의원)

> * 유족의 등록 순위(정갑윤의원안)
> 1. 배우자
>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인)
> 3. 부모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 희생자 사후 양자 또는 고인의 제사를 모시는 자 등 가계에서 정한 상속자 1인

○ 민법 및 타과거사 사례 등을 참조

※ 민법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제4조(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1]「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제3615호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34만원을 뺀 금액**[2]으로 한다]
>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위로금 2천만 원 책정 근거

○ 일본국의 타식민지 강제동원 피해자 지급사례,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88~'95년 일본국의 대만인 지급 사례(군인 · 군속 사망 · 부상자)

※ 산출 근거

- 200만 엔(위로금액)×5.45 원(원/1엔)×1.78배(소비자물가상승률)≒1,940만 원

- 한일회담시 요구한 사망자 USD 1,650, 부상자 USD 2,000의 현재가치
- 사망자 : 1,650불(요구액)×266원(환율)×28.2(물가상승률)≒12백만 원
- 부상자 : 2,000불(요구액)×266원(환율)×28.2(물가상승률)≒15백만 원
- '65년 환율 : 266원, '65~'0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 28.2배를 기준

나. '75년 보상자에 대한 234만 원 차감의 결정근거

○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75년 보상금액(30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

- '75년~'05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7.8배를 기준으로 추산

※ 7.8(배)×30만 원('75년 보상액)=234만 원

> 第5조(**미수금 지원금**[1])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2]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3]으로 본다.

가. 미수금 지원금 지급의 배경

○ 미수금은 '75년 정부보상시 거증자료 미비 및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 이번 지원법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금 지급

나. 청구권협정 대상 중「예금등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지원이 제외된 이유

○ 우편저금, 예금 등 개인재산권은 '75년 보상시 개인의 신고를 통해 旣보상

-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7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74)

※ 보상금의 지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소멸 규정

다. 미수금 지원금 환산배율 1엔당 2,000 원의 근거

○ 청구권자금 보상시점('75)을 기준으로 한국·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추가예산 90억 원, 예산처와 예산협의)

⇒ 149.8배×1.63 원×7.8배≒1,904 원(**2,000 원**)
  * '45년～'75년 일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149.8배
  * '75년 대일환율 : 1.63 원/1 엔
  * '75～'05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7.8배

- 정부안에서는 1엔당 1,250 원으로 규정하였으나,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마련 과정에서 상향조정

※ 정부안의 미수금 지원금 환산배율 1엔당 1,250 원의 근거
- 일본의 대만인 미수금 1엔당 120배 지급사례 참고('95～'00)
- 120배×7.84 원('97년 원/엔 환율)×1.3배('97～'05 물가상승률)≒1,223 원

라. 소액미수금을 100 엔 이하를 100 엔으로 간주한 근거
  ○ '75년 보상 당시 일본국 통화 100 엔 미만의 청구권에 대해 100 엔으로 인정

第6조(**의료지원금**[1]) ①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2]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3],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생존자에게 위로금이 아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
  ○ 한일청구권 협상과정을 볼 때 청구권 자금에 생존자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미약
  - 생환자(15만여 명) 위로금 지급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할 때 수용 곤란
   ⇒ 현재 생존자는 강제동원피해의 직접당사자이고 고령임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지원금(연 50만 원) 지급
  ○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피해자와 형평성차원에서 곤란
  - 생환자 지원시 국내동원피해자 가운데 더 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도 도외시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

나. "비용의 일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 가능성

○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지원금은 연 50만 원인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0세이상 노인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책정

※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포함 노인의료비는 74만 원

※ 피해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의료비는 98만 원으로 조사

○ "전부"로 표현하면 의료지원금 인상요구, 기대심리 증폭 등 우려

⇒ 비용의 일부로 함이 타당

다. 의료지원(연 50만 원) 금액 결정근거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0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책정('05건강보험 주요통계 참조)

- 159만 원(70세이상 연간진료비)×27.64%(본인부담률)≒44만 원 정도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1]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에**[2]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3]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4]

가. 제1호에서 유족이 「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여부

○ 유족이 반민족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정서상 지원을 배제함이 타당하나,

○ 피해자의 다른 유족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 지원의 대상은 유족이 아닌 피해자 기준

나. "등"에 포함되는 대상범위

○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한인

다. 제3호에서 「재일동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청구권협정 문서에서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

※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청구권협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

○ 또한, 일본은 2000년 재일 외국인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사망자 : 260만 엔, 부상생존자 : 400만 엔 지급

라. 국적조항을 삭제할 가능성

○ 법의 지원목적은 '75년 보상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인도적 지원

○ 국적조항이 없으면 북한, 중국, 사할린 등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지원대상이 되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 국내 생환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점에 비추어 어려움이 있음

제8조(**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 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한 근거

○ 지원업무 성격상 부처간 협조·조정 등이 필요

나. 위원회의 명칭에 "심의" 삽입 여부

○ 지원법상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이므로 "심의"를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법제처 심사)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 1인을 **공동위원장**[1])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동위원장제 도입 배경

○ 지원신청 건수가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장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

※ 진상규명위원회 국외 강제동원 신청 건수 : 19만여 건

- 공동위원장(공무원위원장+민간위원장)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피해판정의 신속성 도모

※ 행정규제기본상 규제개혁위원회 등

제10조(**분과위원회**[1]))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분과위원회 도입 배경

○ 지원신청 건수가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 위원회 업무부담 과중 우려

○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판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도모

- 심의·결정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第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 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 ·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 · 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가. 동조항 도입 배경

○ 위원회 심의 · 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第13조(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1]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이나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2]**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동조항의 의미

○ 위원이나 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업무외 목적 사용 방지
- 위반시 제26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규정한 이유

○ 사무국의 직원은 경우에 따라 민간인으로도 충원될 수 있으므로 민간인 직원을 포함하는 의미

○ 공무원의 경우 형법 제127조에 의해 처벌 가능

※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1]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위로금등의 지급신청기간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이 오래된 사안이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결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으로 기간 설정

※ 진상규명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 제15조(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1]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심의·결정 기간 "6개월"의 타당성

○ 입법예고안에서는 강제동원 피해가 오래된 사안이고, 피해신청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심의·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초 1년 이내로 정하였으나, 위헌논란도 제기되어 처리능력 등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6개월로 한정

○ 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결정통지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함으로써 피해판정의 어려움 완화

> 제16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1]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 송달 기간 "30일 이내"의 근거

○ 동법률에서는 위로금등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송달하도록 규정, 다른 유사 입법례 참고 반영

나.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

○ 민사소송법 "제4장 제3절 송달"절의 규정에 의하면 제174조에서 제197조까지 규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함

> 제17조(재심의 등) 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및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가. 재심의 신청기간 "30일 이내"의 근거

○ 재심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나. 재심의 결정기간 "90일 이내"의 근거

○ 재심의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결정

> 第18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第19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가. "담보제공 금지" 규정 관련 사항

○ 국가가 지원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타 목적을 위한 전용은 곤란

○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임의로 설정을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담보제공의 실익이 없음

○ 다른 지원 및 보상관련 법률 사례 참고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 第20조(__조세 면제__[1])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과의 관계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은 그간(60여 년) 고통과 아픔에 대해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하는 것이므로 면세가 타당

○ 동조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하였고,

- 법 시행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함

※ 조세특례제한법(제3조) :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서도 기규정

> 제21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②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1]한다.

가. 의료지원금의 권리발생시기를 "지급신청한 때"로 규정한 이유

○ 생존자는 고령(평균 83세)이므로 최대한 의료지원금 수혜를 받도록 도모

- 지급신청 후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 의료지원금 지급 기회 제공
- 지급신청 후 다음연도에 결정이 된 경우 신청연도에 해당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 확대 도모

> 제22조(환수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3조(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第2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1]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용어의 적정성 여부(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소속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 보좌기관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

第25조(권한의 **위임·위탁**[1]) ①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가. 위임과 위탁의 대상 규정

○ 위임의 대상 : 피해자 민원불편 최소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받도록 위임 근거 마련

○ 위탁의 대상 :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고 등 금융기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第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1]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第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1]한다. ③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2]에 처한다.

가. '미수범의 처벌조항'의 필요성

○ 다른 지원 및 보상 법률에서 규정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등

○ 지원 대상 사안이 60여 년 전이므로,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 방지 차원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미약성

※ 형법상 공무원 비밀누설 : 2년 이하 징역 ·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 동조 제1항의 거짓 · 부정한 방법에 대한 벌칙 규정(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균형 등을 감안하여 결정

- 타과거사의 경우 대부분 거짓 · 부정한 방법에 대한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벌칙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1]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2]

가. 시행일 "6개월 경과" 규정의 타당성

○ 시행령 입법화 및 위원회 구성에 일정기간 소요(졸속 시행 방지)

○ 많은 지원대상자로 인해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다만,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설립 등 사전준비는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마련

※ 타법률 규정 사례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부칙)

Ⅱ.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안 (정갑윤 의원안)

의 안 번 호	175378

발의연월일 : 2006. 11. 15.
발 의 자 : 정갑윤・이상배・양형일
황우여・최인기・권경석
신상진・허 천・신학용
김성조・김태환・이계진
김재원・최경환・현애자
권선택・박종근・강기갑
주승용・최순영・정화원
정형근・진 영・이인기
박형준・최연희・윤원호
정문헌・박상돈・류근찬
박 진・김원웅・김희선
유승희・홍재형・최규식
양승조・우윤근・이낙연
최규성・한화갑・문석호
의원(42인)

1. 제안이유

1910년 경술국치 이후 35년간 일제로부터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 단절의 치욕을 겪은 후, 1945년 8월15일 일본의 패전으로 광복을 맞이한 지 벌써 60여년이 지났음. 그러나 당시 일제가 자행한 대표적 만행인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문제가 한일수교 후 40년 이상 한일 양국의 해결 노력 없이 방치된 상태임. 이로 인해 그 피해희생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히 한일 양국은 회담 당시 일제의 강제동원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등을 일체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1965.6.22체결, 1965.12.08발효)한 후 1975년 정부가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너무 미비하였음을 감안하여 피해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위령사업 등을 통해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인권회복 및 후세에 평화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로 지원금 등과 미수금 지급대상(안 제3조)

이 법의 지원대상자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군인 · 군속 · 노무자 · 여자근로정신대 · 일본군위안부 등의 생존자(부상자, 장애자 포함)와 그 유족으로 함과 동시에 일본국 및 일본 기업으로부터 미지급된 급료(공탁금 및 후생연금)와 여러 가지 수당 저축금, 조위금, 부조료 등 미수금을 지급받아야 할 당사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정함.

나. 지급대상 결정(안 제4조)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국무총리 소속의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생존자, 유족 또는 원유족 및 미수금(미불임금 등)적용 대상자 등을 결정함.

다. 위로지원금의 차등 지급 등(안 제5조 및 제6조)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 · 등록된 경우"생존자" 및 "원유족"등에게 위로금의 차등 지급 및 월지원금과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우선 임대받도록 함. 단, 생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일시금으로 위로금만 지급함.

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안 제7조)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 피해희생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불임금공탁금, 후생연금, 기타수당저축금 등의 증거자료 제출자 등에게 당시의 미수금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따라 미수금을 지급함.

마.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회(안 제9조)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회"를 둠.

바. 위로지원금 및 미수금 등의 지급신청(안 제14조)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일시금, 월지급금, 미수금 등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이법 시행으로부터 2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신청토록 함.

사. 위령사업 등(안 제24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그 희생의 자취를 후세에 교육의 장으로 남기기 위해 위령사업 등을 수행함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 당시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 되었던 당사자(생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한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무 이행과 장기간 방치한데 대한 위로지원금 등 실질적인 복지향상 지원으로 피해희생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존자"라 함은 일제에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종사하다가 1945년 8월 15일을 전후하여 고국으로 귀환한자(전상, 장애자 포함)를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귀환생존자가 사망했을 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생존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원유족"이라 함은 일제에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 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로 전시에서 종사하다가 현지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귀환하지 못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4. "미수금(미불임금 등)피해자"라 함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8월 15일 사이에(또는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근로정신

대(국내 여자근로정신대 포함),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전시에 강제동원 되어 종사하다가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으로부터 미지급된 급료(공탁금, 후생연금 등) 및 각종저축금,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호에 따라 미수금 피해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1. 일제에 의하여 징병되어 군인(학도병을 포함한다)으로 종사했던 자
2. 일제에 의하여 징용되어 군속이나 노무자로 종사했던 자
3. 일제의 모집이나 알선 혹은 징발에 의하여 동원되어 일반노무자로 일했던 자
4. 일제에 의하여 동원되어 여자근로정신대로 일했던 자
5. 일제에 의하여 동원·징발되어 일본군위안부로 생활했던 자
6.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원유족 중 「민법」상 상속자 1인
7. 미수금피해자로 제4조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자 중 결정을 받은 자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등록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인)
3. 부모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중 1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 희생자 사후 양자 또는 고인의 제사를 모시는 자 등 가계에서 정한 상속자 1인
③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제7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로 한다.

제4조(결정 및 등록) ①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5조(생존자에 대한 지원내용) ①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로서 생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행한다.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 위로지원금 지급
3.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로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한다. 일시금은 생존자 1인당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월지원금은 생존자 1인당 매월 5십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는「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제1항의 적용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第6조(유족 및 원유족에 대한 지원 내용) ①국가는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원유족에게 각호의 위로지원금 또는 의료급여금을 지급한다.

1. 유족에게 위로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위로지원금은 희생자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한다.
2. 원유족에게 위로지원금을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위로지원금은 희생자 1인당 일시금 5천만 원과, 매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유족에게 년 200만 원의 의료급여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유족 중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원유족"의 경우에는 강제동원 희생자 1인당 234만 원을 뺀 금액으로 일시금을 지급한다.

2.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중 부상자나 장해를 입고 귀환한 생존자는 그 증빙이 되는 대로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미수금 지원금) ①국가는 미수금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이 미지급한 미불 임금(공탁금, 후생연금 등)과 각종 저축금,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부조료 등에 대한 당시의 일본국통화 1엔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 환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1인 통합의 액수가 일본국통화 100엔 이하 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 통화 100엔으로 본다.

③전쟁의 심화로 전몰지역이나 그 밖의 사정(폭격, 원폭, 전시 중 기타 사정 등)으로 미불임금(공탁금, 후생연금)의 자료 소실 및 미기록(도망, 반항자, 전몰 등) 등으로 근거를 찾지 못하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본국에 당시 적용 기준 계산법 등을 감안하여 근거자료를 만들어 일본측이 제시해 줄 것을 외교적 교섭으로 요구 이행하여 희생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제1항과 제2항에 적용해서 지급한다.

제8조(위로지원금 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와 제6조의 위로지원금과 기타 지원사업 혜택 및 제7조 미수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미수금 피해자가「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월15일 이후로부터 1965년 6월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제9조(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및 위령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유족 및 생존자와 그 유족 또는 미수금 피해당사자 및 그 유족의 등록신청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와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일시금, 월지원금, 미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 관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심의를 부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가 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의 50%는 피해희생자 관계 단체의 추천인으로 하여 피해희생자들의 일방적 불이익 개념을 배제하고 상호 국민화합을 도모한다.

⑤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⑧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 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위원과 관계되는 업무수행 시 과오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및 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지원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지원금 등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 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을 경우

②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이나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로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①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미수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 사무국이나 위원회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미수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로지원금 및 미수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5조(심의와 결정) ①위원회는 위로지원금·미수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조(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는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7조(재심의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심을 위해 재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그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재심의 및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第18조(신청인의 청구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신청인이 위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로지원금 일시금과 월지원금 및 미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위로지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미수금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미수금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5조제1항제1호 · 제3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임대주택의 우선임대를 지급받을 권리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2조(환수 등) ①국가는 이 법에 따라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위로지원금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등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위령사업 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그 희생의 자취를 후세에 교육의 장으로 남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희생자와 원유족(유족포함)의 생활실태조사 및 상호협조교류
2. 유해 발굴 봉안 추진 및 위령제 봉행
3. 위령공간(위령묘역 및 납골당, 위령탑, 추도평화공원 등)조성
4. 불우유족 생활지원 사업
5. 유족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등) 장학사업
6. 한민족 강제징집 및 비화사 발간
7. 복지관 및 추도국제교류관 건립 등
8. 제1호에서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기구를 설립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경비의 보조)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경비 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태평양전쟁 희생자 관계법인 또는 단체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대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 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및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지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第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第30조(벌칙) ①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단체나 개인은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2조(성금모금) ①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25조제2항의 유관 단체는 대일민간청구권자금 도입사용기관 및 기업체의 기부금과 성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성금모금 등을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행 정도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第33조(국가의 노력) 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위령사업 및 복지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Ⅲ.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의 안 번 호	176979

제안년월일 : 2007. 4. 25.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第26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1. 27)에서 2006년 9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11월 15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第262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12. 6)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후 第26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1. 19) 및 第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2. 21)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다. 第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4. 25)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내용을 보고받고 교섭단체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

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로금 등의 지원대상(안 제2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과 노무제공 등의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유족의 범위(안 제3조)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정함.

다. 위로금의 지급금액(안 제4조)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함.

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금액(안 제5조)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함.

마.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안 제6조)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하여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바.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미수금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과 위로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둠.

사.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안 제14조)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제동원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2. "강제동원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2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

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미수금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 원[「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제3615호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34만 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제8조(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 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 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第13조(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이나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5조(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第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등) 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및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第22조(환수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3조(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第2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第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Ⅳ.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7. 2
발 의 자 : 장복심 · 이용희 · 문병호
양승조 · 이석현 · 김용갑
고경화 · 이미경 · 원희룡
윤원호 · 이재오 · 진수희
선병렬 · 배일도 · 권오을
박희태 · 곽성문 · 심대평
박계동 · 임종인 · 김춘진
이경숙 · 이낙연 · 김태년
장향숙 · 노영민 · 김희선
정청래 · 현애자 · 지병문
정장선 · 박상돈 · 허 천
조정식 · 최 성 · 김형주
홍창선 · 김영주 · 김덕룡
장경수 · 이목희 · 변재일
김낙순 · 진 영 · 백원우
염동연의원(46인)

1. 수정이유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그러나 동 법률안(대안)이 첫째, 제명을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있으나,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일제 식민지배의 부

당성을 부각·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 한국근대사가 일제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타율성론 등 일제 식민사관을 계승하는 표현이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침략에 대항한 결과 독립으로 이어진 한국독립운동사에 대한 부정이며, 중국과 북한에서는 근대사에 대한 인식의 총체적 결과물로 '일제강점하'라는 타율적 용어대신에 '항일전쟁기'라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국제적 시각에 배치되고 일제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여 몰역사적인 용어로서 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동 법률안의 지원대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위로금 등의 지원대상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강제동원 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하여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를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볼 때 무상자금에 생존자의 몫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나, 예비회담 때 일본정부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것도 우리 정부이고 협정시 생존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생존자를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임.

동 법률안(대안)은 위로금 등 지원대상과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역부족이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등 희생자관련 단체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

이에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한편, 위로금 등의 지원대상에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를 추가하여,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생환한 연로한 생존자를 비롯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며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가. 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

나.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와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1인당 5백만원 씩 지급함(안 제4조제3호 신설).

법률 제호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 및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안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 1인당 5백만원

안 제8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각각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한다.

안 제1조, 제2조제1호가목 및 제2호, 제8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일제강점하"를 각각 "태평양전쟁 전후"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태평양전쟁 전후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강제동원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가. -- -- -- -- -- -- -- -----------------------태평양전쟁 전후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강제동원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2. -- -- --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2호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 -------------------태평양전쟁전후---------- ------------------------------ ---.
제4조(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4조(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 및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다음 각 호의 ---------- 지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 1인당 5백만원
제8조(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 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 5. (생 략)	제8조(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1. 태평양전쟁 전후 ---------------------- --- --- ----- 2. 태평양전쟁 전후 -------------------- --- 3. 태평양전쟁 전후 ---------------------- --- ------------ 4. ~ 5.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잠정)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의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함.

○ 대안에서의 재정소요 추계 : 총 4,578억원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세 입	-	-	-	-	-	-	-
세 출	1,535	984	1,079	962	9	9	**4,578**
지원위원회 설립 및 운영	29	44	44	44	-	-	161
위로금·의료 지원금·미수금 지원금 지급 소요	1,506	940	1,035	918	9	9	4,417
세출 재원조치	1,535	984	1,079	962	9	9	**4,578**
□ 중앙정부	1,535	984	1,079	962	9	9	4,578
○ 일반회계	1,535	984	1,079	962	9	9	4,578

※ 정부안에서 제시된 재정소요 추계를 대안에 준용한 것임.

○ 수정안에서의 추가 재정소요 : 820억원

①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 위로금 500만원 지원

- 500만원(일시금) × 16,400명 = 820억원

※ 진상규명위원회 신고자 분석에 의하면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24,287명으로 추정되며, 정부에서도 생존자의 평균 여명기간을 4년으로 추정하고 있어, 기간 경과에 따라 현 생존자는 신고 당시보다 35% 이상 사망한 16,400명 내외로 추정되며, 동 법률이 제정 시행될 시기에는 더 감소할 전망.

[부록 7]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안

2007년 7월 2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기본전제

○ 정부는 200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년)」과 관련된 문서의 공개 과정에서 1975년 실시된 정부보상시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던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 결과,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여 2006년 9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갑윤의원이 2006년 11월 15일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을 통합 · 조정한 위원회 대안인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기로 2007년 4월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2007년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대안에 대해 장복심의원 외 45인으로부터 법의 제명 중 '일제강점하'를 '태평양전쟁 전후'로 수정하고, 위로금 지급대상에 '생환자 중 생존자'를 추가하여 1인당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결되었습니다.

2. 국회 심의과정시 이루어진 조정과 합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초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안 마련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소요예산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회 상임위 입법과정을 통해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조정・통합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은 많은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회법」 제58조제7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정부와 사전협의가 미흡하였습니다.

3.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 및 법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부법안 마련시 민·관공동위원회 논의,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 및 유관부처 협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한 정부입법과정은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피해의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의 원칙'에 따라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아닌 별도의 '의료지원금' 방식의 지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동 법률안을 그대로 시행하여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아닌 생존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귀국 후 사망한 '생환자 중 사망자' 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사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됩니다.

○ 동 법률안은 법 제명 수정사유를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일제식민사관을 계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태평양전쟁 전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435호)」등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법률과 동일한 시기를 규율하면서도 법 제명을 달리함으로써 법체계상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일

제 강점하라는 특정한 시기가 아닌 태평양전쟁 전후라는 확정되지 않은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규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4. 결 론

○ 동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및 정부와의 사전협의 등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 그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로 인해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며
○ 법 제명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 고 사 항

1. 의결주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7월 20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타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부록 6] 참고

[부록 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1.9.8. 체결, 1952.4.28. 발효)

1) 개 요

○ 의의
-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후 1951.9.8. 48개 연합국과 일본간에 맺어진 평화조약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 평화조약은 전쟁상태 종결과 평화회복을 규정함과 동시에 평화회복시의 당사국간의 법적관계를 규정

○ 조약 구성 : 전문 및 제1장-제7장
- 제1장 평화상태의 회복(제1조), 제2장 영역(제2-4조), 제3장 안전(제5-6조), 제4장 정치 및 경제(제7-13조), 제5장 청구권 및 재산(제14-21조), 제6장 분쟁해결(제22조), 제7장 최종조항(제23-27조)

2) 우리나라 관련 조항

○ 우리정부는 대일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국자격으로 참석을 시도하였으나 영국 등 일부 전승국이 우리나라 정통성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함으로 실패

○ 평화조약에 의한 우리의 전쟁배상청구권은 부인되고, 한·일간의 양국 특별협정으로 해결토록 규정함으로서 한·일 청구권협정의 근거가 마련(제4조a)

-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정부 및 주민의 재산 및 일본과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채권포함)처리는 한국과 일본간의 특별협정으로 한다"(제4조a)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한국(Quelpart섬(제주도), 해밀턴항(거문도), Dagelet섬(울릉도)에 대한 모든 권리, 지위, 청구를 포기한다"(제2조a)

○ 한국 내에 있는 일본국과 일본인의 재산처분권을 미군정 명령에 일임토록 규정
- "일본은 제2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미군정 명령에 의하여 일본과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다"(제4조b)

3) 조약 번역문

○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한국(Quelpart섬, 해밀턴항, Dagelet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지위(title), 청구를 포기한다

○ 제4조

(a) 아래 (b)항을 조건으로 하면서, 제2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일본과 일본인의 재산 및 현재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당국과 그 주민(법인포함)에 대한 일본과 일본인의 청구(부채문제를 포함)의 처분문제와, 그 행정당국 및 주민의 재산 및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행정당국과 주민의 청구(부채포함)에 대한 일본에서의 처분문제는 일본과 행정당국간의 특별협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2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연합국 및 그 국민의 재산이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그 재산이 존재하는 한 그 행정당국은 돌려주어야 한다.

(b) 일본은 제2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미군정의 명령에 의하여 일본과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다.

○ 제14조

(a) 일본은 전쟁중에 일본이 발생시킨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연합국에게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를 생존시켜야 한다면, 모든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완전한 배상을 하고 여타의 의무를 따르기에는 일본의 자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한다.

1. 일본은 즉시 일본군에 의해 영토가 점령당했고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 연합국과 생산, 인양작업 등에 일본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치유비용을 보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 이하생략
2. (Ⅰ) 아래 (Ⅱ)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개별 연합국은 아래의 모든 재산, 권리, 이익을 압류, 매각 등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a) 일본과 일본인의 것
(b) 일본과 일본인을 위해 활동한 자의 것
(c) 이하 생략

(Ⅱ) 다음의 것은 (Ⅰ)에서 지정된 권리에서 제외된다.

(ⅰ) 전쟁중에 연합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군이 점령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했던 일본인 자연인의 재산, 다만 전시 중에 가한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재산은 제외 --- 이하 생략

(ⅳ) 1945.9.2일 이후 일본과의 그 나라간에 무역 및 금융거래의 결과로 그 관할에 들어온 재산, 권리, 이익으로서 연합국의 법률에 반하지 않은 것.

(Ⅴ) 연합국은 일본인의 상표 및 저작권을 각국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본에 유리하게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b) 이 조약에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합국은 연합국가의 모든 배상청구, 전쟁수행과정에서 일본과 일본인에 의해 저지른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연합국과 그 국민의 기타청구, 및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연합국의 군사비 청구를 포기한다.

[부록 9]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 8개 요강 및 한일회담 주요내용

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 동 조	다까스기 싱이찌

Ⅱ. 대일청구 8개 요강

1.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지금 246,633,199g(제5차 회담 시 제기) 및 지은67,541,771g(제5차 회담 시 제시)의 반환청구

2. 1945.8.9 현재의 일본정부에 대한 대조선총독부 채권의 반제청구

(가) 체신국 관계
- ○ 우편저금, 진체저금, 위체저금 등
- ○ 국채 및 저축채권 등
- ○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관계
- ○ 해외위체저금 및 채권
- ○ 태평양미육군사령부 포고3호에 의하여 동결된 한국수취금

(나) 45.8.9이후 일본인이 한국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액

(다) 한국에서 수입된 국고금중의 이부자금이 없는 세출에 의한 한국 수취금 관계

(라) 조선총독부 동경사무소 재산

3. 45.8.9이후 한국으로부터 진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 청구

(가) 8.9이후 조선은행본점으로부터 재일동경지점에 진체 또는 송금된 금품

(나) 8.9이후 在韓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본에 송금된 금품

(다) 기타

4. 45.8.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지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청구

(가) 연합군 최고사령부 폐쇄기관령에 의거 폐쇄청산된 한국 내 금융기관의 재일지점 재산

(나)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965호에 의거 폐쇄된 한국 내 본점 보유법인의 재일재산

(다) 기타

5.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청구

(가) 일본유가증권
(나) 일본계통화
(다) 미징용한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일본국정부 청구 은급 관계
(바)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사)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기타는 6항에서 설명)

6. 한국(자연인,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7. 전기 제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과실의 반환청구

8. 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 및 종료시기에 관한 항목

Ⅲ. 7차례의 한일회담 주요내용

1) 회담 진행 개요

가. 회담 개시 전 준비 상황

□ '49.2월 "대일배상조사심의회"를 설치, 대일배상요구조서(2권)를 작성함으로써 대일 배상 청구에 대비

○ 1권 ('49.3) : '49.3.1. 현재 판명된 현물 피해, 즉 지금(地金), 지은(地銀), 서적, 미술품 및 골동품, 선박, 지도원판 등 대일 반환 현물 목록

○ 2권 ('49.9) : '49.9.1 현재 이남지역의 (단순) 확정채권,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기간 중 인적·물적 피해, 일제 강제공출 등에 의한 손해 등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서명국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대일 전쟁배상 요구가 가능토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실패

○ '51.4.16 (외무부내) "대일강화회의 준비회의" 설치

○ '51.7.18 서명국 자격 요청안을 덜레스 미국무성 고문에 전달

○ '51.8.13 강화조약 최종안 발표시 우리의 서명국 자격은 배제되었으나, 대일 권리에 대한 일부 의견 반영 (4조B항)

※ 4조B항 : "일본은 한국에서 미국 군정 또는 그 지령에 의한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일본 및 일본 국민의 한국내 재산의 한국으로의 소유권 이양 확인)

나. 회담 진행 과정

○ 예비회담 및 제 1차~3차 회담 ('51~'53, 자유당 정권)
○ 중단기 ('54~'57)
○ 제 4차 회담 ('58~'60, 자유당 정권)
○ 제 5차 회담 ('60~'61, 민주당 정권)
○ 제 6차~7차 회담 ('61~'65, 공화당 정권)

□ 제 1차 한일회담 ('52.2.15~4.25)

- ○ 52.1.18 평화선 선포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 ○ 우리측,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 제시
- ○ 일측의 對韓 일본인 재산청구권 주장으로 결렬

□ 제 2차 한일회담 ('53.4.15~7.23)

- ○ 독도 문제, 평화선 문제에 대하여 이견 노정
- ○ 한국전쟁 휴전 후 제네바회담 개최 등에 따라 휴회

□ 제 3차 한일회담 ('53.10.6~'10.21)

- ○ 어업(평화선) 문제 및 청구권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계속
- ○ 일측 수석대표 구보다 망언(10.15)으로 회의 결렬 (10.21)

□ 중단기 ('53.10월~'58.4월)

- ○ 한일간의 심한 감정 대립으로 회담 중단

□ 제 4차 한일회담 ('58.4.15~'60.4.15)

- ○ 기시(岸)내각 출범에 따라 재개되었으나, 진행 지지부진
- ○ 회담 재개 및 휴회를 거듭하다가 60년 4.19 발생으로 중단

□ 제 5차 한일회담 ('60.10.25~'61.5.15)

- ○ 양국 신정부 출범 (장면 내각, 이께다 내각)으로 회담 재개
- ○ 청구권 문제와 관련, 법리적 논쟁을 떠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성과 별무
- ○ '61년 5.16 발생으로 중단

□ 제 6차 한일회담 ('61.10.20~'64.4월)

- ○ 양국간 이해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로 국교정상화 시급
- ○ '61.10.20 본회의 개최, 사무절충과 정치절충 병행

○ '61.11.22 박-이께다 회담시 조속한 시일내 국교정상화 합의
○ '62.10.20 김종필-오히라 회담시 청구권 문제 정치적 타결
※ 김 · 오히라 메모 :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1억불 이상
○ 그 후 어업 회담에서 수역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회담 난항
○ '64.4월 아국내 한일회담 중단 요구시위 격화로 회담 중단

□ 제 7차 한일회담 '(64.12.3~'65.6.22)
○ '65.2.20, 기본관계 조약 가조인 및 양국 외상 공동성명 발표
○ '65.8.14 국회 비준 (야당 보이콧속에서 찬 100, 부0, 기권1)
○ '65.11.12 일 중의원 비준
○ '65.12.11 일 참의원 비준
○ '65.12.18 비준서 교환(서울) 제협정 발효 (재일교포 법적지위 협정은 '66.1.17 발효)

2) 청구권협정 개요

○ 일본의 패전과 아국의 분리 · 독립에서 비롯된 재정적 · 민사적 채권채무의 상호 청산
○ 강압적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이나, 일본의 침략에 대한 교전국으로서의 전쟁배상이 아님.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참가자격이 부인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조약 14조) 향유 불가

□ 1차 회담 개시 당시 청구권 청산에 대한 양측 입장
(우리측)
○ 구일본재산 처분 관련 3개 법령에 의거, 한국 정부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재산에 대하여 반환 청구
※ 3개 법령 : ①「미군정령 33호」(45.12.6) 모든 구일본재산의 미군정청 귀속, ②「한미간 재정/재산협정」(48.9.20) 동귀속재산 한국정부 이양, ③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 B항」(51.9.8) 일본의 상기 미군정청 처분 효력 승인

(일측)

○ 강화조약 4조B항은 국제법상 점령군에게 인정되지 않는(사유재산) 처분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원권리자인 일본인에게 청구권 잔존

- 구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 및 과실에 대한 청구권 주장

□ 교섭 경위

○ 1차 회담

- 아측 대일청구권 8개 요강 제시
- 일측 역청구권 주장으로 결렬

○ 2차, 3차 회담

- 미 국무성 유권해석(일본은 유효한 對韓청구권 주장 불가)에도 불구, 일측은 청구권 계속 주장

○ 4차 회담

- 일측, 역청구권은 취소하였으나, 실질적 진전 별무

○ 5차 회담

- 아측, 한반도 전역에 대한 청구권 변제 요구
- 일측, 한국정부의 현실적 관할 지역에 한해, 법적근거와 사실관계가 확실한 부분만 변제 가능 주장

○ 6차('61.10~'64.4), 7차 회담

- 광복 후 20년 경과, 한국전쟁 시 증거 멸실 등으로 아측의 법적/사실적 청구근거 제시에 한계 노정, 정치적 타결 모색
- 2차에 걸친 김-오히라 회담 시 원칙 합의('60.10.20 및 11.12)
  - ·규모 :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민간차관 1억불 이상
  - ·명분 : 국교정상화 축하금, 아국경제발전에 기여

- '65.3.28 이-시이나 외상회담 시 민간차관 액수를 2억 불 증액, 총 8억 불선으로 최종 합의

□ 합의 내용

○ 무상 공여 3억불 10년간 분할 공여
- 무상 3억불은 대일청구권 8개 요강에 대한 것이며, 정치적 해결에 의하였으므로 항목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

○ 정부차관 2억 불 10년간 분할 공여, 7년 거치, 연리 3.5% 20년 상환
- 당시 일 경제협력기금 최우대조건이 연리 4%, 상환기간 15년

○ 청구권의 해결
- 일본측에 의한 유・무상 자금제공에 수반하여 아측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도록 규정(2조)
- 단, 재일한국인과 해방이후의 통상적 거래에 관하여는 예외

[부록 10]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1966.02.19 (법률 제1741호) 경제기획원)

第1條 (目的) 이 法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이하 "協定"이라 한다)에 의하여 受入되는 資金을 사용함에 있어서 國民經濟의 自主的이고 均衡있는 발전에 寄與할 수 있도록 效率的으로 運用·管理 또는 導入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無償資金"이라 함은 協定 第1條1(a)에 의하여 導入되는 資金을 말한다.

②이 法에서 "借款資金"이라 함은 協定 第1條1(b)에 의하여 導入되는 資金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원貨資金"이라 함은 無償資金과 借款資金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資金을 말한다.

④이 法에서 "請求權資金"이라 함은 無償資金·借款資金 및 원貨資金을 말한다.

⑤이 法에서 "資本財"라 함은 産業施設(船舶·乘用自動車를 제외한 車輛等을 포함한다)로서의 機械·機材·施設品·部分品·附屬品(林業施設의 경우는 苗木·畜産業施設의 경우는 種畜을 포함한다) 또는 試運轉에 所要되는 原料豫備品과 이들 資本財의 導入에 따르는 運賃·保險料 또는 施設을 하거나 助言을 하는 技術을 말한다.

⑥이 法에서 "原資材"라 함은 原料·半製原料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材를 말한다.

⑦이 法에서 "用役"이라 함은 特許權 기타 技術의 사용에 관한 權利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을 말한다.

⑧이 法에서 "受用者"라 함은 請求權資金에 의하여 導入한 資本財를 所有하고 있는 者로서 그 收用者의 資格이 解除되기 이전의 者를 말한다.

第3條 (資金使用制限) 請求權資金은 大韓民國政府와 大韓民國國民(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외에는 이를 使用할 수 없다.

第4條 (資金使用基準)

①無償資金은 農業·林業 및 水産業의 振興·原資材 및 用役의 導入 기타 이에 準하는 것으로서 經濟發展에 이바지하는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借款資金은 中小企業·鑛業과 基幹産業 및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하는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원貨資金은 前2項에 規定한 事業의 支援 또는 請求權資金管理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第5條 (民間人의 對日請求權 補償)

①大韓民國國民이 가지고 있는 1945年 8月 15日以前까지의 日本國에 대한 民間請求權은 이 法에서 정하는 請求權資金中에서 補償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民間請求權의 補償에 관한 基準·種類·限度等의 決定에 필요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6條 (特別會計의 設置)

①請求權資金을 運用·管理하기 위하여 請求權資金特別會計를 둔다.

②前項의 特別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7條 (委員會의 設置) 請求權資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請求權資金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8條 (委員會의 構成等)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 및 委員 14人 이내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經濟企劃院長官이 되며 委員은 關係部長官과 經濟界·學界·言論界·法曹界等 各部門에서 大統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③委員中 大統領이 委囑하는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職의 資格으로

委囑된 委員이 그 公職에서 解任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委員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도 刑法 기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第9條 (委員會의 議決事項等)

①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請求權資金을 사용할 對象事業 및 그 事業計劃
2. 請求權資金에 의한 購買 및 導入節次에 관한 重要事項
3. 기타 請求權資金의 運用·管理에 필요한 事項

②委員會가 前項에 規定하는 事項을 審議議決함에 있어서는 過剩施設, 落後된 産業施設, 國內生産으로 需要를 充足하는 生産物 및 日本地域에서 購買함이 顯著히 不利한 生産物과 기타 經濟發展에 寄與하지 아니하거나 惡影響을 미친다고 明白히 인정되는 産業施設의 導入을 議決할 수 없다.

第10條 (委員會의 議事等)

①委員會의 委員長은 필요에 따라 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 副委員長은 委員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②會議는 在籍委員(委員長을 포함한다)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議長은 表決의 결과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④會議의 審議事項에 관하여 委員 및 그 配偶者나 그들의 親族 또는 家族이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경우에는 當該 委員은 그 事項의 審議·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⑤이 法에 規定하는 것외에 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再審査)

①委員會의 議決이 第9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되었다고 인정하는 利害關係人은 그 議決이 있은 날로부터 1月이내에 委員會에 대하여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再審査는 委員會의 在籍委員 3分의 2以上의 出席과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委員會가 第1項의 再審査를 할 때에는 再審査請求人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參考人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委員會가 再審査請求를 理由없다고 議決한 때에는 原議決에 瑕疵가 없는 것으로 본다.

第12條 (使節團의 設置)

①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長官所屬下에 請求權 및 經濟協力使節團(이하 "使節團"이라 한다)을 둔다.

1. 協定 제1의정서 제5조에 規定하는 事項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②使節團의 職制, 公務員의 種類·報酬·定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年度實施計劃의 確定公告 및 年度使用計劃의 國會同意)

①經濟企劃院長官은 協定 제1의정서 제1조의 規定에 의한 年度實施計劃案(이하 "無償資金使用年度實施計劃案"이라 한다)과 協定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5의 規定에 의한 年度實施計劃案(이하 "借款資金使用年度實施計劃案"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修正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無償資金의 年度使用計劃案은 部門別·事業別로 金額을 計上하고, 借款資金의 年度使用計劃案은 部門別·事業別로 業體를 표시하고 金額을 計上하여 각각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經濟企劃院長官은 無償資金使用年度實施計劃案과 借款資金使用年度實施計劃案이 協定 제1의정서 제1조 및 協定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5에 의하여 確定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公告를 할 때에는 서울特別市에서 발행되는 2이상의 日刊新聞紙에 揭載하여야 한다.

第14條 (公開募集)

①經濟企劃院長官은 前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償資金使用年度實施計劃과 借款資金使用年度實施計劃이 確定된 때에는 그 計劃의 實施(政府 또는 政府投資機關이 사용하는 分은 제외한다)를 위하여 請求權資金으로 資本財 및 用役을 導入하고자 하는 者를 公開하여 募集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公開募集을 위한 公告를 할 때에는 前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5條 (資金使用等의 許可)

①前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募集에 응하고자 하는 者는 請求權資金의 사용 및 導入에 관한 許可申請書를 필요한 書類를 첨부하여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經濟企劃院長官은 前項의 許可申請書를 받은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合意를 거쳐 大統領令이 정하는 許可基準에 적합한가를 審査하여 적합한 申請에 대하여는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請求權資金의 사용 및 導入에 관한 許可를 하여야 한다.

③原資材導入을 위한 資金사용에 관하여는 그 品目에 대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이 主務部長官의 合意를 거쳐 委員會의 議決을 받은 후 韓國銀行總裁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資金을 公賣하고 그 사용 및 導入에 관한 許可를 한다.

第16條 (導入報告)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資本財·原資材 또는 用役을 導入한 者는 導入한 날로부터 1月이내에 導入報告書와 導入에 관한 證憑書類를 經濟企劃院長官 및 主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受用者는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導入報告書를 제출한 날로부터 6月마다 資本財의 사용 또는 處分에 관한 狀況을 經濟企劃院長官 및 主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7條 (調査 및 是正)

①經濟企劃院長官 및 主務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定期 또는 隨時로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現場을 調査하게 하여 보고의 內容을 확

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受用者에 대하여 調査에 필요한 說明書 기타 書類를 제출하게 하거나 關係者의 出頭를 要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③經濟企劃院長官 및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결과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事項이 있을 때에는 受用者에게 그 是正을 要求할 수 있다.

第18條 (目的變更等의 承認)

①受用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經濟企劃院長官은 이에 관한 主務部長官의 合意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한 行爲는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이 法에 의하여 導入된 資本財 또는 用役을 許可된 目的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導入된 資本財·用役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資産의 全部 또는 一部를 賣却·讓渡·賃貸 기타 擔保의 目的으로 사용하거나 事實上의 支配權을 他人에게 讓渡하고자 할 때

②受用者가 발행한 株式이나 受用者의 持分을 所有하는 者가 그 株式이나 持分을 讓渡하는 때에도 前項과 같다.

第19條 (債權行使의 承認)

①이 法에 의하여 導入된 受用者의 資本財·用役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資産의 全部 또는 一部를 債權行使의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한 行爲의 效力에 관하여는 前條第1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0條 (賣却處分)

①主務部長官은 受用者가 許可된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거나 達成할 可能性이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該 企業體를 賣却할 뜻을 受用者에게 통고하여 정해진 期日內에 異議를 제출하게 하고 그 異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期日을 정하여 그 企業體의 賣却을 命할 수 있다.

②受用者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을 할 때에는 미리 買受人에 대한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前項의 경우에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한 賣却의 效力에 관하여는 第18條第1項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 (同前)

①受用者가 前條의 規定에 의한 賣却을 정해진 期日內에 完了하지 못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은 受用者에 갈음하여 當該 企業體를 賣却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賣却은 一般競爭入札에 의하며 그 施行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賣却에 所要된 모든 費用은 前受用者가 負擔한다.

第22條 (職權의 委任) 經濟企劃院長官은 第14條·第17條 및 第18條에 規定된 職權과 기타 管理 및 監督에 관한 職務의 一部를 政府機關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23條 (受用者의 資格解除) 經濟企劃院長官은 이 法에 의하여 導入된 受用者의 資本財 또는 用役이 許可된 目的에 따라 사용·運營되는 날로부터 5年이상이 경과된 때에는 그 受用者의 資格을 解除할 수 있다.

第24條 (補則)

①協定의 附屬文書인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하여 導入되는 資金은 外資導入促進法·長期決濟方式에依한資本財導入에關한特別措置法및借款에對한支拂保證에關한法律과 기타 關係法令을 適用한다.

②이 法中 外資管理法에 관련되는 事項에 대하여는 그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대하여는 貿易法中 輸入許可에 관

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5條 (罰則)

①請求權資金을 政治資金으로 사용한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導入報告書를 期限內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또는 處分狀況을 期限內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와 虛僞의 보고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忌避·拒否 또는 방해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第18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第2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⑥第2項 내지 前項에 規定한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第26條 (加重處罰)

①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許可를 받아 資本財·原資材 또는 用役을 導入하는 者가 그 導入에 관하여 請求權資金을 外國에 逃避시킬 目的으로 外國換管理法 第17條·第20條 내지 第23條·第25條 내지 第29條에 規定된 罪를 犯함으로써 請求權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外國에 逃避시킨 경우에 그 價額이 美合衆國弗 5萬弗 상당이상일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이 경우에 그 價額의 5倍以下의 罰金刑을 倂科할 수 있다.

②前項의 罪의 目的이 된 金品 기타 物件은 沒收한다. 沒收하는 것이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2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自然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者가 그 法人 또는 自然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6條·第17條第1項·同條第3項·第18條 및 第20條第2項·第26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이외에

그 法人 또는 自然人에 대하여도 罰金刑을 科한다.

第28條 (告發)

①第25條第2項 내지 第5項의 罪는 經濟企劃院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經濟企劃院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은 정당한 理由가 없는 限 前項의 告發을 하여야 한다.

第29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1741호,1966.2.19>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록 11]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정 1971.01.19 (법률 제2287호) 재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하 "대일민간청구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이 표를 포함한다)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중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국정부의 보조화폐
2. 1945년 8월 15일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가. 일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 나. 일본저축권, 다. 일본국의 지방채

라.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의 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국정부가 보증한 사채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온 해외송금. 다만, 환거래결재분에 한하며 일본은행권 이외의 일본계

통화 및 일본군표는 제외한다.

5.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8.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

가. 우편저금·진체저금 및 우편 위채, 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피징용사망자"라 한다)

②전항제9호에 규정된 피징용사망자의 기준과 그 유족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에 의한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6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부처의 1급상당이상의 공무원, 2. 금융기관의 임원
3. 청구권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신분)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대일민간청구권의 증거 및 자료의 적부심사
2.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업무에 따르는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고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의사등)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증거조사등)

①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한 증언의 청취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증인의 위원회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업무·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직원은 재무부소속 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 직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업무의 취급) 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 및 신고기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을 가진 자(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는 이 법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기타 증거에 미비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그 정을 알면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자
2.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반국가적 목적으로 제2조 각호에 게기한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증서를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
2. 전호의 정을 알면서 그 반입된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자

②전항의 행위의 목적이 된 물건등은 이를 몰수한다.

제1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도 전2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287호,1971.1.19>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12]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제정 1974.12.21 (법률 제2685호) 재무부)

第1條 (目的) 이 法은 請求權資金의運用및管理에관한法律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이 가지고 있는 日本國에 대한 民間請求權(이하 "請求權"이라 한다)의 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補償의 對象)

①請求權의 補償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이하 "請求權申告法"이라 한다)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對日民間請求權申告管理委員會에서 證據 및 資料의 適否를 審査하여 당해 請求權申告의 受理가 決定된 것을 對象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機關이 申告한 것에 대하여는 補償하지 아니한다.

1. 朝興銀行, 2. 韓國殖産銀行, 3. 大韓金融組合聯合會, 4. 舊信託財産處理委員會, 5. 農業協同組合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 6. 水産業協同組合

7.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②法人 其他 團體가 保有하는 請求權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補償하지 아니한다.

1. 請求權申告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당시 存在하지 아니하는 法人 其他 團體에 속하는 것

2. 1945年 8月 15日 당시 大韓民國 國民이 아니었던 者에 속하는 持分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據 및 資料가 提示되지 아니한 것

③請求權申告에 의하여 請求權을 申告한 者(이하 "請求權申告者"라 한다)가 請求權의 補償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이하 "請求權者"라 한다)와 同一人이 아닌 때에는 請求權申告者가 請求權者로부터 補償金受領의 委任을 받았거나 請求權의 相續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補償하지 아니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 기타 團體의 범위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受

領의 委任 및 請求權의 相續人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補償의 方法)

①請求權의 補償은 補償金의 支給에 의한다.

②第1項의 補償金(이하 "請求權補償金"이라 한다)은 現金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으로 支給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請求權補償金은 現金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補償金

2. 請求權補償金중 30萬원까지의 金額과 30萬원을 초과하는 金額중 1萬원미만의 金額

③請求權補償金의 支給節次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請求權補償金)

①請求權補償金은 日本國通貨 1엔에 대하여 大韓民國通貨 30원으로 한다. 다만, 日本國通貨 100엔미만의 請求權에 있어서는 日本國通貨 100엔을 申告한 것으로 본다.

②請求權申告法 第2條第1項第9號의 被徵用死亡者에 대한 請求權補償金은 1人當 30萬원으로 한다.

第5條 (請求權補償金支給의 決定通知) 財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하여 請求權補償金의 支給額을 決定한 때에는 이를 당해 請求權者 또는 請求權申告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條 (補償證券의 발행)

①財務部長官은 請求權의 補償을 위하여 補償證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償證券(이하 "請求權補償證券"이라 한다)은 1年据置후 3年間에 分割하여 償還하며 利率은 年 5푼으로 한다.

③請求權補償證券의 발행·償還 기타 請求權補償證券에 관한 事務處理에 있어서는 國債法을 適用한다.

第7條 (證據調査등) 財務部長官은 請求權의 補償에 관한 業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請求權者·請求權申告者 기타 關係人의 출석을 要求하여 意見을 聽取할 수 있으며, 당해 事項에 관하여 專門的인 知識·經驗이 있는 者로 하여금 檢査·鑑定 기타 證據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8條 (事務局)

①請求權의 補償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財務部長官所屬下에 事務局을 設置한다.

②事務局의 組織·業務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職員은 財務部所屬公務員이나 韓國銀行 또는 韓國産業銀行 職員중에서 財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第9條 (業務의 委任) 財務部長官은 請求權의 補償에 관한 業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業務의 一部를 다른 行政機關 또는 金融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第10條 (請求權의 消滅) 請求權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消滅된다.

1. 請求權者가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때
2. 請求權의 相續人이 없는 때
3. 請求權補償金의 支給이 開始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될 때까지 補償을 請求하지 아니한 때
4. 請求權者 또는 請求權申告者가 證憑書類를 僞造 또는 變造하여 補償을 請求한 事實이 확인된 때
5. 請求權申告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事實이 확인된 때

第11條 (權利의 보호) 請求權은 이를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國稅徵收의 例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2685호,1974.12.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補償金 支給 開始日) 請求權補償金은 1975年 7月 1日부터 支給한다.

[부록 13]

주요 언론보도

Ⅰ. 주요 언론보도 헤드라인

일자	주요 헤드라인	매체
'05.01.17	朴정권 경제개발 집착 개인보상 외면 한국정부의 '개인보상'책임론 부상	문화일보
'05.01.18	막후선 김종필 · 오히라, 결단은 박정희 · 이케다 일본 언론 "개인보상, 한국 정부 책임 확실해져"	중앙일보
'05.01.18	'日帝 피해보상' 소송 줄이을 듯 "배고플 때 우리 팔아 경제 키워… 이제 갚아줄 때 됐잖아요"	조선일보
'05.01.18	사망 1인당 855만 원 청구…322만 원 보상 盧정부, 日우려 불구 '과거청산' 선택	동아일보
'05.01.18	對日 개인청구권 정부가 포기 "경제부터 살리겠다"…개인보상 '뒷전'	매일경제
'05.01.18	한일정부, 개인청구권 박탈 '합작' 재협상 · 개인보상 '현해탄 격랑' 예고	한겨레
'05.01.18	정부 '일제 피해자 대책' 전향적 검토	문화일보
'05.01.19	"과거사 청산 차원 해결책 필요" 정부가 받은 돈 절반 넘게 포철 투입	중앙일보
'05.01.19	日배상 거부 땐 정부상대 개별소송해야	조선일보
'05.01.19	피해자 800만명…3년간 실태파악	동아일보
'05.01.19	'과거 야합' 풀어야 동북아 평화	한겨레
'05.01.19	'보상 제외'논란 잇따를듯	서울신문
'05.01.20	'소송보다 立法통한 피해자 보상'이 대세	조선일보
'05.01.20	日, 해외거주 피폭자에 배상판결 日배상금 한국이 가장 잘 썼다	동아일보
'05.01.20	여 · 야"일제 피해자 보상 · 지원" 징용 피해 확인 '산 넘어 산'	한겨레

'05.01.21	韓日관련 기록 잇단 공개…배경 의구심	동아일보
'05.01.22	"희생자 '103만명'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출	조선일보
'05.01.24	日, 징용자 미지불금 문서 계속 은폐	동아일보
'05.01.25	무연고 한인 유골 朴정권이 日영구매장 제의	
'05.01.25	"정부 계산착오 3억弗 날렸다"	서울신문
'05.01.26	문서 공개 기준 제각각 정치적 배경 의혹 불러	중앙일보
'05.02.05	"日자금 쓴 포철·道公도 돈 내야"	조선일보
'05.02.07	일제 피해 후속대책 '정체'	한겨레
'05.02.14	원폭피해 2세 사망자 52% 10세前 숨져	동아일보
'05.02.15	"원폭2세 피해규명 복지부 나서야"	한겨레
'05.02.15	日帝'가족단위' 징용생활 첫 확인	경향신문
'05.02.17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반환 움직임 활발	한겨레
'05.03.02	盧대통령"과거사 규명해 사과" 촉구	한국일보
'05.03.02	신고 4만건…부자 함께 신청도	서울신문
'05.03.02	한일 수교 후 "배상"첫 언급 일본에 추가조치 요구한 셈	중앙일보
'05.03.02	정부잘못 인정 '청구권 소송' 지원	경향신문
'05.03.03	'배상촉구' 일본은 못들은척	한겨레
'05.03.04	"日帝 피해 개인보상 검토해봐야"	조선
'05.03.05	"일 식민지배는 축복"망언 역사왜곡 코드접속 한-일 우파 닮은꼴	한겨레
'05.03.09	강제징용 배상 유혹 687명에 다단계 사기	한겨레
'05.03.10	"일제가 거둔 보험료 받아내야"	문화일보
'05.03.18	日에 과거사 '독일식 정리'요구	서울신문
'05.03.18	한국 강경 대응…일본 당혹	동아일보
'05.03.19	일제징병자 50대 아들 분신	한겨레
'05.03.22	"95년 日정부 잘못 첫인정 새 변수"	국민일보
'05.04.01	"종군위안부는 허구"일본 아베 신조 망언	중앙일보
'05.04.06	'침략위한 전시동원' 수탈 배경 입체 조명	한겨레

'05.04.08	"65년 한일협정 진상 밝힐 것"	조선일보
'05.04.08	獨 모범적 과거청산 부각 '일 압박'	경향신문
'05.04.12	日 네티즌 80% "군대위안부 보상해야"	세계일보
'05.04.13	"독일의 과거 반성하는 용기 존경"	중앙일보
'05.04.20	日 강제동원 첫 현장조사	동아일보
'05.04.27	"혹한·배고픔에 韓人 1000여명 사망"	서울신문
'05.04.28	한술 더 뜨는 왜곡의 일본	동아일보
'05.05.04	전쟁책임 다 못따진 '미완의 재판' 조명	한겨레
'05.05.06	일, 조선인 징용희생자 조사	한겨레
'05.05.06	日人들도 "징용 진상규명"	경향신문
'05.05.10	징용희생자 유골 100위 우선반환	서울신문
'05.05.17	日과거사 처리 '생색내기'	경향신문
'05.06.10	10代까지 끌고가 탄광서 짐승부리듯	동아일보
'05.05.16.	"우토로 땅, 한국정부에 팔겠다"	한겨레
'05.06.22	"잘못 끼운 첫 단추" 수교회담 진실 안갯속	한국일보
'05.06.22	'歷史'에 발목잡힌 愛憎의 40년	동아일보
'05.06.23	日강제동원 진상규명 '겉핥기'	서울신문
'05.07.08	"우토로는 차별의 역사"	중앙일보
'05.07.22	"日 징용 한인촌 '우토로'를 살리자"	동아일보
'05.08.02	日, 징용한인 유골 무단훼손	동아일보
'05.08.13	日, 징용 한국인 수당지급 '우롱'	동아일보
'05.08.15	日외무성 "전후 배상은 끝났다"	경향신문
'05.08.15	징용행불자 가족들 분통	서울신문
'05.08.27	"한-일협정 재협상 검토안해"	한겨레
'05.08.27	'굴욕 회담' 재평가될까	동아일보
'05.08.27	정부 "日 '법적책임' 첫 천명	조선일보
'05.08.27	'피해자 범위'부터 결정할 듯	한국일보
'05.08.27	朴대통령 "6억弗이 마지노선"훈령	서울신문
'05.08.27	日帝 피해자 추가 보상	세계일보

'05.08.27	일 강제동원 피해자지원법 만든다	한겨레
'05.08.27	국제 소송, 유엔 인권위 통한 보상 길 열려	중앙일보
'05.08.27	日, 사죄-보상 아닌 '도의적 양보' 강조	동아일보
'05.08.27	정부"日반인도적 모든 행위 책임 물을것"	국민일보
'05.08.27	"개인청구권 묵살 인정 늦었지만 다행"	한겨레
'05.09.08	日 강제동원 피해 '국내'소홀 대혼란	경향신문
'05.09.30	日, 韓人징용자 조사 엉터리	세계일보
'05.10.26	한국인 청구 기각…대만인은 승소	동아일보
'05.11.11	과거史규명 내년 예산 2배로 늘려 842억 원	동아일보
'05.11.30	"日외무 가업 아소 탄광 등 조선인 강제동원 조사해야"	한국일보
'06.01.20	한국정부, 日에 戰後보상 요구해야	동아일보
'06.01.20	강제징용 규명 '세월아 네월아'	경향신문
'06.02.22	일제 강제동원 정부서 위로금	경향신문
'06.03.08	일제 징용사망자 1인당 2000만 원 지원	국제신문
'06.03.18	"탄광서 죽어나간 한국인 셀 수도 없어"	동아일보
'06.03.22	"60년이나 기다렸는데…지원금 고작 年50만 원	서울신문
'07.03.02	'일제 강제동원 진상'묻히나	서울신문
'07.05.31	피눈물로 쓴 사연, 역사의 진실을 전하다	동아일보
'07.07.09	財源 고려안한 무책임한 입법	조선일보
'07.07.10	국회 졸속 법안으로 2000억 날아간다	중앙일보
'07.07.31	정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재의 요구	조선일보
'07.07.31	태평양 전쟁 희생자 지원법 갈등	문화일보
'07.08.01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안 정부, 대통령거부권 요청키로	동아일보

Ⅱ. 주요 언론보도 내용

1. 한일대책기획단 설치에 대한 보도 내용

'05.1.17일자 매일경제

《 일제강점 피해자 보상 대책단 가동 》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따라 피해자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 범위 선정, 보상 관련 입법 대책, 소요 재원 조달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피해보상에 대한 국민여론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주 국무총리실에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설치해 가동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7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 후 발생하는 피해자와 유족 의 개별 보상 민원제기 등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에 정부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외교통상부에는 '문서공개 실무기획단'이 설치돼 기획단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기획단은 △공개 문서에 대 한 내용 분석 △외교적 파장에 대한 대응 △피해자 조사 △보상법 등 관련 입 법 검토 등을 맡고 특히 피해보상 민원 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은 한국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제기할 다양한 민원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받아 달라 △한국 정 부가 사실상 '보상금'을 받았으니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 달라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을 해 달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해 달 라는 요구 등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책기획단은 이와 관련해 추후 일제 강점기 징용·징병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자 범위를 정하는 한편 필요시 생활안정 책 등 지원 방안이나 정부 재정 확보에 대한 논의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기획단은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과 최영진 외교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관련부처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주 대책기획단 설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 훈령이 발령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이날 일제 강점기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정 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문서)내용 중에는 특히 일제 강점기 피해자·노동자·징용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관계 당사자, 이해 당사자들과 여러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정부가 (일본측에서)배상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 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괄보상이라는 것을 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 행정이 투명해야 하 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환 기자>

Ⅱ. 문서 공개에 따른 언론 반응

'05.1.18일자 세계일보

《 정부가 對日 청구권 포기 》

일제 강점기 한국인 징용·징병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한국과 일본정부가 한일회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멸시킨 것이 확인됐다. 또 정부가 일제 치하 노동자, 군인, 군속(군무원)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103만여 명에 대해 총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일본에 요구하고도 청구자금을 국내 피해자에게 거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한일협정 관련문서 161권중 17일 공개한 5권에서 확인됐다. 한일협정 문서 중 '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에 따르면 당시 일본정부는 '경제협력자금'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주장하면서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개인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면밀한 연구검토를 제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이 국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면서 검토를 생략한 채 조속한 협정 타결만을 종용했다.

이는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개인청구권마저 포기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향후 피해자들의 개인보상 및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는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서에는 당시 우리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을 근거로 청구권 협상을 진행했던 사실이 적시돼 있어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청구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이용했다는 법적·도덕적 문제 제기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회담 문서 중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조표'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일제 강점기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 됐던 생존자·사망자·부상자 103만 2684명에 대해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때 정부가 제시했던 1인당 피해보상금은 생존자가 200달러,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650달러와 2000달러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실제 보상금은 사망자에 한해 30만 원이

지급됐으며, 재산보상까지 합한 최종 보상금 규모도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의 9.7%에 불과했다.

또 '청구권 협정의 체결시 대일 민간청구권 문제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경제기획원·재무부·외무부 간 공문'에 따르면, 개인 청구권의 정부 보상 책임과 관련한 경제기획원의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정당한 청구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보상의 주체가 우리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개한 5권의 한일협정 청구권 관련문서 외에 나머지도 가능한 한 오는 8월15일 이전에 공개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05.8.27일자 동아일보

《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굴욕회담' 재평가될까 》

한일협상과 관련한 방대한 문서가 40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됨으로써 한일회담을 둘러싼 재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가운데 한쪽의 문서만 공개됐다는 점에서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서 공개로 당시 13년 8개월 동안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와 이를 지휘한 정권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굴욕회담'에 대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서 공개와 심사 작업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견해다.

전현수(田鉉秀) 경북대 교수는 "나도 대학 다닐 때는 불평등 회담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3만여 쪽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구권 협상에서는 일본이 '청구권이란 말을 빼고 경제협력 자금으로 하면 돈을 더 줄 수도 있다'는 제의를 하기도 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권 협상을 위해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극단적 비난도 있어 왔으나 정부는 시종일관 '독도는 우리 땅'이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차관 3억 달러'라는 청구권 금액도 당시 상황에서는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일협상 문서 공개에 이어 '과거사 광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던 관측은 힘을 잃게 됐다.

이원덕(李元德) 국민대 교수는 "당시 근대국가 100년의 경험과 막강한 외교적 관료적 능력을 보유한 일본을 상대로 신생국인 한국이 그만큼 교섭을 했다는 것은 학자의 양심을 걸고 평가할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의 욕심에는 못 미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창록(金昌祿)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정부 대표들이 열심히 일한 것은 인정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몫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일본측 문서까지 공개돼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1962년 11월 김종필(金鍾泌)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과의 회동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거나, 공화당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은 공식적인 외교 문서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또 어업문제 등에서 한일협상을 대통령선거 등 국내정치와 연관시킨 점도 지적돼야 할 대목이다.

당초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의 전모가 드러나면 향후 북-일 수교 협상의 '카드'가 노출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경제협력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 드러난 한일회담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 최대한 많은 경협 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 기자>

Ⅲ. 민 · 관공동위원회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방안' 기자회견

'06.3.9일자 동아일보

《 정부, 일제징용 유족에 2000만원 위로금 》

이르면 내년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해외로 강제 동원됐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크게 다쳐 돌아온 피해자에게 각각 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지원대책 방식은 위로금 지급과 의료 및 교육 지원이다.

위로금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과 중부상자에게 2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자로 추정하는 행방불명자에게도 200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1975년 정부에서 당시 금액으로 30만 원씩을 보상받은 유족의 경우에는 2000만 원 가운데 보상받은 금액의 현재가치(234만 원)를 뺀 금액만 받게 된다. 일제의 강제 동원 기간에 가벼운 부상으로 귀국한 경부상자에겐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위로금을 받게 될 대상자가 모두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금 4000여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박민혁 기자>

Ⅳ. 수정안의 국회 가결에 대한 보도

'07.7.9일자 조선일보

《 財源 고려안한 무책임한 입법 》

국회가 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을 재원(財源)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가 정부로부터 법안공포를 거부당할 상황에 처했다. 국회가 입법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안'이다. 일제에 강제동원된 희생자 유가족에게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주고, 생존자에겐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당초 행정자치위가 정부와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은 생존자에게 5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었는데, 희생자 유가족회의 요청을 받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지원규모를 10배로 늘린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끼워넣은 것이다.

이 법안에는 46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 예산이 드는 법안을 시행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반발하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장 의원을 만류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국회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찬성토론을 했지만, 반대 토론자는 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 각당 지도부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 결국 수정안이 통과됐고, 당초 합의됐던 원안은 폐기됐다. 열린우리당 원내 관계자는 뒤늦게 "정부와 상임위의 합의안이 멀쩡히 있는데, 개별 의원이 끼워넣은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쟁점 법안을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 같다"고 했다.

정부측은 8일 "이 법안대로 하면 2000억원의 비용이 더 드는데, 문제점을 심층검토해 거부권 건의를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자위의 한 의원도 "이번에 위로금을 주면 6·25 참전용사 등에게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생존자의 범위도 애매하다"고 했다.

<배성규 기자>

V. 정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언론 보도

'07.7.31일자 서울신문

《 정부, '태평양전쟁 희생자지원 법안' 거부키로 》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겨져 이르면 8월 국회에 재상정된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막대한 예산 부담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강제징용됐다가 사망한 자들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생환 후 생존자'에게는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 수정안인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은 사망자 위로금 액수는 같지만, 생환자에겐 연간 50만 원 이하의 의료 지원금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법안'대로라면 약 2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6·25참전자, 월남전 참전자중 생존자에 대해 위로금이 일시 지불된 사례가 없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비슷한 사례의 위로금 지불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의 재의 요구 방침에 대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30일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인근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설영기자>

VI. 정부의 재의요구 비판에 대한 반박문

'07.8.6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칼럼
《 위로금 지급은 형평성 시비일 수 있다 》

'일제피해자 지원법 정부 거부권 말도 안돼' 반론

정부 협의없이 진행된 수정안은 태평양전쟁 전후로 범위 넓혀놔
유사사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재의 요청
피해자 지원 의지 약하지 않다

지난 7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수정 지원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1975년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이 다소 불충분했던 점을 참작한 도의적 차원의 정부 지원대책이었다. 그러나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이 상정·가결되었다.

정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재의 사유 등을 밝히고자 한다. 자칫 이 글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정부의 지원 의지가 약한 것으로 호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첫째, 생존자 위로금 지급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일본이 생존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수차례 표명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생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생존자의 위로금 지급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원칙'에 따라 위로금이 아닌 별도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생존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생환자 중 사망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고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등 다른 사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둘째, 정부가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으로 포철에 출자한 재원에 대한 포스코의 반환금이 3조 8천억 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정부가 출자한 재원은 대일청구권 자금뿐만 아니다. 다른 재원도 투입된 것으로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은 정부출자총액의 약 5.56%인 12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미수금과 관련해서는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1975년 보상 당시 증빙자료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법안에 미수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해 법이 시행되면 미수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조를 통한 공탁금 명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넷째, 일부에서 1965년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종료 통보를 근거로 청구권협정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어업협정 종료 통보는 협정상의 종료의사 표시이므로 이를 한-일 청구권협정 파기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정부는 수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나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의결됨으로써 입법 과정에서 합의정신이 반영되지 못했고, '일제강점하'의 법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로 변경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시기를 대상으로 하게 돼 '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유사 사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혜택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해, 국회 및 각 정당에 협조요청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후속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손영재/국무조정실 한일문서 공개 대책기획단 과장>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펴낸날	2007년 11월
펴낸곳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발행처	02-2100-8791
인쇄처	필코문화사(T. 02-2269-2466)